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3

현안분석

-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책토론 리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日·中·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외

정책흐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재정통계

지방세 V편

C · O · N · T · E · N · T · S

견두칼럼	2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이준구
현안분석	6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 박기백
	22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 정재호
정책토론포트	45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71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완석
최신 조세·개정 해외동향	74	美·日·中·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외
정책흐름	89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99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119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24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재정통계	128	지방세 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40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외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세상에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어떤 세금이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만큼 출범 전부터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된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마치 문제투성이의 세금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이 세금의 존재 이유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세금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갖는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다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선 들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장점은 능력에 따른 부담의 분배를 가능케 해 준다는 점이다. 일부 고소득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금거래가 만연된 현실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소득세를 통한 공평과세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 보유 사실은 감추기 힘들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과 소득을 감추려는 사람 사이의 숨바꼭질은 과세당국의 패배로 끝날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 사실을 감출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와 같은 편법을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비의 대형화, 고급화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 넓고 더 좋은 주택에서 살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는 그와 같은 욕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로이 살게 하되, 다만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이미 높은 가격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택은 자산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시장가격이 무거운 대가를 뜻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주듯,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

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며 그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고급주택을 사면 썩 먹고 알 먹는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특정지역의 대형, 고급주택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더 많은 부까지 축적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이런저런 규제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 어떤 규제든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는데 말이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제대로 실시되어도 아무런 규제 없이 주택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는데도 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 것이고 세상이 바뀌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매물을 내놓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정착되리라는 믿음이 없는 한 주택가격은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자신이 뚜렷한 주권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것의 미래에 더 큰 의심을 품게 된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의 기대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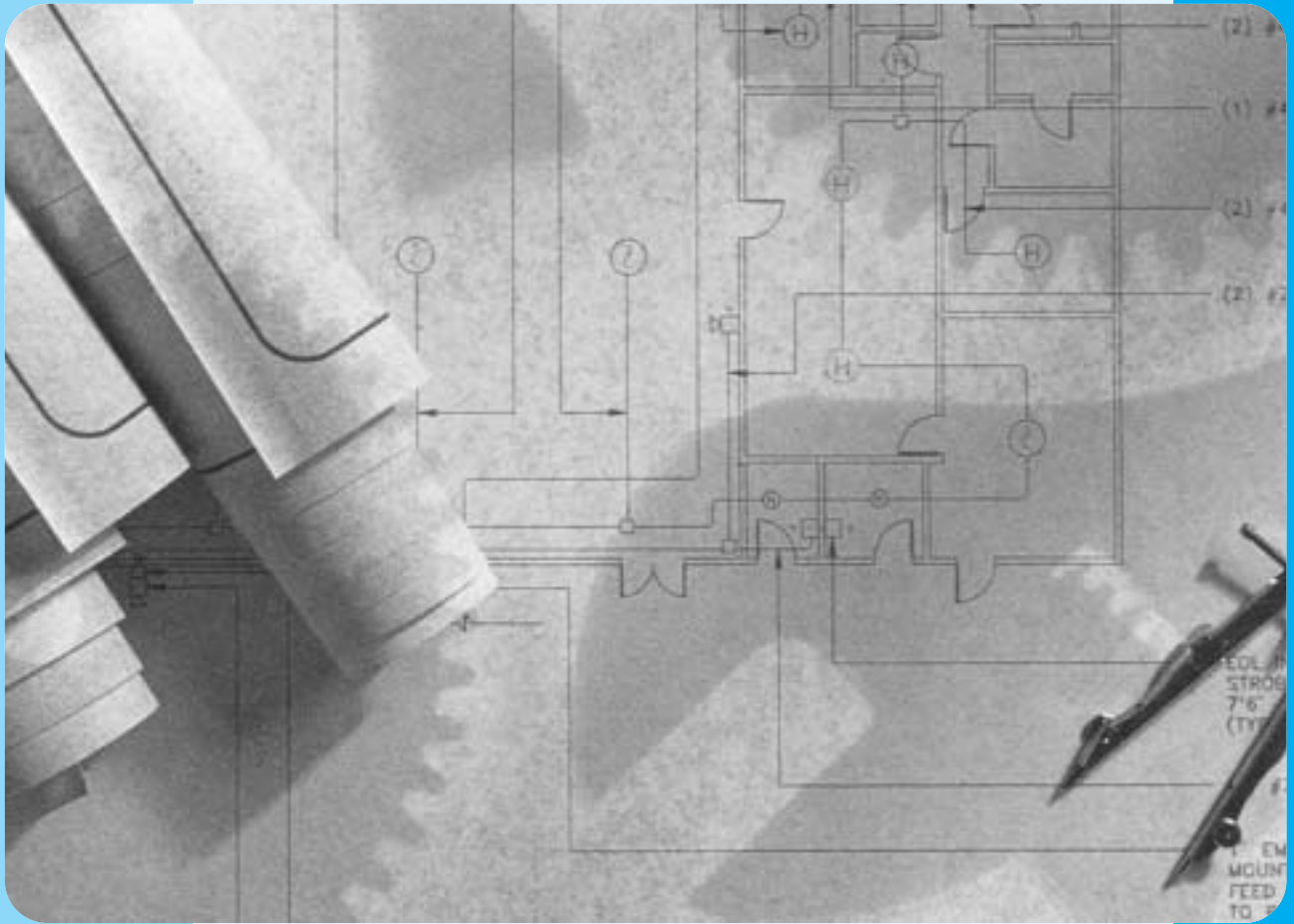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수입만큼 다른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우선 소득세를 깎아 주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깎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조작하는 여론의 역풍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명확한 시간표에 따라 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을 거두는 시늉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해 보아야 부담이 더 무거워질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아니라 최강자이며, 현재 이들이 지고 있는 조세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실상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잠재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장점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정부 역시 이제는 쓸모없는 눈치 보기를 접고 이것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KIP**



TEOL IN
STROB
7'6"
(TY
f.
EM
MOUNT
FEED
TO F

현안분석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박기백 선임연구위원(kbpark@kjp.f.re.kr)

I. 서론

Earmarked revenue란 법규에 의해 수입을 특정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¹⁾. Earmarked revenue를 목적세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조세 이외의 수입도 Earmarked revenue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목적세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교통세, 교육세, 방위세와 같은 목적세는 당연히 목적세입에 해당한다²⁾.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도 관련 법률에서 특정 수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법률에 따른 각종 조세감면(조세지출)도 특정 수입을 특정 부문에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건설국채나 우리나라의 국민주택채권처럼 그 용도가 한정된 국채도 넓은 의미의 목적세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목적세입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야기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통, 환경, 교육, 복지와 관련한 목적세입을 운용하는 나라가 대다수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헌법에는 특정 세입을 세출로 연계하는 목적세입의 개념은 없다. 그러나 의회에서 법률을 통해 특정 회계(fund)에 특정 세입(taxes or levies)을 할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경우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Revenues are earmarked when they are designated for particular uses by authorizing legislation

2) 교통세와 교육세의 경우, 해당 세입이 일반회계(일반재원 관리 회계)에 귀속되지만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세로 보아야 한다.

목적세입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야기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통, 환경, 교육, 복지와 관련한 목적세입을 운용하는 나라가 대다수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하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세입이 존재한다.

그 시초는 1919년 군인생명보험(veterans life insurance)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하위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목적세입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양극화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복지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목적세입을 통한 세수증대이다. 이는 교육세나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목적세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수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육, 의료, 복지재원을 목적세로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편의성을 기준으로 세입증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목적세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 론

목적세입이 재원의 용도를 제약하므로 일반재원(general fund)에 비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다는 것이 목적세입(earmarking)을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의 최적화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적화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세나 부담금을 본세로 통·폐합하자는 주장의 기본적인 논거도 여기에 있다. 반면 목적세입의 바람직한 측면을 주장하는 이론 및 논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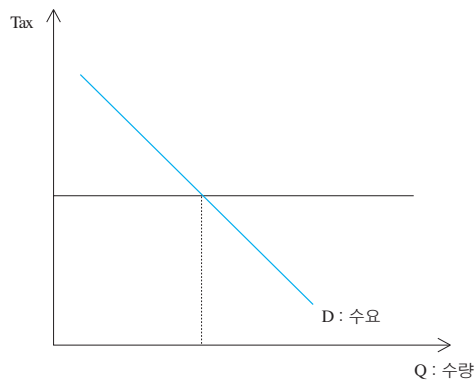
1. Buchanan의 공공선택 관점

Buchanan(1963)은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목적세입을 분석하고 있다³⁾.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세가 예산배분에 제약을 준다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일반재원 방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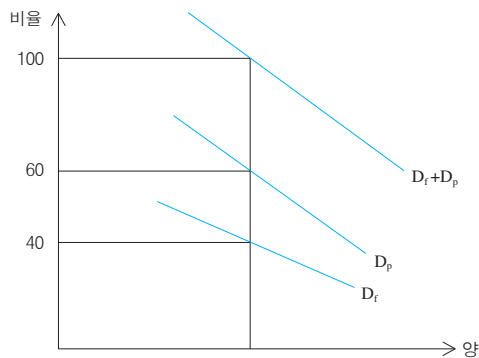
3) 분석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재는 p와 f의 2개가 존재한다. 2) 재원은 lump-sum 방식으로 조달된다. 3) 대표 개인을 상징하며, 선호는 Single Peak를 가진다. 4)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불변이다. 5) 일반재원은 두 개의 공공재에 대한 특정 비율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자의적인 배분보다는 유권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Buchanan은 일반재원으로 다수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을 가진 공공재 묶음(bundle)을 1개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생각한다. 반면 목적세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는 공공재가 각각의 가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일반재원에 의한 조달방식이 더 제약적인 방식이므로 목적세입에 의한 조달방식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공공재의 배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일반재원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총 정부지출이 목적세의 경우보다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별 수요



[그림 2] Bundle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McMahon & Sprenkle은 공공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목적세입의 소득탄력성은 크게 다르므로 목적세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직한 목적세입의 조건은 수요와 목적세입 세수의 탄력성이 유사한 경우이다.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반대 논리는 목적세입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수 및 그에 따른 지출규모가 법률에 따라 정해지므로 경제상황이나 수요자 선호의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변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McMahon & Sprenkle(1970)은 공공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목적세입의 소득탄력성은 크게 다르므로 목적세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직한 목적세입의 조건은 수요와 목적세입 세수의 탄력성이 유사한 경우이다.

Browning(1975)은 세금과 지출에 대한 분리된 다수결 투표(majority voting)의 경우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Goode(1984)는 시민의 참여가 적은 국가에서는 공공선택이 무의미하다고 하고 있으며, Bos(1999)는 주인-대리인 형태에서는 목적세입이 최적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득표를 최대화하려는 경우 목적세입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에 따른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목적세입의 또 다른 조건은 시민의 참여, 또는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목적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2. Teja의 수혜자부담원칙

Teja(1988)는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가 바람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Teja는 Samuelson Condition을 이용하여 목적세가 Lindahl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모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개의 공공재(G, S)와 한 개의 집합적 사적재화(X)가 있으며, a와 b의 2명이 존재한다. 목적함수는 개인의 효용극대화 $U_a(X_a, G, S)$ 및 $U_b(X_b, G, S)$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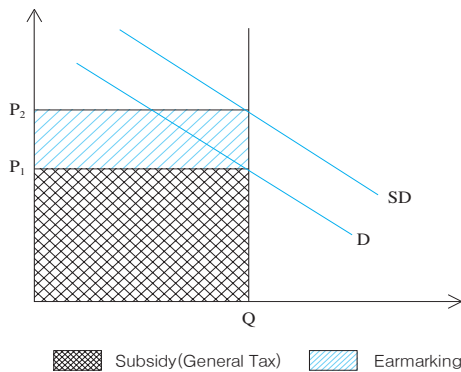
일반재원과 목적세의 차이는 예산제약식에서 나타난다. 만약 일반재원을 사용하면 예산제약식은 $Y_a = X_a + h(G+S)$ 와 $Y_b = X_b + (1-h)(G+S)$ 가 되며, h는 비율(share)이다. 이 경우 최적 h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목적세 방식을 사용하면 예산제약식은 $Y_a = X_a + gG + sS$, $Y_b = X_b + (1-g)G + (1-s)S$, g와 s는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재화에 대한 개인간 배분비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적비율은 사적재화와 공공재 간의 효용의 한계대

체율이 된다.

문제는 개인간 배분비율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있는가이다. 일반적인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 공동소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선호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benefit principle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르다. 도로의 경우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로 사용료와 같은 사용자부담금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휘발유세를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여 도로건설이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그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한계비용이 P_1 인 반면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은 P_2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만큼은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으로 해결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P_2 - P_1) \times Q$ 는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도로의 경우를 보면 휘발유세를 사용자부담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외부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재원은 일반재원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

[그림 3]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3.기 타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목적세가 유용하다는 주장도 많다. Goetz(1968)는 특정 상황에서 는 지출조정을 위한 조세조정시 당파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일반재원보다는 목적세입의 경우가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지출조정에 합의를 해 주려면 해당 특정 집단에 대한 세부담 조정이 있을 때 합의 가능성이 높는데,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목적세가 유용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지출조정에 합의를 해 주려면 해당 특정 집단에 대한 세부담 조정이 있을 때 합의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반재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목적세입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재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목적세입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로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휘발유세를 증대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와 교육지출을 증대시키자는 쪽과 판매세 증대와 복지지출 증가를 옹호하는 집단이 대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육에 사용되는 판매세(sales tax)나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세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klund(1969)는 당파가 많고, 연정이 어려운 경우 현상유지가 대부분의 결론이므로 목적세입이 지출 결정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Contract의 관점에서 목적세를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세가 사전적 확률과 사후적 확률이 다른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미 오염된 지역의 오염제거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나 의원이 반대할 수 있지만 미래의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세라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류 및 화학물질에 대한 개별과세(excise tax)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 후 오염제거에 사용하는 독성물질대응기금(Hazardous Substance Respond Fund)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지출의 변동이 심한 경우 목적세가 일정 수준의 지출을 확보해 주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관점도 있다. 지출이 변동될 경우 인력과 장비를 유희상태로 놓아 둘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발생하지만 목적세입으로 안정적인 지출이 확보되면 비용이 감축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출 감축시 생산성이 낮은 이전지출보다 생산성이 높은 자본지출이 더 취약하다. 목적세입은 이러한 현상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Niskanen(1971)은 관료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제약하는 데 목적세입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예를 들어 관료는 생색이 나는 건설에 초점을 두므로 고속도로 유지·보수처럼 중요하지만 관료의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의 지출을 위해 목적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ulgan and Murray(1993)는 일반재원 방식이 너무 불투명하고(opaque), 집중되어 있으며(centralized), 반응도가 낮은(unresponsive)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세입 등을 통하여 조세와 지출을 재연결하고,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hillon and Perroni(2001)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세입 아닌 세출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에 목적세가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Ⅲ. 목적세입 현황 및 분류

1. 목적세입 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세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통세와 같은 목적세는 물론이고,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사용료, 수수료, 벌과금 등 각종 부담금도 목적세입이다. 넓게 보면 지방정부 및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금도 목적세입에 해당한다. 200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19.5조원과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23.7조원도 목적세입이라고 할 수 있다(각각 내국세의 19.13%, 19.40%). 다만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금액은 특정 지출을 위해 정해진 수입이라는 성격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목적세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면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은 지출대상이 교육이므로 지정세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채권발행 수입도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세입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의 발행 여부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목적세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률에 숨겨져 있는 목적세입에 대한 규정도 목적세입의 범위를 알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보면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해야 할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교통세의 85.8%,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이 그것이다. 또한 특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세입규정은 정확한 목적세입의 규모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목적세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주요한 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규모를 살펴본다. <표 1>을 보면 2004년의 경우 16.8조원이 목적세이며,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는 22.9조원이고, 연금 등 수혜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는 63.4조원으

<표 1> 목적세입의 규모

	목 적 세		목적세 성격		목적세입 합계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규모(조원)	16.8	21.0	22.9	27.9	63.6	70.9
국세 대비	14.3%	16.1%	19.4%	21.4%	54.0%	54.3%
통합재정 대비	9.7%	10.8%	13.2%	14.4%	36.7%	36.6%

주: 2005년은 예산기준 주요 목적세입만을 합산한 값

2005년의 경우 약 21.0조원이 목적세이며,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27.9조원이고,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는 70.9조원으로 통합재정 대비 약 36.6%에 이르고 있다. 교부금, 국민주택채권,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용도가 지정된 세입의 규모 및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로 통합재정 대비 약 36.7%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도 2004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 21.0조원이 목적세이며,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27.9조원이고,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는 70.9조원으로 통합재정 대비 약 36.6%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교부금, 국민주택채권,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용도가 지정된 세입의 규모 및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표 2〉 주요 목적세입

(단위: 조원)

회계	구 분	목적세입	규 모	
			2004	2005
일반 회계		교통세	8.6	11.5
		교육세		4
특별 회계	농특세관리	농특세	2.1	2.6
	지방양여금관리	주세	2.6	
	지방교육양여금관리	교육세	3.5	2.9
	국가균형발전	주세		0.1
	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료 등		0.2
	등기	수수료	0.2	0.2
	군인연금	기여금	0.3	0.3
	에너지 및 자원사업	부과금	1.5	1.7
	환경개선	부담금	0.7	0.7
	국립의료원	영업수익	0.05	0.05
	우체국보험	보험료	0.5	0.5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과태료	0.7	0.6
	특허관리	수수료	0.2	0.2
	양곡관리	영업수익	0.6	0.7
	철도사업	영업수익	3	
	통신사업	영업수익	3.8	3.9
조달	영업수익	0.1	0.1	

〈표 2〉의 계속

(단위: 조원)

회계	구 분	목적세입	규 모	
			2004	2005
기금	복권	영업수익	2.7	3
	원자력연구개발	부담금	0.2	0.2
	군인복지	영업수익	0.2	0.3
	관광진흥개발	납부금	0.2	0.2
	농지관리	조성비	0.4	0.4
	축산발전	조성비 등	0.2	0.1
	전력산업	부담금	1.1	1
	정보통신진흥	부담/출연금	0.3	0.5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0.6	1.3
	수계관리	부담금	0.5	0.6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0.1	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부담금	0.1	0.1
	방송발전	부담금	0.1	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0.9	0.9
	국민연금	기여금	18	20.7
	고용보험	보험료	2.9	3.2
	산업재해보상재보험 및 예방	보험료	3	3.7
공무원연금	기여금	3.7	4.3	

2. 목적세입의 장단점

목적세입은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핵심적인 장점은 수익자부담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일단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목적세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반면, 목적세입이 지닌 핵심적인 단점은 지출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적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출조정을 위한 또 다른 통제장치로 목적세입의 수입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장치는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목적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여유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목적세입은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핵심적인 장점은 수익자부담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일단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목적세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표 3〉 목적세입의 장점

GAO	McCleary(199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분담(cost-sharing)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점검(monitor), 조정(adjustment)에 유리 2.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를 아는 경우에 신설이나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3. management incentive로 유용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관리자의 징수 노력 제고 4.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최저수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쉽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2. 예산편성의 변동성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사업 수행으로 재원이 절약 3. 조세저항을 최소화 4. 공공재 공급함수가 규모 불변인 경우 자동적인 회수 기능

〈표 4〉 목적세입의 단점

GAO	McCleary(199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정부의 우선순위 조정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 - 사업의 자원배분(funding) 수준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2. 법 개정 때문에 조정에 시간이 소요 3. 정부의 사업 점검 노력이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지출이 어느 정도 보장 4. earmarking이 특정 사업에 대한 최저수준의 지출을 상정(presum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공공재의 과잉공급 2. 예산운영의 경직성 야기 3.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 축소 4. 필요성 종료 후에도 유지

3. 목적세 유형

GAO는 수혜자와 지불자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자 부담금 성격, 규제 성격, 기부금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수혜자부담원칙과 관련된 부문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른 수입은 일반 목적 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표 5〉 목적세입의 분류(GAO)

유 형	예
수혜자가 직접 부담, 직접 혜택(Benefit Principle)	○ 연금의 경우 ○ user fee : National Park Service
정부에 비용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regulation)	○ 대중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한 license, permit, inspection - 예: 건설업체가 주택지역개발부(HUD)에 지불하는 inspection fee
기부금(contribution): 직접적 수혜자도 아니고, 비용을 야기한 경우도 아닌 경우	

Bird(1997)는 목적세를 지출대상, 연계성, 적용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지출대상의 경우에는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한정되는가를 보며, 연계성의 경우에는 지출과 세입 간의 관련성을 본다. 연계성의 경우는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쓰는가의 문제가 된다. 적용 원칙은 수익자부담 성격인지를 살펴본다. Bird는 목적세의 경우 지출대상은 한정적이고, 연계성은 강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Wilkinson(1994)도 목적세는 특정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 방식이 적합하고, 대규모 스케일이나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표 6〉 목적세입의 분류(Bird)

유형	지출대상	연계성	원칙(Rationale)	사 례
A	특정	밀접	수혜 기준	공기업
B	특정	미약	수혜 기준	유류세 - 도로
C	광범위	밀접	수혜 기준	사회보장
D	광범위	미약	수혜 기준	담배세 - 건강
E	특정	밀접	없음	환경세 - 처리(cleanup)
F	특정	미약	없음	급여세 - 건강
G	광범위	밀접	없음	공동세
H	광범위	미약	없음	복권 - 건강

취발유와 경우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광역교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정해져 있다. 수혜자부담금의 관점에서 보면 도로를 제외하고는 수혜자부담금의 성격이 없다.

4.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취발유와 경우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광역교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정해져 있다. 수혜자부담금의 관점에서 보면 도로를 제외하고는 수혜자부담금의 성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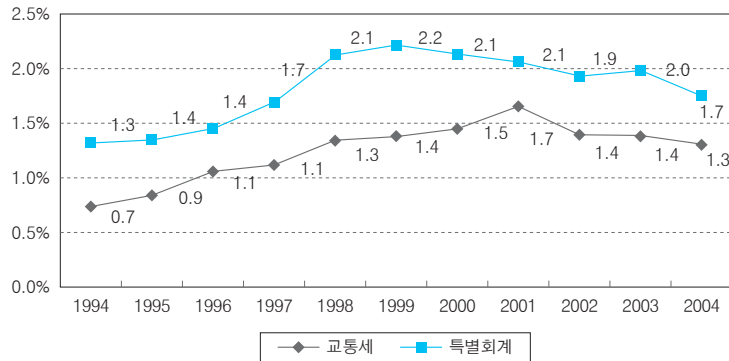
그리고 교통세의 경우 도로, 철도, 공항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실상 bundle 재화이고, 따라서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취약점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분비율이 법률이 아닌 부서가 정하는 시행규칙을 따르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7〉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세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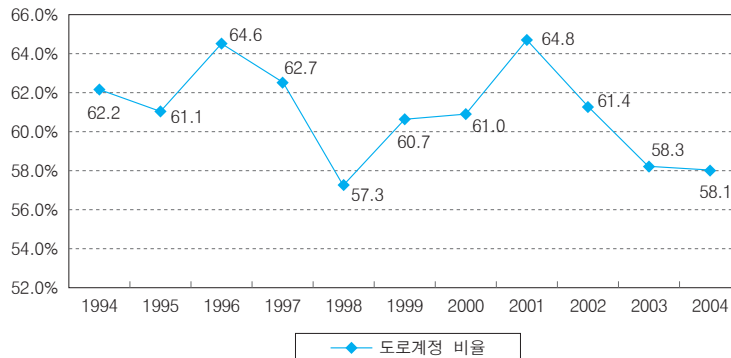
계정 구분	배 분 비 율 (%)	
	1996	2005
도로계정	65.5	51.0 ~ 59.0
철도계정	18.2	14.0 ~ 20.0
도시철도계정		6.0 ~ 10.0
공항계정	4.3	2.0 ~ 6.0
광역교통시설계정	2.0	2.0 ~ 6.0
항만계정	(기타) 10.0	10.0 ~ 14.0

그러나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규모가 교통세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재원이 남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배분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되도록 되어 있어 지출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 4]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규모



[그림 5]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 배분 비율



IV. 시사점 및 결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하여 목적세입이 존재하며, 목적세입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으므로 목적세입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목적세입이 지출의 용도를 제약하므로 용도의 제약이 없는 일반재원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입 방식이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식이 된다. 또한 목적세입 방식이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장점을 가질 수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목적세입이 지출의 용도를 제약하므로 용도의 제약이 없는 일반재원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입 방식이 효과적인 자원조달 방식이 된다. 또한 목적세입 방식이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밖에도 지출 변동이 심한 경우 등 목적세입이 바람직한 경우도 존재한다.

있다. 이 밖에도 지출 변동이 심한 경우 등 목적세입이 바람직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목적세입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목적세입의 단점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Teja(1988) 및 다수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세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보다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사용자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Buchanan(1963)의 공공선택 논의에 따르면 목적세입이 일반재원에 비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bundle 재화가 아닌 단일한 재화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세입의 지출대상은 가능한 한 소수이어야 한다. 복권기금처럼 주거안정, 복지, 의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하는 경우 특정 용도의 지출을 위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세입의 본질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반재원과 커다란 차이가 없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목적세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용도가 제한적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Bird(1997)도 목적세의 경우 지출대상은 한정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McMahan & Sprenkle(1970)이 지적한 것처럼 수요의 탄력성과 목적세입 세수의 탄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요에 비해 과다한 재원을 사전적으로 배정하거나, 목적세입의 세수 탄력성이 커서 처음에는 여유재원이 없어도 점차적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의 증가보다 세수의 증가가 크지 않은 형태로 목적세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기금의 여유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듯이 목적세입도 제도적 장치를 두어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구체적으로 목적세의 경우에도 기금이나 부담금처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 밖에 안정적인 지출이 확보될 필요성이 높은지, Niskanen(1971)의 지적처럼 중요하지만 관료의 관심이 떨어지는 지출인지, 조세저항이 매우 심각하거나 다수의 당파간 의견

대립이 많은지 등도 목적세입의 도입이나 폐지에 있어서 점검해 볼 사항이다. **KDI**

〈표 8〉 복권 매출액의 사용 용도

(단위: 억원, %)

구 분		복 권	
총매출액		34,595	
환 급	기준 금액	50%	17,298
비 용	기준 금액	4%	1,343
기타세제		기준 금액	8% 2,892
배분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준 금액	1.4% 47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준 금액	0.8% 274
	지방재정지원	기준 금액	2.3% 784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준 금액	1.7% 58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기준 금액	0.7% 235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기준 금액	2.3% 78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금액	0.6% 196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	기준 금액	0.85% 27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준 금액	0.9% 313
지원사업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기준 금액	15.9% 5,486
	국가유공자복지사업	기준 금액	1.65% 549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기준 금액	6.6% 2,286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기준 금액	2.4% 823

참고문헌

- Bird, Richard M. and Jun, Joosung, "Earmarking in Theory and Korean Practice,"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2005.
- Bird, Richard M., "Analysis of Earmarked Taxes," *Tax Notes International*, June 1997, pp. 2095~2116.
- Bos, Dieter, "Earmarked Taxation: Welfare versus Political Suppor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5, Iss. 3, Mar 2000, pp. 439~462.
- Buchanan, James M.,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 No. 5(Oct., 1963), pp. 457~469.
- Browning, E.K., "Collective Choice and General Fund Financ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975, pp. 377~90.
- Dhillon, Amrita. and Perroni, Carlo., "Tax earmarking and grass-roots accountability," *Economics Letters* 72(2001), pp. 99~106.
- Due, John F. and Friedlaender, Ann F., *Government Financ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Irwin, 1981.
- GAO, *Budget Issues: Earmarking in the Federal Government*, 1990.
- GAO, *Federal Trust and Other Earmarked Funds*, 2001.
- Goetz, Charles J., "Earmarked Taxes and Majority Rule Budgetary Process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8, No. 1, Mar, 1968, pp. 128~136.
- Goode, R., *Government Financ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Institute, 1984.
- McMahon, Walter W. and Sprenkle, Case M., "A Theory of Earmarking," *National Tax Journal*, Vol. XXIII, No. 3, 1970, pp. 255~261.
- Teja, R. S., "The Case for Earmarked Tax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35, 1988, pp. 523~533.
- Wilkinson, Margaret., "Paying for Public Spending: Is There a Role for Earmarked Taxes?," *Fiscal Studies*, Vol. 15, No. 4, 1994, pp. 119~135.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연구위원(jcheung@kipf.re.kr)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이 중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에서 소외될 경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고관세 부담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수출시장을 잃고, 우리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인 동시에 세계 제1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함에 앞서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 관세양허안의 특징을 살펴보고, 관세양허안에 나타난 무역자유화(관세철폐)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상대국의 양허안을 분석하는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중요하다.

목적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자유화 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II. FTA 현황 및 교역구조

1. FTA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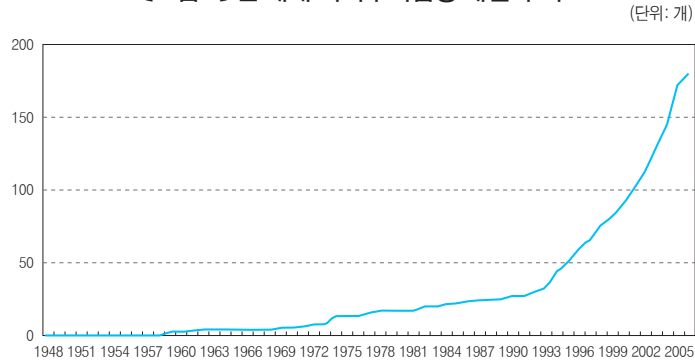
가. 전 세계 동향

FTA를 통하여 세계시장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단시간에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하여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경우, 역외국가로서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¹⁾.

2005년 7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약 180여개이며 이미 협상중이거나 검토중인 협정을 고려하면 총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 WTO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EU, NAFTA, MERCOSUR, ASEAN 등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역내 수출총액은 세계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교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은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이



나. 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짧은 시일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수지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이 발효중이며, EFTA와의 협약 체결 후 후속작업이 진행중이다. ASEAN과는 2005년 말에 기본협정에 합의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협상중에 있다. 이 밖에 인도, MERCOSUR 등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한·중·일 FTA,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해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기 체결	협 상 중	검 토 중
칠레(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EFTA(2005년 12월 서명)	ASEAN(2005년 기본협정 서명) 캐나다(2005년 협상 개시) 멕시코(2005년 협상 개시 합의) 일본(2003년 12월 협상 개시) 미국(2006년 협상 개시)	인도(2006년 1월 공동연구 종료) MERCOSUR(2005년 5월 공동연구 개시) 중국(2005년부터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 실시 중)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짧은 시일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수지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 미국의 FTA 추진 동향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GATT 및 WTO 협상을 주도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은 다자 협상의 진통 때마다 양자 FTA의 추진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실패 후에 NAFTA 협상이 개시되어 1994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요르단, 모로코와 FTA 체결에 합의하였고, 칠레,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는 근래 들어 발효되었다.

미국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권한(무역촉진권한)이 2007년 6월로 소멸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또한 적극적인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²⁾.

〈표 2〉 미국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및 발효예정	협 상 종
이스라엘(1985), NAFTA(1994), 요르단(2001), 모로코(2004), 칠레(2004), 싱가포르(2004), 호주(2005), 바레인(2006 발효예상), CAFTA(2006 발효예상), 오만(2006 발효예상)	한국, 태국, 파나마, 안데스국가연합, SACU, FTAA, 아랍에미리트

주: 1. CAFTA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2. SACU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3. FTAA :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 전체 34개국
 4. 안데스국가연합(ANCOM: Andean Community) :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규정상 FTA 서명 90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기한은 2007년 3월까지이다.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왕윤중·정인교(1998), Choi·Schott(2001), USITC(2001), 이홍식 외(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 점은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에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GDP 및 후생수준이 증가하고, 미국 농산물의 대한 수출과 한국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들 연구는 예상하고 있다.

왕윤중·정인교(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GDP가 0.36%, 후생수준이 215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농업분야가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에는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Choi·Schott(2001)의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109억달러, 89억달러의 후생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의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30.3%, 4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TC(2001)는 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54% 증가하고 수입은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가장 교역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농산물, 섬유·의류로 한국의 대미국 섬유 및 의류 수출이 125%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이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인교(2001) 연구에서 기존의 GTAP 모형과 한국적 파라미터(K-Parm), 규모의 경제, 자본축적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효과를 비교하였다. 실질 GDP는 0.42~2.0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 및 자본축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이홍식 외(2006)는 일반균형연산(CGЕ) 모형을 이용해 한국의 실질GDP는 0.42~1.99% 증가(금액기준 29억~135억달러)하고 후생수준은 0.61~1.73% 증가(금액기준 24억~68억달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미 수출 및 생산의 경우 각각 12.1~15.1%, 0.61~1.94%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감소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약 42억~5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공통점은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에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GDP 및 후생수준이 증가하고, 미국 농산물의 대한 수출과 한국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기(정태) 효과 ¹⁾	중장기(동태) 효과 ³⁾
실질 GDP	0.42% (29억달러 증가)	1.99% (135억달러 증가)
후생수준 ²⁾	0.61% (24억달러 증가)	1.73% (68억달러 증가)
대미 수출	12.1% (54억달러 증가)	15.1% (71억달러 증가)
대미 수입	29.1% (96억달러 증가)	39.4% (122억달러 증가)
대미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달러 흑자 감소
생 산	0.61% (8.5조원 증가)	1.94% (27.0조원 증가)
고 용	- 0.51% (85천명 감소)	0.63% (104천명 증가)

주: 1) 2004년 실적치 기준이며,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 미국은 100% 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함.

2)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 및 생산자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의 합임.

3) 중장기(동태)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증대로 인한 자본축적 효과를 감안함.

자료: 이홍식 외(2006).

3.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구조 비교

미국의 교역구조는 NAFT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일본을 넘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기준으로는 캐나다 다음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이어 교역비중이 7번째 큰 국가로 수출입 비중은 전체 수출입의 약 3% 정도를 차지한다. 특이한 사항으로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4〉 미국의 주요 교역국(2004)

(단위: %, 십억달러)

	캐나다	멕시코	중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한 국
수출비중	23.5 (1)	13.7 (2)	4.3 (5)	6.5 (3)	3.8 (6)	4.3 (4)	3.2 (7)
수입비중	17.6 (1)	10.7 (3)	13.4 (2)	8.8 (4)	5.2 (5)	3.1 (7)	3.1 (6)
무역수지	-69	-46	-162	-78	-46	-11	-20

주: 2004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3국과의 교역이 수출비중의 45%, 수입비중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EU와 ASEAN과의 교역비중이 각각 약 10% 정도이고, 원유를 수입하는 APEC과의 교역비중이 16%로 이들 지역이 총교역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미국, EU 등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대하여는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어 국가별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

〈표 5〉 한국의 주요 교역국(2004)

(단위: %,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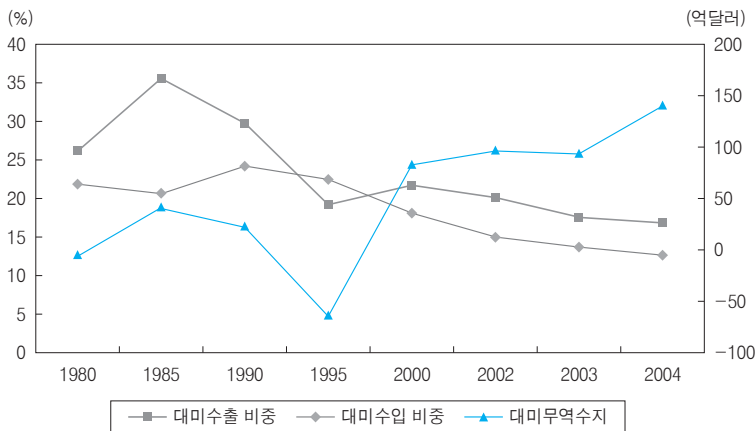
	중 국	미 국	일 본	EU	ASEAN	OPEC
수출비중	19.6 (1)	16.9 (2)	8.5 (5)	14.9 (3)	9.5 (4)	5.0 (7)
수입비중	13.2 (3)	12.8 (4)	20.6 (1)	10.8 (5)	10.0 (6)	16.3 (2)
무역수지	20	14	-24	14	2	-24

주: 2004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흑자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41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2004년 중국 200억달러, 홍콩 149억달러의 무역흑자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교역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1990년과 2004년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품목별 수출 구성비 변화를 보면, 자동차가 1990년에는 약 7%를 차지하고 섬유가 15%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2004년에는 자동차가 26%, 섬유는 6%로 비중이 변화하였다. 전자는 수출 1위 품목으로 1990년 23%에서 2004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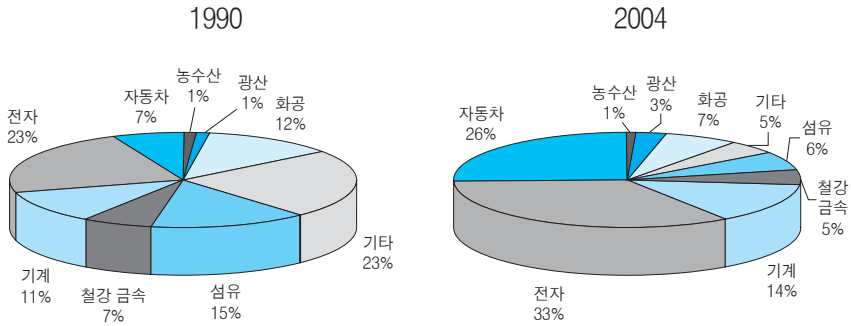


1990년과 2004년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품목별 수출 구성비 변화를 보면, 자동차가 1990년에는 약 7%를 차지하고 섬유가 15%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2004년에는 자동차가 26%, 섬유는 6%로 그 비중이 변화하였다. 전자는 여전히 수출 1위 품목으로 1990년 23%에서 2004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전자, 화공, 기계, 농수산물 등이다. 1990년에 화공과 기계가 각각 22%와 20%, 그리고 전자와 농수산물이 각각 12%와 11%의 수준에서 2004년에는 전자의 비중이 29%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계가 15%로 감소하였다. 전자산업의 수입비중 증가로 화공과 농수산물은 1990년에 비해 2%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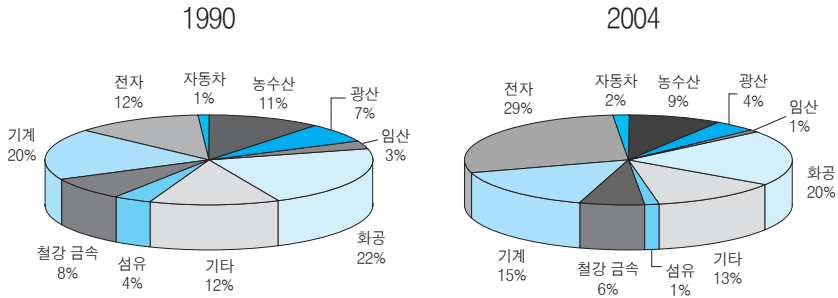
전자와 기계류는 수출입 측면에서 양국간 교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이는 양국간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추이 (1990, 2004)



자료: 이흥식 외(2006).

[그림 4]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추이 (1990, 2004)



자료: 이흥식 외(2006).

4.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율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피 및 가죽제품(HS 08),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HS 11), 신발 및 모자류(HS 12)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섬유류에 대해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피 및 가죽제품(HS 08),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HS 11), 신발 및 모자류(HS 12)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섬유류에 대해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은 농산물의 절반 이상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양국간 관세율 구조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이다.

〈표 6〉 한국과 미국의 공산품 관세율 비교

(단위: %)

HS 구분	품 목 명	미 국		한 국	
		실행세율	가중세율	실행세율	가중세율
05	광물성 생산품	0.3	0.4	3.8	3.6
06	화학생산품	3.4	2.5	8.2	7.7
07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3.6	4.0	7.6	7.4
08	모피 및 가죽제품	4.3	9.3	8.0	4.9
09	목재와 그 제품	2.2	1.4	5.7	5.2
10	목재 또는 펄프	0.2	0.3	2.4	2.6
11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8.8	15.0	9.7	9.5
12	신발, 모자류	11.1	10.0	10.1	11.3
13	석, 시멘트, 운모 제품	5.1	5.0	7.9	8.0
14	귀금속 제품	3.0	1.6	5.3	3.4
15	비금속과 그 제품	1.9	2.0	5.5	4.0
16	기계류	1.6	1.0	5.9	3.2
17	차량 및 수송기기 관련품	2.6	4.0	5.8	5.5
18	정밀기기	2.0	1.3	6.5	6.2
19	무기류	1.1	1.5	3.7	0.8
20	잡품	2.8	1.2	6.1	6.9
21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0.0	0.0	0.0	0.0
	평 균	3.8	3.0	7.0	4.5

주: 실행세율은 2003년 기준이고 가중세율은 수입액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로 2002년 기준임.
 자료: WTO.

Ⅲ.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

미국이 체결하여 발효된 FTA 중 근래에 발효된 미국-칠레 FTA, 미국-호주 FTA, 그리고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나타난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의 특징과 관세양허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세양허기간의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에 나타난 HS 8단위별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러나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의 특징은 세분화된 품목별(HS 8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책적 의미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로 통합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관세양허안 특징 분석

미국이 칠레,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관세양허 일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미국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철폐, 4년, 8년, 10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가별로 더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칠레와의 FTA에서는 12년을 호주와의 FTA에서는 18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둘째,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이 국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의 경우 칠레와의 FTA에서는 225개 품목, 호주와의 FTA에서는 206개 품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213개 품목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기계도 칠레와의 FTA에서는 208개 품목, 호주와의 FTA에서는 227개 품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212개 품목으로 거의 유사하다.

셋째,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은 기존에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함께 FTA 체결 이후 나머지 품목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모두 무세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와 달리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다른 여러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농품, 조란, 천연꿀(HS 04류), 과자, 빵류, 채소 조제품, 음료, 담배 등 음식료품이 이에 속한다. 또한 섬유류 중에서는 신발류가 이에 속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개별 국가별로 FTA가 체결되기 때문에 섬유 및 가죽제품 등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철폐, 4년, 8년, 10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이 국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있다.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은 모두 무세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다른 여러 형태의 관세 인하 일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칠 레

미국은 칠레와의 FTA에서 호주와 싱가포르에 비해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도 목재 및 가죽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등 4개 산업에 대해 무세를 적용한다. 인쇄, 출판 및 복제는 호주,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FTA 체결 즉시 모두 무세화된 산업으로 칠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 산업이 더 무세화되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일정이 호주, 싱가포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관세인하기간이 12년으로 가장 긴 품목은 모두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 속하고 있어 미국이 농업부문 개방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209개 품목에 대해 FTA 이후에도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도 볼 수 있다.

〈표 7〉 미국-칠레 FTA의 미국 관세양허

(단위: 개)

산업 구분	즉시철폐	4년 후	8년 후	10년 후	12년 후	무세적용	기 타
농림수산업	225	29	13	8	12	235	10
광업	19					100	
음식료품	700	59	47	24	20	256	209
섬유 및 가죽제품	1602	19	19			101	21
목재 및 종이제품	166					173	
인쇄, 출판 및 복제	22					25	
석유 및 석탄제품	20	1				15	
화학제품	1456					585	2
비금속광물제품	150	8	19	14		109	1
제1차 금속	540		7			106	1
금속제품	237		3			108	
일반기계	208	5				356	
전기전자기기	364	8				384	
정밀기기	148	3				166	
수송장비	290	37	28			181	
가구 및 기타제조업	152	1				165	
합 계	6,299	175	137	47	32	3,065	244

나. 싱가포르

미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관세인하 일정은 칠레, 호주와 달리 즉시철폐보다는 4년 혹은 8년의 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칠레, 호주와 체결한 FTA에 비해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수송장비에서 미국은 약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즉시철폐를 하고 나머지는 4년 혹은 8년의 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의 경우 칠레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품목이 1,456개, 호주는 1,417개 품목인 반면,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61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대신 4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이 553개로 호주 7개 품목, 그리고 칠레는 해당되는 품목이 아예 없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8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도 275개에 이른다.

〈표 8〉 미국-싱가포르 FTA의 미국 관세양허

(단위: 개)

산업 구분	즉시철폐	4년 후	8년 후	10년 후	무세적용	기 타
농림수산업	213	52	28	11	236	11
공업	17	1	2		103	
음식료품	643	154	101	16	252	175
섬유 및 가죽제품	1,506	64	30	44	100	1
목재 및 종이제품	171	22	4		165	
인쇄, 출판 및 복제	22				29	
석유 및 석탄제품	27	10			18	
화학제품	615	553	275	1	594	2
비금속광물제품	78	65	29	13	97	
제1차 금속	505	42	7		105	
금속제품	175	66	10		109	
일반기계	212	30			391	
전기전자기기	326	52	12	1	388	
정밀기기	129	12	3		154	
수송장비	160	103	29	6	141	
가구 및 기타제조업	92	49	12		166	
합 계	4,891	1,324	557	95	3,048	189

다. 호주

미-호주 FTA가 미-칠레, 미-싱가포르 FTA와 다른 점은 우선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수가 칠레, 싱가포르의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칠레에 대해서는 1,602개 품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1,506개 품목 등 대부분의 섬유 및 가

미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관세인하 일정은 칠레, 호주와 달리 즉시철폐보다는 4년 혹은 8년의 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칠레와 호주와 체결한 FTA에 비해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수송장비에서 미국은 약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즉시철폐를 하고 나머지는 4년 혹은 8년의 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441개 품목만이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리고 921개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통해 관세인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음식료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품 중 칠레는 209개, 싱가포르는 175개에 대해 특별규정을 통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361개 품목이 특별규정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고 있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18년 이후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에는 11개 농림수산물, 25개 광산품, 81개 음식료품 등이 있다³⁾. 이는 호주 농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호주는 농산물 관세율이 공산품 관세율보다 낮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표 9〉미국-호주 FTA의 미국 관세 양허

(단위: 개)

산업 구분	즉시철폐	4년 후	8년 후	10년 후	무세적용	18년 후	기 타
농림수산업	206	41		31	237	11	26
광업	19		1		78	25	
음식료품	463	105		74	257	81	361
섬유 및 가죽제품	441	1		17	221		921
목재 및 종이제품	50		1		311		
인쇄, 출판 및 복제	6				45		
석유 및 석탄제품	37				18		
화학제품	1,417	7	2		604	2	9
비금속광물제품	134	18	18	9	97		6
제1차 금속	548		1		110		2
금속제품	228	19			113		
일반기계	227	15	1		391		
전기전자기기	379	7	5		388		
정밀기기	136	7			154		1
수송장비	291	5	2		141		
가구 및 기타제조업	147	1			166		5
합 계	4,729	226	31	131	3,331	119	1,331

3) 이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대개 낙농품·조란·천연꿀, 일부 채소, 채소·과실 조제품, 토석류·소금 등이다.

2. 분석모형

본절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개별 품목의 무역자유화(관세철폐)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FTA 관세양허안에 나타난 관세유예기간으로 설정한다. FTA가 체결되면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지만, 그 기간이 협상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미-칠레, 미-싱가포르, 미-호주와의 FTA에서 나타난 미국의 관세양허안이다. 미국의 FTA 관세 양허안은 HS 8단위별로 기존의 관세율과 관세유예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미-칠레, 미-싱가포르, 미-호주 FTA에서 나타난 미국의 관세철폐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0〉 미국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 일정

칠 레	싱가포르	호 주
- 즉시철폐	- 즉시철폐	- 즉시철폐
- 4년 후 철폐	- 4년 후 철폐	- 4년 후 철폐
- 8년 후 완전철폐	- 8년 후 완전철폐	- 8년 후 완전철폐
- 10년 후 완전철폐	- 10년 후 완전철폐	- 10년 후 완전철폐
- 12년 후 완전철폐	- 기타	- 18년 후 완전철폐
- 기타		- 기타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는 관세율, 무역특화지수, 수입시장 점유율 등을 설정한다. 이 밖에 설명변수로 각 산업의 수입탄력성, 정치적 조직화(로비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⁴⁾, FTA 협상안에 제시되는 개별 품목별 관세자료(HS 8단위)로는 개별 품목별 수입탄력성 및 정치적 조직화 정도의 자료는 작성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의 수입정책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개별 품목별 관세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산업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다만, 기존의 관세율 수

4) Clinton R. Shiells et al. (1986) 산업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미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조직화(로비)가 수입 및 산업보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로는 Goldberg and Maggi(1999), Gawande and Bandyopadhyay(2000) 등이 있다. Goldberg and Maggi(1999)는 SIC 3-digit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107개 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입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즉, 관세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약할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준이 정치적 조직화 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 정치적 조직화 정도도 모형에서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로 FTA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FTA 관세양허안에 나타난 관세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수입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즉, 관세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약할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T_{ij} = c + \beta_1 Tariff_i + \beta_2 TSI_{ij} + \beta_3 TSI_i + \beta_4 SHIM_{ij} + e_{ij}$$

T_{ij} : j 국가에 대한 i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

$Tariff_i$: i 품목의 관세율

TSI_{ij} : i 품목에 대한 j 국가와의 무역특화지수 ($= X_{ij} - M_{ij} / (X_{ij} + M_{ij})$)

TSI_i : i 품목에 대한 전 세계 무역특화지수 ($= X_i - M_i / (X_i + M_i)$)

$SHIM_{ij}$: i 품목에 대한 j 국가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M_{ij} / M_i)

X_{ij} : i 품목의 j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

M_{ij} : i 품목의 j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입액

X_i : 미국의 i 품목 수출액

M_i : 미국의 i 품목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전체 수입 중 상대국가로부터 수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 무역규모 대비 순수출로 정의되는 무역특화지수(TSI) 값의 범위는 $-1 \sim +1$ 이며, 영(0)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영(0)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무역특화지수가 영(0)보다 크면 수입에 비해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많으면 영(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수입에 특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RCA지수(비교우위현시)를 고려할 수 있다. RCA지수와 무역특화지수는 거의 유사하지만 양자간 RCA지수는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양자간 무역특화지수와 함께 전 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라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에서는 다른 경향, 즉 경쟁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분석결과

종속변수가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기간으로 0, 4, 8, 10, 12, 18로 구성되어 있어 OLS는 적합한 분석방법이 아니다. 관세철폐기간이 몇몇의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에 대해 한 품목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보다 짧은 유예기간을 점차 협상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순차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설명변수로 관세율, 양국가간 무역특화지수, 수입시장 점유율을 사용한 모형에서 설명변수의 부호는 기대했던 바대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계수 값은 양(+)으로, 기존 관세율이 높을수록 무세화를 유예하는 기간이 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간 무역특화지수의 계수 값은 음(-)의 값으로 미국이 상대국에 대한 경쟁력이 낮을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할 확률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국의 수입이 미국의 수입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즉, 상대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할 확률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호주, 칠레의 고유의 성격을 통제하기 위해 호주와 칠레 더미를 사용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도 보았듯이, 분석 결과 미-싱가포르 FTA에서 미국의 관세유예기간이 미-호주 FTA와 미-칠레 FTA에 비해 더 길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이고 있다.

관세율의 계수 값은 양(+)으로, 기존 관세율이 높을수록 무세화를 유예하는 기간이 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간 무역특화지수의 계수 값은 음(-)의 값으로 미국이 상대국에 대한 경쟁력이 낮을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할 확률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미국의 FTA 관세양허안 분석결과 1

유예기간	Coef.	Std. Err.	z	P> z
관세율	.9379036	.0711262	13.19	0.000
양자간 무역특화지수	-.0927906	.022289	-4.16	0.000
수입시장 점유율	.9562446	.3337256	2.87	0.004
호주 더미	-.6248094	.0318667	-19.61	0.000
칠레 더미	-1.045314	.0346598	-30.16	0.000

Number of obs = 15455
 Log likelihood = -7521.5801
 LR chi2(5) = 1345.39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821

설명변수로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관세율, 수입시장 점유율, 호주와 칠레 더미 등은 기대했던 대로 앞서 분석한 모형의 설명변수 부호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분석도 앞서 분석한 모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의 계수 값은 음(-)의 값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경쟁력이 낮을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할 확률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간 무역특화지수의 계수 값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며,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FTA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할 때 대(對)세계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양자간 경쟁력 지수, 즉, 상대국에 얼마나 수출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기보다는 미국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상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되는지, 즉, 수입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큰지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 분석결과 2

유예기간	Coef.	Std. Err.	z	P> z
관세율	.9191996	.0712161	12.91	0.000
양자간 무역특화지수	.0211923	.0273168	0.78	0.438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1905753	.0258734	-7.37	0.000
수입시장 점유율	1.242692	.3340654	3.72	0.000
호주 더미	-.6196186	.0319375	-19.40	0.000
칠레 더미	-1.058195	.0348295	-30.38	0.000

Number of obs = 15455
 Log likelihood = -7493.6531
 LR chi2(6) = 1401.25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855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율과 수입시장 점유율이 미국의 관세철폐기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제품일수록 관세철폐기간은 길고,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일수록 관세철폐기간이 길게 설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가별 더미를 사용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 호주와 칠레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자간 무역특화지수와 함께 전 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양자간 무역특화지수보다는 전 세계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FTA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할 때 대세계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상대국에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는지를 고려한 양자간 경쟁력 지수보다는 미국 국내로 상대국이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즉, 수입시장 점유율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섬유류 관세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도 높고, 또한 우리나라 섬유류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고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양허안을 작성할 경우 섬유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보다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근래에 발효된 미국-칠레 FTA, 미국-호주 FTA, 그리고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나타난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의 특징과 관세양허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이 칠레,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관세양허 일정을 보면, 관세철폐 기간을 즉시철폐, 4년, 8년, 10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에 의해 여러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FTA 관세양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관세율과 수입시장 점유율이 미국의 관세철폐기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가 전체 미국 수출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수출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을 분류해 보면, 의류(HS 60, 61), 모자류(HS 65) 등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며, 이 밖에 일반차량, 악기, 완구 및 운동용구 등의 약 30%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살펴보아도 섬유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편물(HS 60)이 미국 수입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았고, 견·견사 견직물(HS 50), 인조 필라멘트 섬유(HS 54), 인조 스테이플 섬유(HS 55) 등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대부분의 의류, 모자류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이 밖에 일반차량(HS 87), 전기기기·TV·VTR(HS 85), 항공기와 부분품(HS 88), 고무와 그 제품(HS 40) 등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최근에 선박(HS 89)의 시장 점유율이 27.2% 급증했다.


미국의 섬유류 관세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도 높고, 또한 우리나라 섬유류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고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양허안을 작성할 경우 섬유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보다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전자 다음으로 높

다. 또한 미국에서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고, 미국의 무역특화지수도 전 세계 대비 -0.45 , 양국간 대비 -0.90 으로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일반차량(HS 87)에 대해 미국이 관세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일반차량(HS 87)의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15%로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차량(HS 87) 관세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국도 자국의 관세유예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를 포함한 I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결과인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대부분의 IT 품목들이 무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곡물류, 화학류, 항공기 및 부분품 등이며, 특히, 곡물 등 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분야이다. 따라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섬유류, 음식료품 등과 연계해서 관세유예기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다수의 품목에 대해 비종가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종량세에 대한 언급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FTA는 최종적으로 양국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교역을 통한 후생 증가를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하여 양국간 절대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관세유예기간을 축소하여 다른 품목에서 실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FTA는 최종적으로 양국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교역을 통한 후생 증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하여 양국간 절대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관세유예기간을 축소하여 다른 품목에서 실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왕윤중 · 정인교,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제4권 제2호, 1998, pp. 135~188.
- 이홍식 · 이창수 · 이경희,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
- 정인교, 「한·미 FTA 주요이슈와 경제적 효과」, 제2차 FTA 정책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경제정책연구원, 2001.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Choi and Schott,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1.
- Clinton R. Shiells et al., “Estimates of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Imports and Home Goods for the United Stat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2(3), 1986, pp. 497~519.
- Gawnade K, and U. Bandyopadhyay, “Protection for Sale? Evidence on the Grossman–Helpman Theory of Endogenous Prote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2000, pp. 139~52.
- Goldberg, P. K. and G. Maggi, “Protection for Sale: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5), 1999, pp. 1135~1155.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2001.
- WTO, www.wto.org.



정책토론회리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 주 제 :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 일 시 : 2006. 3. 16(목) 13:30~16:00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제1부 세법연구센터 개소식

- 13:30~13:45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축 사: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격려사: 최송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13:45~13:55 세법연구센터 소개

- 13:55~14:20 개소기념 리셉션

제2부 세법연구센터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

- 14:20~15:5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표자: 안중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토론자: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임양운 변호사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한만수 한양대 교수

한상울 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가나다순)

- 15:5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 회

* 본 원고는 2006년 3월 16일(목)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세법연구센터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의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안중석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I. 서론

-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 (tax evasion) 외에도 법률상의 허점 (loophole)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 (tax avoidance)하는 절세전략 (tax planning)이 과세당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법률 제정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허점을 활용하여 법률이 의도하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도를 왜곡시킴
 -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과세기반을 와해할 수 있음
- 실제로 이러한 공격적인 절세전략 (ATP: Aggressive Tax Planning)이 어느 정도 발생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산업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기타 투자 및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의 절세전략이 가능해짐
 - 캐나다의 경우 역외 금융센터에의 투자가 1990년 110억달러에서 2003년 880억달러로 증가
-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였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반조세회피 일반규정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의 도입
 -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여 세법을 남용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상응하도록 과세함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 국세청 내에 과도한 조세회피 전략을 다루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 호주, 캐나다
 - 새로운 조사 기법의 개발: 호주
 - 양국간 정보교환의 적극적 활용 및 공동조사: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OECD
 - 정보교환 방식의 개선
 -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운용
-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 절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조세감면제도의 존재, 조세조약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가능성이 큼
 - 특히 말레이시아의 라부앙과 같이 조세피난처 (Tax Haven)이면서 조세조약의 일반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지역의 존재는 국제 거래를 통한 과감한 절세전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이 됨

- 또한 절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에서는 국내·외에서 드러난 공격적 절세 전략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TP)의 정의 및 사회·경제적 효과
- ATP의 국내·외 사례
- ATP의 특징
- 주요국의 ATP에 대한 대응
- 정책시사점

II. ATP의 정의, 사회·경제적 효과

□ ATP(Aggressive Tax Planning)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아직 학술적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음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에서 ATP 위원회를 두는 등 Aggressive Tax Planning 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OECD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ATP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ATP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국제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AITP(Aggressive International Tax Planning)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구(Centers of Expertise)를 창설하였으며,
-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 tax base erosion, tax planning, tax fraud, tax shelter scheme, tax haven 등의 용어를 사용함

□ 호주 국세청에서는 AT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¹⁾

- ATP란 “세법의 정책적 의도를 훼손하며,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절세전략 (tax planning that under mines the policy intent of law and erodes community confidence in the fairness and equity of the system)”을 의미함
- 이는 절세전략(tax planning)이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세법의 정책 의도를 존중하고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세전략이 ATP에 해당됨

- 중요한 상업적·경제적 목적 없이 특정한 조세혜택만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세 전략
- 궁극적으로 상업적·경제적 목적이 있는 경

1) OECD(2005(1)).

우에도 세법의 정책의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절세전략은 ATP에 해당됨

-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절세전략을 단계별로 분석해 볼 때 특정한 조세혜택을 받을 목적 말고는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세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정책의도도 다양하며, 때로는 특정 규정의 정책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절세전략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TP를 더 이상 자세하게 정의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

○ 다만 ATP로 간주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ATP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도출하여 대응방안 모색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바, 본고에서는 제III장에서 ATP 사례들을 살펴보고 제IV장에서 공통된 특징들을 정리함

□ ATP의 사회·경제적 효과

○ 법률의 정책의도 왜곡

○ 조세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훼손

- ATP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세부담 격차가 큼
-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부유한 자들이 ATP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반면 소규모 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지나친 조세경쟁의 유발

- 절세전략은 조세제도의 변화 및 국가·지역

간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함

-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투자와 세부담 회피 목적의 명목상 투자를 혼동할 경우 경제적 실익 없이 명목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음

○ 과세기반의 잠식

- 최근에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각종 규제 완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절세전략이 가능해졌으며 ATP로 인한 과세기반 잠식 가능성이 큼

III. ATP 사례

□ 다음에서는 ATP로 간주되는 국내·외 사례 여섯 건을 간추려 소개함

○ 처음 세 건의 사례는 조세피난처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조세피난처 등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 과세를 회피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사례 1~3)

○ 다른 세 건의 사례는 국내 과세제도를 남용한 사례임

- 사례 4는 신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손실과 이익의 발생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세부담을 축소하는 사례이며,
- 사례 5는 이자소득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환차익으로 전환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사례임
- 사례 6은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임

1. 변칙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소득의 국외 이전

□ 거래의 목적

○ 1997년 말 환율 폭등으로 대규모 환차익을 실현한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이 환율이 불안한 동남아 6개국의 환율과 연계한 채권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동 은행의 홍콩지점으로 이전하여 국내 소득세 과세를 회피함

□ 역외 채권(파생상품) 거래내용([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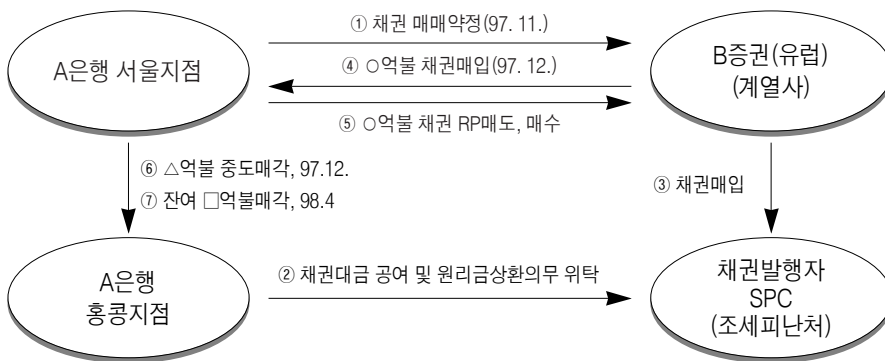
- ① 대규모 환차익이 발생한 A은행 서울지점이 계열사인 유럽 소재 B증권과 채권 매매약정을 체결함
- ② A은행 홍콩지점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 ③, ④ A은행 서울지점은 유럽의 B증권사와의 채권매매약정에 따라 그 채권을 매입함
- 동 채권은 당시 환율이 불안하였던 동남아 6

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의 환율과 연계된 채권으로서 원금상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남아 6개국 중 한 국가라도 화폐가치가 10% 이상 하락하면 그 국가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금상환액을 산정함
- 채권의 보유기간중 화폐가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발생하면 중도·만기 상환시 환율이 채권 매입시점의 수준으로 복귀된 경우에도 채권 보유기간중 가장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상환액을 결정함

- ⑤ A은행 서울지점과 B증권은 동일 채권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도, 매수 거래를 함
- ⑥, ⑦ A은행 서울지점은 1997년 12월과 199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A은행 홍콩지점에 채권을 매각함
- 원금상환약정에 따라 채권매각 대금은 화폐 가치가 10% 이상 하락한 인도네시아 루피아

[그림 1]



* 채권 발행액과 관련하여 실제 자금 이동은 없었음
* ○역불 = △역불 + □역불

로 계산하였으며, 원금상환계산식과 두 번의 중도매각에 따른 원금손실액은 다음과 같음

- 원금상환액 =
(채권원금(달러표시) × 매입시점(1997. 11. 28)의 루피아 환율)/(채권보유 기간중 최고 환율)
- 두 번의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1차 매각(⑥ 1997년 12월) :
 $\Delta - (\Delta \times 3,640) / 5,953$
2차 매각(⑦ 1998년 4월) :
 $\square - (\square \times 3,640) / 13,125$

- A은행 서울지점은 1997년 말 원화 하락으로 인해 거래의 외화 평가익이 발생하자 특수관계자 간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실을 유발하여 국내 과세를 회피함
- 위 서울지점의 손실액은 실질적 거래상대방인 같은 은행 홍콩지점의 소득으로 이전되었는데, 홍콩은 역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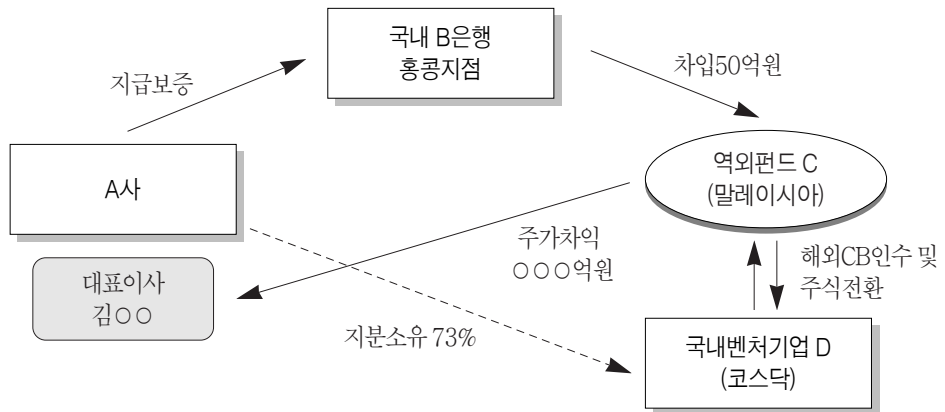
는 국가로서 국내에서 세금을 회피한 소득에 대해 홍콩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과세당국은 채권 약정일(1997년 11월) 이후 1997년 12월에 이미 루피아의 화폐 가치가 10% 이상 하락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시점에서 중도환매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내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간주함
- ○○년 세금 ○○○억원을 추정 · 고지

2.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 거래의 목적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전략의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서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국내 관계사에 투자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한 사례임

[그림 2]



□ 거래의 개요

- 내국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함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그 펀드로 하여금 국내 계열회사에 투자하도록 하는 경우 역외펀드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 납부의무가 없음

□ 구체적 거래 내용([그림 2] 참조)

-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김○○는 조세피난처(말레이시아)에 역외펀드 C를 설립함
- 역외펀드 C는 국내 B은행의 홍콩지점으로부터 자금 50억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A사가 지급을 보증함
- 역외펀드 C는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A사의 자회사인 국내 벤처기업 D사가 발행한 CB를 저가에 인수하고 3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실현된 이익은 A사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함

□ 결과적으로 내국인의 국내 자회사 주식거래를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함

- 말레이시아 라부앙은 역외펀드 C사가 해외 투자를 통해 얻은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한-말레이시아 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역외펀드가 국내에서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과세당국은 말레이시아의 역외펀드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자가 내국인이고 모든 거래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내국인이 국내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임

3. 고이올 사채 발행을 통한 주식매각이익 상계 - 일본의 사례

□ 거래의 목적

-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이올 사채를 발행하여 당해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주식매각 수익을 상계함

□ 거래의 개요

-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인수할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손금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조세피난처(이 건에 있어서는 Jersey)에 회사를 설립하여 동 사채를 간접적으로 거래함
- 조세피난처에 해외법인과 동 법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유한책임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해외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수함
 - 해외법인은 그 자금을 이용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취득함
- 파트너십은 이 자금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고이올 사채를 매입함

- 또한 해외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매입한 대표이사의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회피를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별도의 무배당 Trust를 설립함
- 일본의 세법상 신탁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발생주의에 의해 과세하지 않음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는 은행에 해외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매각하고 동 대금을 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내국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내역을 제거하게 되고 은행은 매입한 사채를 즉시 신탁에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음

□ 구체적인 거래 내역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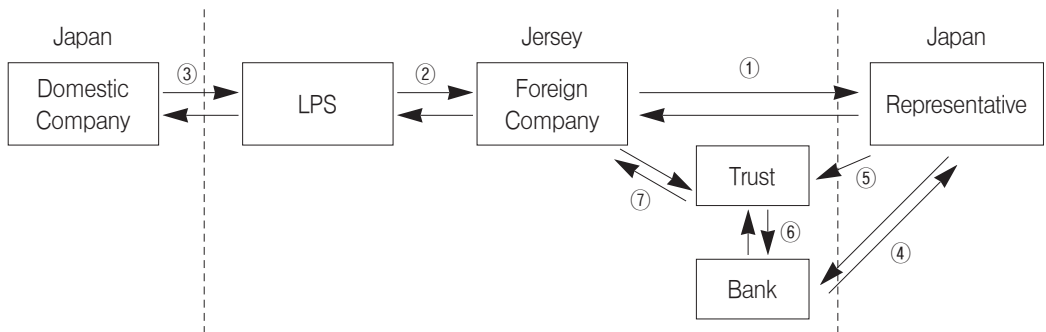
- ① Foreign Company가 발행한 사채를 Domestic Company의 대표이사 등이 취득
- ② Foreign Company는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LPS(Limited Partnership)의 지분을 취득하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획득
- ③ LPS는 Foreign Company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Domestic Company가 발행한 고이울 사채를 취득함

- ④ 대표이사 등은 Foreign Company의 사채를 은행에 매각함
- ⑤ 대표이사 등은 매각대금으로 Trust에 투자함
- ⑥ Trust는 대표이사 등이 투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Foreign Company의 사채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함
- ⑦ Trust는 Foreign Company의 사채를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이자수익을 얻게 되나 이를 배당하지 않고 전액 유보함

□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통하여 손실을 만들어냄

- 대표이사는 신탁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음
- 내국법인의 사채발행 목적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기업 구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내국법인의 기업 구매의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함
- 일본 국세청은 내부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함

[그림 3]



- 내국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사채발행 수수료가 무시하자는데 합의하였으며,
- 내국법인의 손실금액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자는 합의가 존재하였음

□ 과세결과

- 일본 국세청은 자회사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얻은 이득을 대표이사에게 공여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이자의 일부에 대해 손금성을 부인함
- 또한 해외 Trust를 투자펀드로 인정하지 않고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과세함

4. 금융상품을 이용한 손실 발생시기 조정

□ 거래의 목적

- 이월결손금의 시한 내 공제를 위하여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특정 시기에 이익을 과다계상하여 기한 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거래의 구성 및 세금절감 효과

- ○○회계법인은 IMF 영향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국내 시중은행의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의 기간 경과가 예상되자 이월결손금 이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상품(상환우선주) 거래를 개발하여 국내은행의 세금탈루를 조장함
- 해외상환우선주를 취득하여 원금과 배당수령권을 분리하고 그 중 배당수령권만 이월결

손금 공제시한이 도래된 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양도함

- 이 경우 이익만을 과대계상하여 이월결손금을 우선 공제받을 수 있음
- 추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는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상환우선주를 양도하여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함

□ 국내은행의 '97~'99 발생 이월 결손금으로서 미공제 잔액은 '02년 말 현재 총 23조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거래를 이용할 경우 최대 6조 2천억원의 세금회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과세당국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시가로 가치를 평가하도록 관련예규를 변경함으로써 상환우선주에 부여된 두 종류 자산의 분리매각에 따른 세무상 실익이 없어져 고객 이월결손금을 이용한 변칙 조세회피기도를 사전에 방지함

5. 엔화스왑예금을 이용한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 선물환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가입시 확정되는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소득인 환차익으로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예금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기획하고 '03년 이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함

- 은행의 권유 문구: “고객님, 엄선된 분들만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돈(원화)을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종합

소득세 부과대상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흐름([그림 4] 참조)

○ 예금가입 시점

- 가입자가 현물환율로 은행으로부터 엔화를 매수한 후(①, ②) 엔화 정기예금 예치(③)
- 은행은 고객에게 만기시 엔화예금이자 및 예금 당시에 확정되는 선물환프리미엄을 확정금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외국환거래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여 엔스왑예금 약정 체결
- 엔스왑예금 가입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은 본점 외환거래 부서에 고객이 투자한 엔스왑예금과 금액 및 만기가 동일한 선물환 매도계약 체결 의뢰

○ 만기시점

- 엔화 정기예금 원리금 인출(④)→동 원리금을 약정한 선물환율로 매도하여 원화 수취(⑤, ⑥)
- 만기에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 및 선물환프리미엄)를 원화로 수령

□ 이 거래는 통상적 원화/외화 예금과는 달리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임([그림 5], [그림 6] 참조)

○ 실제 엔화예금의 금리는 0.5%에 불과하나 만기 시점에 선물환 계약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4% 안팎의 선물환차익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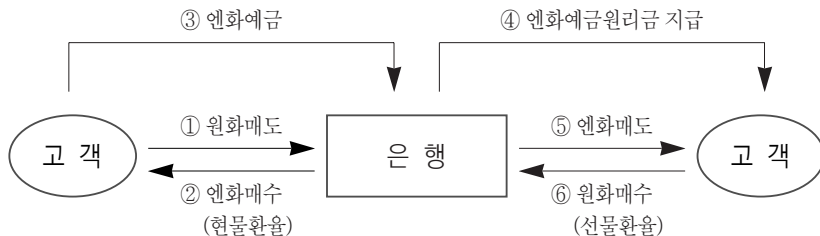
○ 엔화스왑예금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0.5%의 예금이자에 대해서만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으며 환차익에 해당하는 4%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과세당국의 의견

○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재경부는 관련예규(2005. 3. 30)에서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는 금전 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 취급은행

[그림 4]



에 대하여 2002. 1. 1 이후부터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할 것을 통지·과세함

6. 오피스텔 분양 부당환급

□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에게 허위 사업자등록,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당환급을 받도록 대행함

□ 거래내역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나 사업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

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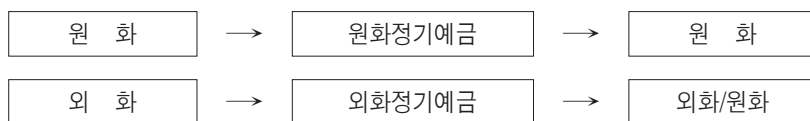
○ 세무대리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에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환급을 조장함

IV. ATP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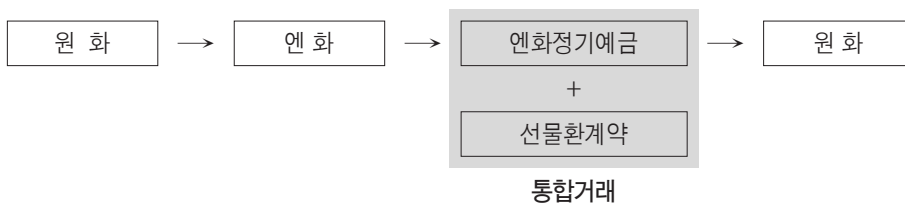
□ 호주의 국세청은 그동안의 ATP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한 ATP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²⁾

- (1) 절세전략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세 부담 감소가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 목적이 되는 단계가 발견됨
- (2) 절세전략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

[그림 5] 일반정기예금



[그림 6] 엔화스왑예금



2) OECD(2005(1)).

- 며, 기업집단 내(intra-group)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업활동의 경제적 실질과는 다른 조세혜택을 받음
- (3) 금융위험(financial risk)과 조세혜택의 규모가 통상적인 상업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름: 절세 규모가 자본비용보다 큰 경우도 있음
 - (4) 동일한 투자활동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세혜택을 받음: 한 국가 내에서 중복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5) 불량투자 사업 등의 경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공제액을 부풀림
 - (6) 절세전략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라운드 로빈 금융(a round robin finance): 자금의 순환거래로서 통상적으로 하루 만에 서류의 이전을 포함하여 모든 거래가 완료되며, 순환 시작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전체적인 자금의 규모에는 변화가 없음
 - 지분한정 상환청구권부 대부(a non-recourse loan):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다른 자산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 대부
 - 제한적 상환청구권부 대부(a limited recourse loan): 자금을 차입한 투자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차입자금으로 투자한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는 대부
 - (7)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절세전략에 대해 상담

- 하고 방향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세전략의 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함
- (8) 납세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자가 두 명 이상임
 - (9) 절세전략을 운영하는 자가 계획을 입안하여 판매하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자가 유사한 전략을 다른 납세자에게 판매함
 - (10) 계약의 실제 운영이 계약서나 기타 법적 서류에 나타난 것과 다름
 - (11) R&D에 대한 조세지원과 같이 특정한 조세지원이나 특정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anti-avoidance provision)을 정책의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남용함
 - (12) 자선기관과 같은 비과세 기관이나 손실이 많이 누적된 기관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세탁함
 - (13) 절세전략은 항구적인 감세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가속상각 등을 통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14) 조세피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호주 국세청은 위에 열거한 특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TP의 가능성이 크다고 봄
 - ATP는 특정한 납세자를 위해 고안·운영되는 맞춤형 ATP와 절세형 투자상품의 형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ATP로 구분할 수 있음
 - 맞춤형 ATP는 특정한 개별 납세자의 선호에

맞게 고안되고 운영되는 절세전략으로서 대체로 중규모 이상의 기업, 부유한 개인 납세자들이 활용함

- 주로 절세전략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특정 집단의 납세자가 활용하며, 공식적인 제안서 등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특정 국가에서 고안·운영되는 ATP가 모두 그 국가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국가를 은신처(tax shelter)로 삼아 다른 국가의 조세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음
- 과세당국을 특별히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맞춤형 ATP라고 할 수 있음

□ 시장판매형 투자전략(mass marketed investment scheme)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엔화스왑예금의 판매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 시장판매형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공개적인 상품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함
 -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을 첨부하기도 함
 - 통상(농업이나 특허 등과 관련된) 일반적 공제 또는 (R&D 등에 대한) 특정한 조세감면 등을 목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채권(linked bond)을 통해 과세이연을 유도하기도 함
 - 급여소득자를 포함한 개인과 법인에 판매됨
 - 보통 특정한 개인을 위해 수정·조정되지 않음

- 공개된 시장에서 절세전략의 내부적 구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판매됨
-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에 많이 의존함
 - 라운드 로빈 파이낸싱
 - 지분한정 상환청구권부 또는 제한적 상환청구권부 대부
 - 납세자의 책임은 투자이익에 국한됨(투자원금 보장)

V.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절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 선진국에서도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ATP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의 도입·정비: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ATP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됨
 - ATP 전담 조직의 신설: ATP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ATP 적발 및 조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ATP의 조기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함

- 정보의 공개: 호주 국세청은 ATP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ATP 관련 규정, 사례, 판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ATP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함
 - 관련국과의 정보교환: 조세조약에 의한 자동 정보교환 외에 ATP 사안별로 특정 정보를 요청·교환하기로 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도 함
 - 적극적 의견 제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문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견을 질의·회신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ATP를 사전에 예방함
- 호주의 대응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대응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정비
- ATP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반조세회피 일반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도입·강화하는 것임
 - 이전가격 과세제도 등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세회피 방지 규정과는 달리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은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여 세법을 남용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상응하도록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법에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세기본법에 두고 있음
- 최근 캐나다에서 AITP에 대응하기 위해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을 강화함
 -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우리나라의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 국제조세회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자 2005년 세계 개편안에 국제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포함시켰음
- 조직의 정비 및 정보수집·분석 활동의 강화
- 호주에서는 국장급이 담당하는 ATP운영위원회(ATP steering committee)를 두어 ATP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함
 - 각 국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의 과장급 ATP 전문가를 두고 이들이 ATP위원회에 참여하여 ATP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정보를 관련부서에 전파함
 - 위원회 산하에 정보분석팀, ATP 조장자 TF(Promoters Task Force), 소기업 ATP

- 분석팀을 두고 있음
- 정보분석팀은 실시간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ATP의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ATP 조장자 TF는 ATP 조장자들이 조세 회피를 초래하는 절세전략을 개발하고, ATP 참여를 권고·판매하는 기업적 활동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에 투자은행이나 조세 전문가 집단과 같이 맞춤형 ATP를 개발하는 대규모 promoter들을 전담하는 반을 따로 만들어 이 기능을 강화함
- 소기업 ATP 분석팀은 개인들, 특히 ATP에 참여한 전력에 있는 자들과 promoter 및 그 관련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절세전략의 추세를 분석하고 새로운 절세전략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그 외에 조세피난처 TF가 있는데, 이 TF는 조세피난처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춤
- 캐나다에서는 AITP(Aggressive International Tax Planning)를 담당하는 전문센터(CE: Center of Expertise)를 도입함
- 2005년 8월 캐나다 전역에 11개의 CE를 설립하여 AITP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함
- AITP CE는 총 40여명의 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AITP의 행태를 분석하고 시범적 조사(test audits)를 수행하며, 누가 AITP에 참여하고 조장하는지, 어떻게 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캐나다 정부는 CE의 활동을 통해서 관련 정보활용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호주에서는 전통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해 케이스별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 ATP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분석모형인 PASTO 모형을 개발함
- PASTO 모형은 ATP를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다음의 다섯 개 요소에 근거하여 ATP 가능성을 평가하고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모형임
- (1) Promoters: 누가 절세 계획을 판매·조장하며, 과거에 다른 절세전략에 참여하였나?
- (2) Associates of the promoters or key taxpayers: 누가 promoters를 도와서 절세전략을 판매하며, 그들에 대해 이미 알려진 사실들은 무엇인가?
- (3) Schemes: 절세전략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 (4) Taxpayers: 누가 절세전략을 구매하며, 참여하는가?
- (5) Other issues: 형법, 회사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내용
- 스웨덴의 경우 자금의 국제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특정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음
- 스웨덴 기업이나 개인이 75,000~100,000 SEK(약 10,000~15,000USD)의 자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내역이 중앙은행에 통보됨

- 중앙은행은 국제거래 내역 중 버뮤다, 케이만 군도, 사이프러스, 지브롤터, 홍콩,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등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함
- 스웨덴 과세당국은 또한 은행카드의 거래 내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특정 개인이 조세피난처의 은행에서 발행된 카드를 스웨덴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의심함
- ATP는 관련 국가간 정보의 교환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공동 수사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 국가간에 이러한 협력사례가 많이 보고됨

□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적극적인 의견제시

- 호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시장판매형 투자상품과 관련된 ATP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를 극복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의견을 정리하여 회신하면 상품판매자는 상품안내서에 과세당국의 회신을 첨부함
 - 최근에는 고객들이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당국의 회신(product ruling)이 첨부되지 않은 투자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호주는 또한 ATP 홈페이지(www.ato.gov.au/atp)를 개설하여 반조세회피 일반규정, 조

세피난처 대응 규정 등 ATP 관련 규정과 확인된 ATP 사례, 절세전략과 관련된 판례 등을 공개함

- ATP 홈페이지는 ATP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납세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및 ATP 조장자들에게 무분별한 ATP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다자간 정보공유

- OECD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ATP 디렉토리를 만들어 각국의 ATP 사례 및 대응방법, 조사기법, 기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 OECD의 ATP 디렉토리는 민간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으며, IP가 등록된 정부당국만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로서 정부간 공유가 필요한 고급 정보들을 공유하여 ATP에 대한 조사 및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5년 3월 7개국(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호주)으로 구성된 ATP 작업반이 구성되어 ATP 디렉토리의 개설 및 운영, 기타 정보수집 및 교환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 최근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7개국이 추가되어 총 14개국이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음

VI. 정책시사점

- ATP는 법률에 나타난 국가 정책의 의도를 훼손하고 과세기반을 침식하며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 그러므로 ATP를 통한 조세회피를 가능한 한 빨리 인식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세제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세제의 남용은 세법 제·개정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허점(loophole)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법 제·개정시 최대한 허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넓은 세원 - 낮은 세율’로 인식되는 ‘보편과세’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임
- ATP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제도 및 관행으로서 가장 먼저 ATP를 적발·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임
 - 국내 ATP와 관련하여 국제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세회피 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ATP를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조세회피를 한 자에 대해 회피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정비 및 정보의 수집·활용
 - 상설조직은 아니더라도 ATP TF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부서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TP 조장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장판매형 ATP와 관련해서는 호주와 같이 질의·회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자가 새로 개발된 투자상품에 대해 사전에 과세당국의 의견을 받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ATP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모르는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ATP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엔화스왑예금 상품의 경우 비공식적인 의견을 상품판매에 악용한 사례가 있으나, 상품 전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세당국의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 호주의 경우 질의에 대한 회신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관련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회신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자평함
- 국제거래와 관련된 ATP의 경우 양자간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OECD 등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조세조약에 의거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은 ATP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할 정보의 내용, 교환방법 그리고 공동조사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Havens and Tax Administration,” 2004.

_____, “Part IVA: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for Income Tax,” 2005.

OECD, “Baltic Sea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CCNM/GF/TAX/WP8/TIM(2004)9/CONF, 30 Mar 2004(1).

_____, “Counteracting International Fraud in E Commerce: Intelligence Gathering and Case Selection Techniques,” CCNM/ GF/TAX/WP8/TIM(2004)3/CONF, 2 Apr 2004(2).

_____, “Counteracting the Tax Base Eros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lace of Residence,” CCNM/GF/TAX/WP8/TIM(2004)15/CONF, 13 Apr 2004(3).

_____,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 of Stepping Stone Companies in Swedish Tax Planning,” CCNM/GF/TAX/WP8/TIM(2004)14/CONF, 1 Apr 2004(4).

_____, “Exchange of Information Resulting in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mpany,” CCNM/GF/TAX/ WP8/TIM(2004)13/CONF, 13 Mar 2004(5).

_____, “Exchange of Information Resulting in the Determination that a Taxpayer Claiming to be Fiscally Domiciled Abroad Actually Has His Tax Domicile in France,” CCNM/GF/TAX/WP8/TIM(2004)11/CONF, 30 Mar 2004(6).

_____, “Identification of Aggressive Tax Planning Using Shelters or Tax Havens,” CCNM/GF/ TAX/WP8/TIM(2004)10/CONF, 13 Apr 2004(7).

_____, “Industry Wide Exchange of Information,” CCNM/GF/TAX/WP8/ TIM(2004)2/CONF, 23 Mar 2004(8).

_____,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Large Tax Investigations,” CCNM/GF/ TAX/WP8/TIM(2004)12/CONF, 6 Apr 2004(9).

_____,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ases/ Treaty Shopping,” CCNM/GF/TAX/WP8/TIM(2004)17/CONF, 13 Apr 2004(10).

_____, “Interplay of Aggressive Tax Planning

Scheme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CCNM/GF/TAX/WP8/TIM(2004)1/CONF, 23 Mar 2004(11).

_____, “Mutual Benefits of Effective Exchange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for Tax Administration Bod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CCNM/GF/ TAX/WP8/TIM (2004)6/CONF, 2 Apr 2004(12).

_____, “Raising the Awareness of Tax Inspectors Concerning Money Laundering,” CCNM/GF/ TAX/WP8/TIM(2004)4/CONF, 5 Apr 2004(13).

_____,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me,” CCNM/GF/TAX/WP8/TIM(2004)5/CONF, 6 Apr 2004(14).

_____, “The Hollywood Connection- Involvement of the Motion Picture Industry in Austrian Tax Shelter Schemes,” CCNM/GF/TAX/WP8/TIM(2004)8/ CONF, 2 Apr 2004(15).

_____, “Australian Tax Office Paper on Aggressive Tax Planning,” CCNM/GF/ WP8/NOE1/WD(2005)7/CONF, 30 Sep 2005(1).

_____, “Presentation by Canada on the Creation of 11 Expertise Centers to Address Aggressive International Tax Planning,” CTPA/CFA/WP8/NOE1 /WD(2005)8/CONF, 14 Oct 2005(2).

_____, “Proposed Directory on Aggressive

Tax Planning Schemes,” CTPA/CFA/ WP8/RD(2005)1/CONF, 15 Mar 2005(3).

토론 요약

조세회피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김세형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저희 언론은 평가만 맡고 있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특히 엔스왑저축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4.5%를 부과하느냐에 대해 문제가 많다. 현재는 론스타가 3조원 이상의 수익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대한 과세문제가 있고, SK, 소버린, 아이칸 등이 한국시장을 휘젓고 있다. 전반적으로 IMF 이후에 하이어나 같은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이 약간의 세금을 매긴 적이 있긴 하나, 아직도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의 문제제기는 매우 적절한 것 같다. 최근 스페인과 독일, 룩셈부르크 등에도 거대자본과 관련된 문제 - 이른바 '먹튀' - 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스페인도 자국의 전력회사를 독일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고, 룩셈부르크도 인도계 철강회사의 진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주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의 법안이 충분한가, 둘째, 조세피난처의 인정은 적절한가, 셋째, 신설 조직이 있어야 하는가, 넷째, 적절한 인력확보는 되어 있는가 등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담보상태이고 이 법 또한 그동안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제외하고는 조세피난처를 인정해 주는데, 조세피난처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국의 반발이 있을 듯 하고, 관련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조직의 신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와 교역이 많은 미국이 FTA를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쌍둥이 적자'의 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먼저 조직을 만들 경우 통상 협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신설보다는 국세청 내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단 국제간의 거래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이런 난해한 금융기법을 국세청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한 건만 잡아서 수 천억을 거둘 수 있다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조직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나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정작 세금은 못 받았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반면 다른 나라라는 반대라면 이와 같은 사례를 유발할 불평등한 조세조약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일반규정 들 것을 제안

김완석 / 서울시립대 교수

오늘 주제는 조세회피가 만연한 현 시점에서 매

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ATP의 학술적 정의가 분명치 않으나, 강학상 조세회피라 할 수 있다. 조세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ATP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정 세법에 개개의 조세회피 방지 조문을 두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미처 예견하지 못하는 유형의 조세회피행위가 출현하면 개별규정으로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규정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에 일반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물론 현재에도 개별세법에 많은 일반규정이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그렇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부분이 조세회피의 부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같은 일반규정이 없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장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근거규정 정도로 폄하하고 있고,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원칙이 있음에도 판례는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으로 이해하여 보다 더 본질적인 조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충돌한다고 하는 주장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규정은 안전판에 불과하고 개별세법에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법인세법 등의 개별적 조세회피 부인규정에 대해 ‘숨은이익처분’과 같은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기본법 제42조로 해결하고 있다. 1945년 처음 들어온 이 규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판결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조세회피가 만연하자 다시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 조항의 적용이 매우 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럴 경우 조세회피를 부인할 안전판이 될 것이다.

ATP 관련, 입법 보완해야

임양운 / 변호사

이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절세는 인지상정이지만 공격적인 절세전략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볼 때, ATP가 부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조향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고, 이를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입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례에 대해 보면 사례 1과 5는 과세를 했고, 사례 2의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사례 4, 사례 6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발표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자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ATP는 국제조세와 관련이 있으므로 동 법률에 대해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

한 몇몇 조문의 설치, 실질과세의 확장, 조세피난처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다. 이 상정법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공격적 절세를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현행법상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세율에 의한 과중한 조세부담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ATP에 대한 전문적 기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법은 사회현상을 동시에 쫓아갈 수는 없으나 사회발전 현상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ATP에 대한 다자간 협정 필요

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오늘 사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과세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제조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에 대해서는 그 조사추적이 매우 어렵다. 일반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 1은 변칙거래를 통한 것이므로 탈세이고, 따라서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사례 2는 가장행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사례 3도 실질과세에 관한 것이다. 사례 4는 규정미비로 보완이 필요하고, 사례 5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확대해석이 필요한 해석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례 6은 탈세이므

로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여러 규정 중 가장 문제는 실질과세이다.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투자국과 투자상대국의 이해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투자국은 과세를 적게 하기를 원하고, 투자상대국은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를 원한다. 과세를 원하지 않는 투자국을 보호하려는 국가로는 홍콩, 싱가포르,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다. 기존의 조세협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는 대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쌍무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가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과세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세를 위해 조사를 하면 실질적인 소유주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국제관행을 깨고 과세하기도 힘들다. 결국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트리티 쇼핑(treaty shopping)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제어를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일반규정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이전가격만 제어가 가능해서, 그 외에는 제어기능이 떨어져서 국내법으로는 일반규정을 두어도 국제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선진국, 강대국이 동의할지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조세회피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조세회피에 대해 규제하기로 해놓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를 파기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거래가 일반화되면 회계학의 논리나 기존의 단순한 이전가격 논리로 해결이 되겠

는가 하는 것이다. 과세소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지금도 국제간 과세소득의 상당부분은 국제청과 납세자가 일종의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제거래가 일반화되면 이 부분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과세소득 측정에 있어서도 표준원가제도에 따라 회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실질과세원칙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불리하다고 보면 언젠가는 그 틀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나 상당 기한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제조세에 해박한 공무원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느냐, 기존의 보수 및 직급체제로 어느 전문가가 근무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약이 있어야 한다.

개별규정으로 조세회피 효과적 규제

한만수 / 한양대 교수

법학적 측면에서 언급하겠다. 절세는 인간의 본성이고 근대조세제도에 상존하는 일반 행태이다. 절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숨바꼭질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다.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하다. 조세회피가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ATP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포탈(tax evasion)과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조세포탈은 사기 기

타 부정행위를 수반해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된다. 따라서 세금추징은 당연하고 논의에서 제외된다. 논의는 법률이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법률을 적절히 이용해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별적인 방식과 포괄적인 방식이다. 과소자본규제나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는 개별적인 방식이고, 조세회피의 일반규정과 유사한 실질과세 원칙이나 다단계형식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금지는 포괄적인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 판례도 누차 개별규정을 둘 것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조세회피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입장 때문에 조세회피 일반규정을 두어도 이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 규정보다 거래유형별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반 선언적 반 구체적 규정을 둔다면 사법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 영미는 1936년 웨스트민스터 판례가 누구든지 가능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으로 거래를 선택해도 좋다는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조세회피가 만연하자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개별적 구체적 규정만 두면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TP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저해

한상율 / 국세청 조사국장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데 대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서 실무를 통해 본 사례 중 몇 가지에 국한하여 ATP의 심각성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금융기관들이 이월결손금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보니까 세액으로는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파생금융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세수가 6조 2,000억원이나 부족하게 되고, 모 금융기관이 환차익이 생기니까 홍콩으로 소득이전으로 환리스크 헤지를 통해 반드시 손해가 나도록 한, 단 한 건의 거래로 1,700억원의 소득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고 우리에게 800억원의 세액 손실을 발생시킨 예도 있다. ATP에 의해 국가재정 수입이 결손처리돼 심각한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예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 '시장형 ATP'에 대해서는 '질의회신'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반대이다. 핵심을 비껴가는 질의로 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즉 질의회신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핵심사안을 속여서 과세받지 않도록 하고, 과세가 되면 유권해석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ATP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연구원 위탁이나 외국 연수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보수 지급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큰 과세의 경우 상대 로펌이나 회

계법인이 받는 급여는 한 60억원 정도인데 우리 직원 연봉은 고작 6,000만원이다. 코스트가 10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스카웃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아웃소싱의 경우도 적국의 저격수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연예인, 체육인도 외국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므로 계속 외국인에 당하지만은 않고 우리에게 조세협약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력이 뒷받침될 것이다. 김완석 교수, 임양운 변호사, 한만수 교수 등 실질과세와 관련된 일반 규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판례도 사회여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법률적 실질설을 이용해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했는데 현재에는 실질과세를 반영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과세의 근거를 잘 찾아 실질과세에 입각한 판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판례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ATP의 문제,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조세회피의 경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고 본다. 일반적인 규정이나 경제적 실질에 입각한 판례의 변경도 필요하다.

상대국 정보확보 중요

허용석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연말 사학법이나 지난 임시국회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통과가 안 되었다. 그러나

심의를 다 되었다. ATP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정보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부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OECD 비가입국가(non-member country)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 OECD 비가입국가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포럼 등이 만들어져서 협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ATP의 대응에 있어서는 결국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데, 대외적으로는 GDP 10위국으로서 세계가 보는 눈높이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실질과세와 관련해서 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OECD 모델조약에서도 조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다 통용되는 것이고 국내법을 준용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 판례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실질과세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도나 세정에 사용되고 있다.

정보수집 및 공동조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안중석 / 발표자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제조세회피(AITP)에 있어서 캐나다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을 통해 상대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네덜

란드와 덴마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해야 ATP에 대응할 수 있다.

새로운 기법에 대한 대응 모색

이만우 / 사회자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KT&G 사외이사이다. 아 이칸의 제안서는 매우 이해가 어렵다. KT&G를 분할하여 담배, 인삼, 부동산 주식을 따로 매각해서 쉽게 이윤을 내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배당에 대해서는 엄하게 과세를 하므로 인적 분할을 통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법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 원 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완석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I. 연구의 방향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부부·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주의를 선택할 것인지는 소득세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소비단위로 할 경우에도 합산분할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합산비분할주의를 선택할 것인지와 단일세율표에 의할 것인지 또는 복수세율표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소득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과세의 공평성, 헌법상의 원칙과 헌법규정과의 부합, 민법상 부부재산제와의 조화, 개인주의의 원리와 세제의 결혼에 대한 중립성, 세무행정의 간편성과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의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개인단위주의는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도 및 부부의 생활실태와의 괴리,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의 배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의 횡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의 개인단위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개인단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비단위주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단위주의 중 가족단위주의는 최근 부부 중심의 가족주의 추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의 인위적인 조작에 따른 조세회피가 용이한 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입이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부부는 물론이고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현행의 가족제도와 생활실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의 조작에 따른 소득세 회피의 만연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득을 가득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와 그 자녀를 합산대상으로 하는 가족단위주의 또한 현실의 생활실태와는 동떨어진 제도라고 하겠다.



B5변형/235면/2005. 12/
값 9,000원

그러므로 부부단위주의의 도입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부부단위주의 중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 제도는 개인단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의 도입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단위주의를 폐지하고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만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II.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

여 그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산소득이 있는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된 것이다.

개인단위주의는 결혼에 대한 중립성의 보장과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부부에 있어서의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 및 소득형성 과정에서의 부부의 공동 기여를 도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제도 및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의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단위주의는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부의 생활실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단위주의는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방지에 따른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단위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배우자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제도의 조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제도의 조정에 의한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의 해소는 극히 부분적인 효과밖에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안고 있다.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단위주의의 도입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2분2승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2분2승제를 선택하는 기혼부부의 결혼혜택(marriage bonus)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상한선은 2분2승제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I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기혼부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선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이고 단순한 형태는 단일세율표 아래서의 균등분할주의, 즉 2분2승제이다. 그러나 2분2승제는 독신자 또는 독신세대주의 세부담에 비하여 기혼부부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말미암아 독신자 또는 독신세대주는 기혼부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리고 같은 기혼부부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부부에 비하여 한쪽벌이부부가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2분2승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방안, 분할계수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안 및 2분2승제의 적용에 따른 세액의 경감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2분2승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2분2승제를 선택하는 기혼부부의 결혼혜택(marriage bonus)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상한선은 2분2승제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분2승제를 선택한 부부에게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일부를 공동신고서에 누락한 경우로서 당해 부부공동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소득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도록 장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특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만일 소득분산을 가장함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사업에까지 가족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가장하거나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경우에는 가족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특례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KIP**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美·日·中·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 세계 각국은 빈부격차 확대에서부터 도시·농촌 간 소득, 정보격차에 이르기까지 양극화 문제로 고민

◆일본·미국도 예외 아니다

□ 일본은 10년간의 성장정체 현상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1년 47.7%에서 2004년 52.6%로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세정개혁을 중점과제로 꼽았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구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자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

□ 미국 상원의 농촌 출신 의원들은 지역간 정보사용 비용의 격차가 확대되자 지난달 28일 개최된 상무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농촌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 “광대역 서비스사업자들이 정보양극화 해소용 기금을 내라”고 촉구
○ 콘래드 번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상무위원회에 케이블과 광대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성장이 빈곤의 해독제

□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최선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하원 회의장에서 “성장이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믿는다”면서 “빈곤과 실업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치담바람 장관은 “세금 인하와 투자지출 증대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새마을 운동’ 배우기를 각 성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난달 8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극화 해소에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은 캄보디아는

1994년 이래 10여 년간 연평균 7%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빈곤층은 연평균 1%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갈등 상황이 해소되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이 빈곤의 대물림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정치적 이용은 ‘금물’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98년 당선 이래 양극화를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장기집권에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손꼽힘
- 지지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곤층은 차베스 집권기간에 54%에서 60%로 크게 늘고 국내 기업 40%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음
- 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빈곤층을 도와주는 ‘편가르기식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방한한 베네수엘라의 유력 정치인이자 일간지 탈쿠알 사장인 테오도로 페코프는 반미와 농민에 대한 토지 재분배 등의 차베스 대통령 정치 형태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며 “집권 7년이 지났지만 빈민층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난

〈매일경제 3/4〉

미 여론, 휘발유세 인상에 조건부 수용 의사

- 미 국민들은 연방 휘발유세 인상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나 미국 에너지 수급의 대외 의존도 감소 효과를 위해서라면 인상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 조사 결과 드러남

- 조사대상 성인 1,018명 가운데 85%는 연방 휘발유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나, 55%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경우 인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휘발유 소비억제 및 지구온난화 방지 취지에서라면 인상해도 좋다는 응답자가 59%였음

- 한편, 인상에 따른 수익이 테러전에 사용될 경우 수용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4%였으며, 휘발유세 인상이 소득세나 급여세 인하로 상쇄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찬성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8%였음

〈국회도서관 일일해외신문, 뉴욕타임즈 2/28〉

유럽에 필요한 세금제도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회원국 기업들에 대해 ‘통합법인세’ 도입을 고려중이지만 이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일반통합과세(CCBT)’는 1개 이상 EU회원국에서 영업하는 한 기업의 소득총액에 대해 통합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것임
- 이 방식대로라면 각국은 국제회계기준(IAS)에 기반해 통합회계방식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될 것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해외계열사의 (해당지역 세금 납부로 입은) 전체 손실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의 제안은 치명적인 결점을 지니고 있음
- 우선 분배공식에 적용되는 요소들이 실제로는 각국의 과세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해당 요소 발생기록을 조작하는 새로운 유인이 나타남
- 게다가 CCBT가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

애물이 있음

- 첫째, IAS를 적용하면 금융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지만 과세용 소득을 정의하는 데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음
- 둘째 모기업과 계열사(자회사) 관계를 정의하는 보편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CCBT가 법인세 개혁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과세기준 접근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법인세 과세를 위해 기업소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특히 기업가치 평가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지출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
- 게다가 법인소득 증가에 비해 세금이 늘게 되면 투자 위축을 초래
- 법인세 과세기준을 당기순이익과 별도로 하고 기업의 광범위한 영업활동과 연계시키면 이런 부작용은 사라질 것임. 사실 이 같은 방식은 평균 이상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웃도는 이익을 내도록 기업들을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기업 이익에 연동해 법인세를 물리는 대신에 기업의 활동에 기초해 추정 과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EU의 지방분권화적인 특성 때문

- EU회원국들이 자본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한 대가로 법인세를 걷는다면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그 보상으로 법인세를 걷는 것은 당연
- 결론적으로 EU의 '통합법인세'는 기업의 광범위한 활

동에 기초해 적절한 과세율이 적용되고 당기에 발생한 이익과 연관이 없는 데다 다른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복지과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

□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안 가운데 수년간 표준화 노력을 거친 부가가치세 개혁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이는 회계방식과 과세평가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
- 물론 부가가치는 순이익을 포함하며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나 총이익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유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질 것임
- 이 과세 모델은 회원국들이 과세평가와 법인세 행정을 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투명하고 간소한 데다 행정적으로 일처리하기도 쉬워 법적 기준이나 회계기준을 통일할 필요도 없으며, 이전가격을 평가하고 해외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임

〈파이낸셜뉴스 3/5〉

캐나다의 사회안전망이 주는 교훈

◆ 지역간 계층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 캐나다는 구조적인 격차가 경제적인 격차로 고착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하나의 연방국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연방정부의 지방교부금(Transfer) 활용

- 2005~2006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총예산은 2,023억

- 달러이며 이 가운데 627억달러가 교부금으로 사용
- 캐나다에 있어 의료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은 주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 지방교부금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구분
 - 하나는 주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약 470억달러가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의료보호, 유아보육 및 아동복지, 초등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사용됨
 - 둘째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부금 지원으로 약 160억달러가 이들 주에 집중 지원되며 다른 주들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평등화 교부금(Equalization)으로 109억달러의 규모임
 - 이 비용은 어디에 살고 있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캐나다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주의 공적서비스와 사회보장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안전망
 - 캐나다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철학과 특징은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에 잘 나타나 있음
 - 캐나다의 의료복지는 미국과 다른 캐나다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캐나다인들이 말하는 공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도임
 - 캐나다는 의료보호는 시장에서 팔고사는 상품이 아니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 아래 국가가 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견지하고 있음
 - 인구 3,000만명의 캐나다가 의료보호에 지출한 비용

은 2003년 기준으로 GDP의 9.7%인 1,210억달러(US930억달러)에 달함

-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4%를 상회하는 수치로 미국(13.9%), 스위스, 독일에 이은 4위에 해당
-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대다수 국민 및 언론은 캐나다의 의료제도가말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캐나다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캐나다의 양극화와 우리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임
-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이 양극화의 해소와 국민통합으로 나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부담이 전제되어야 함
- 캐나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70년대부터 30%대의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사례는 공존을 위한 희생과 절제의 미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

〈국정브리핑 2/22〉

미국도 지역업자 탈세 심각...회사원만 '봉'

-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탈세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영업자, 농민, 투자자 등의 세금 탈루가 극심해, 미국에서도 회사원들만이 정부의 돈줄이 되고 있음

-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최근 5년간 미국인들의 세금 탈루 규모가 점차 확대돼, 재정적자 확대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와 함께 미 상무부와 국세청(IRS)의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탈세를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 상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2003년 1조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2000년 대비 37% 가량 증가한 규모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 IRS는 지난 2001년 소득신고 누락, 부적절한 공제 등을 통한 소득세 탈루가 3,450억달러에 달했다고 발표
- 마크 W. 에버슨 IRS 위원은 “최근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회사원 이외 계층의 세금 탈루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탈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

〈이데일리 2/16〉

日 소비세 1%p 올리면 실질 GDP 0.4% 감소

- 14일 일본총연구소(JRI)는 일본의 소비세율이 1%p 상승할 경우 일본의 소비 감소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이 기관은 연평균 소득 350만엔 세대의 경우는 약 월 2천엔의 소비가 줄고 연소득 1,200만엔 세대는 월 4천엔 가량의 부담이 늘 것이라고 설명
- 일본 정부는 일본 GDP의 약 170%에 달하는 재정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연합인포맥스 2/14〉

印 경제, 시장중심 개혁 앞세워 中 따라잡는 중

- 16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경제의 성장세가 중국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개혁은 시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는 약 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회간접자본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경우 GDP 증가율은 10%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WSJ는 과거 인도의 강성 노동조합과 경직되고 구시대적인 기업문화가 인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과거 재무장관으로 인도의 개혁을 주도한 만모한 싱이 총리에 취임하면서부터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함
- 싱 총리는 인도의 통화정책을 개선시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5% 이하로 억제했고, 변동환율제도는 외환보유액을 1,300억달러 이상 늘려 외환위기 위험을 낮춤
- 복잡한 세금제도는 통합됐고, 재정적자는 줄었으며, 저축률은 GDP의 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WSJ는 교통과 통신산업이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부문이라며 인도의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7,500만명으로 매달 350만명씩 늘고 있고 인도 정부가 미국과 ‘영공개방(Open Sky)’ 조약을 체결, 미국 항공기들이 여행객들을 인도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보도

〈연합인포맥스 2/17〉

IMF총재, 세금 올려 에너지 소비 줄여야

- 높은 에너지 가격이 세계 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세금을 올려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로드리고 라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주장
- 11일 라토 총재는 서방 선진8개국(G7+러시아) 재무장관 회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공급위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그간 에너지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돼 거시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그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수요 감소를 비롯한 투자, 가격과 공급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총재는 또 현재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
- G8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들은 또 시장 메커니즘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

〈연합인포맥스 2/11〉

재정 정책

미국 기업, 연금재원 고갈 위기

- 미국 정부에 이어 일반 기업들이 연금재원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음
 - 정부 연금의 부족 재원은 현재 230억달러(약 23조원)에 달하며 이 같은 부족분은 향후 20년 이내에 1,42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이때 기업 등 민간 분야의 부족한 연금재원도 4,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희가 보도
- 기업들의 연금재원 고갈 현상은 특히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철강·항공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기업들이 연금재원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중임
 - 그러나 기업에 이 같은 압박이 가해지면 연금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은퇴후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저축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저축보다는 연금제도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을 보여 왔기 때문에 미국 직장인들의 노후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세계일보 2/27〉

영국 경제인협회, 연금개혁안 비판

- 영국 경제인협회(CBI)는 지난주 기업들에 새로운 국가 연금저축을 부담하도록 하는 연금위원회의 연금개혁안

- 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산시킬 것이라고 비판
- 연금위원회의 연금개혁안에는 노동자들이 국가연금 저축에 가입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사용자들로 하여금 임금의 3%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인사발전연구소(CIP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용자의 80%가 현재의 연금부담 규모를 변화시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단 1%만이 국가연금저축 도입에 따른 추가부담을 감내할 것이라고 대답
(국회도서관 일일해외신문, 파이낸셜타임스 2/26)

인도, 1,250억달러 새 예산안 공개

◆ 빈곤 퇴치와 인프라 개선에 중점

- 인도는 2006회계연도(2006. 4~2007. 3)에 농촌 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1,413억루피(32억달러)를 투입하고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1,869억루피를 투입하기로 함
-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28일 빈곤 해소와 인프라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총 5조 6,400억루피(1,250억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
- 이는 현 회계연도보다 11% 많고 최근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임
- 새 예산안은 교육과 보건예산이 현 회계연도보다 각각 31.5%와 22% 증가
- 인프라 분야에서는 발전이 39%, 도로와 항만사업 예산이 20% 늘어났고,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8,900억루피가 책정
-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감소가 아닌 세수확대를 통해 충당

-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GDP(국내총생산)에서 51%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일부 세금을 기존의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키로 함
- 그러나 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수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인하여 소비를 촉진하기로 함
- 인도는 아울러 GDP의 4.1%를 차지하는 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를 새 회계연도에는 3.8%로 낮추기로 함
- 치담바람 장관은 “빈곤과 실업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빈곤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경제성장이고, 세금인하와 투자지출의 증대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현 회계연도에는 8.1%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향후 수년간은 10%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을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그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출감소가 아닌 세수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세금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으로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인도의 새 예산안에 대해 주식시장은 일단 우호적인 반응
- 뭄바이 증시의 섀넥스 지수는 전날보다 88.15포인트(0.8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10,370.24에 마감
- 인도산업연맹(CII)도 성명에서 “성장 드라이브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번 예산안에 다 포함됐다”며 만족감을 표시
-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거래 세금이 늘어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함
(연합뉴스 2/28)

미국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부실화 원인 및 개선 방안

- 최근 미국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이 자산보다 부채의 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등 빠른 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데, 이는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철강, 항공 및 자동차 등 전통 대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연금지급·관리 부담 과중, 기업들의 연금운용 능력 부족 등에 주로 기인
- 이에 대응하여 다수 대기업들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의회 및 행정부는 연금지급 확충,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임
- 한편 다수의 기업연금들이 연금지급의 자산 부채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부실화 현황

- 지난해 9~10월중 노스웨스트, 델타, 델파이 등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통 대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봉착하면서 해당 기업연금도 부실화
- 한편 Morgan Stanley 분석에 따르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할인율 하락 등으로 기업연금 부채의 현재가치가 빠르게 늘어나 S&P 500대 기업의 확정급여형 연금지급의 경우 2002년부터 순부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에는 순부채 가치규모가 대략 2,4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

2.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부실화 원인

- 2002년 이후 대형 철강업체 및 항공사들이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동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연금지급이 부실화됨으로써 연금지급 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 대한 연금보험금 청구액이 급속히 증가
 -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파산 등에 의해 연금 급여의 일부(전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적립 부분에 대해서 연금지급의 지급을 보증
- 92년 이후 10억달러 미만에 머물던 기업들의 연금지급보증공사에 대한 연금보험금 청구액(연간기준)은 2002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에는 60억달러를 초과
- 1975~2004년중 연금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철강업체 및 항공업체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기업의 보상자 수 비중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금지급보증공사가 재정위기에 직면
 - 2004 회계연도중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233억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의회예산국은 10년 후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적자규모가 867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D. Moyo(Goldman Sachs)는 자본시장 변화에의 대응 미흡 등 기업들의 연금운용에 관한 능력 및 관심 부족이 연금의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분석
 - 2001년 주식시장 버블 붕괴, 시장금리 하락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연금지급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한편 할인율 하락으로 부채의 현재가치는 높아짐
- 기업들이 종업원의 기대수명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연금 부채가 예상보다 확대

○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많은 기업들은 1983년에 작성된 사망률표(mortality tables)를 사용해 온 것으로 추정

□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자산이 부족함에 따라 연금의 자산은 만기가 비교적 짧은 반면 연금 부채의 만기는 매우 길어 기업들의 연금운용 부담이 큼

○ 미 노동부는 기업연금 부채의 경우 평균 만기가 12~16년에 이르는 반면 자산의 만기는 3~4년에 불과하여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 등 보유 기간이 짧은 자산의 비중이 2/3 이상인 반면, 장기채권의 비중은 1/3 미만에 그침

□ 특히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이 확정기여형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는 등 연금지급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1993~2000년중 재정상태 변화를 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자산의 증가속도는 확정기여형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확정기여형과 대조적

3. 기업들의 연금제도 변경 현황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금의 부실화 방지, 연금관련 비용 축소 등을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

○ 특히 최근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이행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확정기여형 연금의 비중(기업 수 기준)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의 93.4%로 확대

○ 한편 연금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확정기여형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1980년 28%에서 2000년 53%로 크게 확대

□ Aaronson(2005) 등은 노동자들의 수요변화와 기술적 변화 등으로 기업들이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

○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이 확정급여형 연금보다는 확정기여형 연금을 선호하는 추세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및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직업의 이동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직시에도 연금의 연속성(개인연금계좌의 이동)이 있는 확정기여형을 선호

○ 한편 기업들도 급속한 기술변화 및 기술전파의 용이화 등으로 일부 분야에 특화된 노동력에 대한 장기적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이 큰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보다는 확정기여형을 선호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노동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 것도 기업들이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이유

○ 정부도 기업연금 도입 촉진을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4. 개선 방안

□ 의회예산국은 2005년 9월 보고서 “The Risk Exposure of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을 통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 기업연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 우선 연금의 자산과 부채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주주, 노동자 및 연금지급보증공사 등이 기업연금의 재무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또한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여 의회가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무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손실이 실현(현금화)되는 시점에 가서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손실 발생 즉시(실현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 미 노동부도 2005년 2월 연금기금 확충 및 관리 강화, 연금기금의 투명성 강화, 연금보험료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송부
-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 개혁안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연금운용을 개선하기보다는 연금의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한편 향후 다수의 기업연금들이 자산-부채 구성 및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성이 높은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장기성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현재 연금기금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 및 뮤추얼펀드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채권 등의 보유 확대 필요성이 큰데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장기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채권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될 전망
 - Financial Times紙는 향후 연금펀드 운용사들이 장기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향안정화되는 등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23〉

버냉키 美 재정정책, 그린스펀과 다른 행보 관측

-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신임 의장의 재정정책에 대한 스텐스가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과 다르다는 관측
- 21일 월가의 전문가들은 버냉키가 지난 15~16일 하원 증언에서 그린스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재정정책만큼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지적
- 버냉키는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세율인상과 관련 지출감소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며 정부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힘
- 관측통들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늘 주장한 그린스펀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지적
- 이에 대해 바니 프랭크 민주당 하원의원은 “버냉키가 그린스펀의 이상적 모습의 반영을 거부했다”며 비난한 반면 리처드 셀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FRB의 수장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함
- 스텐포드 워싱턴 리서치의 그렉 발리에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버냉키의 이런 행보를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해석하고 최소 1년은 FRB 외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반을 다진 뒤 그 후부터 세계경제 전반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

〈연합인포맥스 2/21〉

후진타오, 한국 새마을운동 배우기 왜

- 20일 끝난 중국 최고지도부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新農村建設) 운동’ 토론회의 화두는 ‘농촌 살리기’였음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일주일간의 토론회를 마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이 운동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재차 강조
 - 후 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 운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본뜬 것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운동이 기본 모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임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얻은 새마을운동 자료와 다른 나라의 농촌부흥 연구가 토론회 자료로 활용됐다”고 설명
 - 새마을운동을 연구한 공산당 중앙학교 연구원 28명도 모두 자리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함
 -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독려하는 것이나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도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흡사함
- 중국 지도부가 농촌개발 운동에 매달리는 것은 농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 원 총리는 1984년 1.84 대 1이었던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난해에는 3.22 대 1로 벌어졌다고 지적
 - 또 농촌의 노동인구 약 5억명 중 8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기도 힘든 실정
 - 80년대 중국 전체 소매 판매액 중 66%에 달했던 농촌 지역의 판매비중이 지난해는 33%까지 낮아짐.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그만큼 가난해졌기 때문임
 - 후 주석은 “농촌문제는 당의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추진하는 조화사회(和諧社會)는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
 - 조화사회는 후 주석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내거는 핵심 구호로서 확대일로의 사회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잡힌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임. 이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주력한 상하이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을 의미하기도 함
 - 후 주석은 “거의 30년 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2, 3차

산업비율이 88%에 달하고 매년 재정수입은 3조위안(약 380조원)에 달한다”며 “이젠 도시가 농촌을 살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업을 지원할 때가 됐다”고 언급

- 원 총리도 “신농촌 건설 운동으로 앞으로 5년 내 농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

〈중앙일보 2/22〉

EU집행위,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및 재정악화 가능성 경고

- EU집행위는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EU 회원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잠재성장률 및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2/13)
 - 보고서*에 따르면 EU 25개 회원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4.57억명에서 2050년에는 4.54억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 * EU집행위는 동 보고서가 EU집행위와 개별 회원국의 공동 연구에 기반한 것이므로 각국의 상이한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를 모두 고려하여 각국별로 비교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설명
- 2050년중 경제활동가능연령(15~64세) 인구는 현재보다 4,800만명(16%)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800만명(77%) 증가할 전망
 - 이러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EU 25국 전체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4~10년중 2.4%, 2011~30년중 1.9% 및 2031~50년중 1.2%로 둔화될 전망
 -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 개혁 등에 따라 고용률은 리스본 전략의 목표치인 70%를 초과하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

- 또한 EU 25개국 전체의 공공지출은 2050년까지 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GDP 대비 4%p 증가할 전망
 -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이 줄어들고 교육비 지출도 감소할 전망이나 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를 상쇄하지 못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10년까지 과감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 성장, 고용 및 공공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 EU 재무장관회의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및 재정 악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① 회원국의 정부부채 감축 가속화 ② 고용률 및 생산성 증가율 확대 ③ 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 개선 등의 구조개혁을 주문
 - 또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연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 및 면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23〉

㉔. 공공사업 크게 줄인다

-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비를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새로운 수치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7일 보도
- 일본의 공공사업비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7조 2,000억엔에 달해 고이즈미 정권이 출범 당시 내건 199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억제가 필요하다는데 재무성 입장
-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사업비 규모를 미국·EU와 비슷한 GDP 대비 1%대로 억제한다는 것임
- 현재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공공사

업비(시설비 제외)는 2003년 기준으로 16조 8,000억 엔으로 GDP 대비 3.4%에 달해 프랑스(1.3%) 미국(1.1%) 독일(0.9%) 영국(0.5%)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나 재무성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섬
 - 국토교통성의 한 간부는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아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한 수치목표를 세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
 - 국토교통성은 고도 성장기에 건설한 도로, 댐, 다리 등을 유지·관리하거나 추가 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공공사업을 계속 삭감한다면 2020년도에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부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

- 재무성은 국토교통성과 의견조율을 거쳐 올 6월쯤 정부의 세출·세입개혁 스케줄에 공공사업비 축소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GDP 대비 공공사업 비율 축소문제는 소비세율 인상 등 앞으로의 증세 논의와 연계돼 여야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

〈매일경제 2/17〉

EU 연금위기, 일부 회원국서 완화

- 유럽연합(EU)의 장기 연금위기가 몇몇 국가에서 완화되고 있다고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주장
- 알무니아 위원은 13일 공개한 조사결과에서 지난 6일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40년

후 EU 회원국들의 연금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일부 국가들에서 낮아졌다고 설명

- 그는 빠른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위기 가능성이 연금개혁으로 낮아졌으나 개혁의 진전은 고르지 못하다고 진단
- 알무니아 위원은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을 촉구하면서 오는 2031~50년 EU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인구변동으로 현재 2.2%에서 1.3%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 위원은 고령화로 오는 2010년부터 예산의 압박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0~2040년께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알무니아 위원의 보고서는 프릿츠 보크스타인 전 네덜란드 EU 집행위원의 전망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크스타인은 “장기적으로 EU의 존재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알무니아는 지난 2004년부터 2050년까지 공공부문 지출이 4%p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연금지출은 1.5~3%p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
- 그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스웨덴의 연금위기가 경감됐다고 밝히고 아일랜드를 비롯한 스페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이 6~10%p의 지출인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연합인포맥스 2/13〉

美행정부, 내년 예산안 2조 7천억달러 규모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총 2조 7천억달러에 달하는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가 5일 보도

□ 마켓워치는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급증하는 연방 예산적자와 이라크 전비가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 이와 관련, CBO는 2006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의 재정적자가 최소한 3,3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세금 감면과 군사비 및 허리케인 복구 관련 비용의 증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힘
- 백악관도 2006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4천억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오는 2009년에는 재정적자가 2,600억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지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음

□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 행정부의 2007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4,393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음. 이는 2006회계연도 국방예산 4,190억달러에 비해 4.8%가 많은 것임

□ 미 행정부는 또 올해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을 위한 예산 700억 달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예산 180억달러를 의회에 추가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연합뉴스 2/6〉

EU 집행위원회, 출산을 향상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원해

- 유럽연합(EU) 의장국 오스트리아 빈에서 2~4일 사흘간 ‘인구통계학적 문제점’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

되었는데, 동 회의에서 EU 전문가들은 EU 25국 경제 활동인구(15~64세)가 2030년이 되면 2천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Wim 코크(Wim Kok) 전(前) 네덜란드 총리는 또 EU의 고령화 때문에 현재의 EU 예측성장률(2~2.5%)이 2040년이 되면 1.25%로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

□ 이에 따라 동 회의는 EU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

〈국회 해외일일신문, 르몽드 2/6〉

영국 허튼 연금노동장관, 연금수혜 연령 상향조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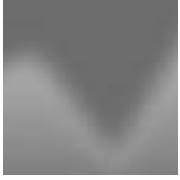
□ 존 허튼(John Hutton) 영국 연금노동장관은 2020년까지 국가연금 수혜 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허튼 장관은 런던에서 개최된 노동재단의 연설을 통해 이러한 연금수혜 연령의 상향조정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앞서, 연금위원회 위원장인 터너(Turner)卿은 은퇴연령의 상향화는 연금수혜금의 증액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면서 2050년까지 연금수혜 연령을 69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장관은 연금을 소득과 연계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연금위원회의 권고에 의구심을 표명

〈국회 해외일일신문, BBC 2/8〉



정책흐름

1.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3.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4.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 이 자료는 2006년 3월 13일 기획예산처 공공혁신기획팀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상여금을 회수당하고, 각종 협정·협약이나 보증 등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의 소요비용이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됨

○ 또한 공공기관간 감사 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외부회계감사인을 중립적인 비상임 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는 등 견제기능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의결(3. 9)을 거쳐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음

□ 이번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의 주요 내용은

- ①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 종전에는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됨
- ②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 시행
⇒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이 공개되도록 바뀜

③ 「감사인력 교류제도」 도입

⇒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기능이 강화됨

④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점검·개선

⇒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일제 정비와 서류 간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상반기에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하반기부터는 규제정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또한 정부는 이번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의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계획임

○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종전 212개에서 224개로 늘어남

- 강원랜드, 전자거래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 신규 관리대상으로 포함
- 한편,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실명제가 실시되고, 담당자별 평가결과는 임원 신규임용 및 연임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붙임 1〉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I. 목적 및 기본방향

〈지침의 목적〉

-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고유 설립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공공기관의 가치 제고
 - 세계 일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 공공기관의 2006년도 경영혁신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경영혁신 추진 유도

〈2006년도 경영혁신 기본방향〉

- 국민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반부패 경영 정착
 - 인사관리, 보수관리, 예산운용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를 공통혁신과제로 지속 추진
 - 공공기관의 현황 및 경영성과 등 핵심정보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신속·정확하게 공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경영혁신 성과 창출
 - 시스템·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 제고
 - 국민이 공감하고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브랜드 창출

□ 혁신문화 내재화로 지속적·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경쟁 및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의 내재화, 시스템에 의한 혁신 추진

II. 분야별 경영혁신 추진지침

1. 각 기관 공통추진과제

① 인사관리의 합리화

- 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
 - 운용 인력은 기관의 핵심 업무에 집중 배치
- ②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강화
 - 임직원은 법령 및 정부 인사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선임
 - 승진·전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강화

③ 투명한 인력관리

- 파견인력, 정원의 인력, 노동조합 전임인력 등은 투명하게 관리·운영

② 보수 관리의 합리화

- ① 보수 관련 정부지침 준수
 - 각 기관별로 적용되는 각종 보수 관련 정부지침(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등)을 준수
- ② 인건비의 편법 운용 근절
 - 연봉제 적용을 확대하되, 연봉제 대상 임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별도 수당지급 등 편법 운용 금지
 - 수당 신설 억제, 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인건비의 투명

성 강화

- 포상금, 예산성과금 등 성과급적 예산을 인건비 보전이나 일정연도 이상 근무자에 일괄 지급하는 편법 집행 관행 폐지

③ 예산의 적정 운용

① 사내복지기금 운영 합리화

- 사내복지기금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
-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

② 경비예산 절감 및 고유사업 투입예산 확대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기관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
-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기준, 지침의 준수

④ 반부패·윤리경영 강화

① 부패분야 축소 및 외부 지적사항 조기이행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 취약분야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실천
- 감사원 지적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과제는 특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②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 '06년 이후 모든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 신규 임용 임원은 경영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하고, 기존 임원은 경영계약을 변경하여 직무청렴계약 내용 포함
- 직무청렴계약에는 직무상 비리로 일정형량(예: 금고)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인센티브 상여금 회수 등 벌칙조항을 반드시 포함

*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추후 통보 예정

③ 비용추계공시제도 도입

- 채무보증, 손실보증, 협약·협정체결 등 미래의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경영사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선정기준, 공시 범위·방법·절차 등은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추후 통보 예정

④ 경영정보 공개시스템(pubmis.mpb.go.kr)에 신속·정확히 공시

-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통합 정보공개 대상정보는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 경영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공개

⑤ 클린카드제 도입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신용카드 사용범위, 절차 등은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준을 마련

⑤ 고품질·책임혁신 추진

① 1사1혁신 브랜드 육성

-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브랜드를 1개 이상 창출
- 혁신브랜드는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타기관에도 확산

② 경영혁신과제 실명제 추진

- 경영평가 지표 및 경영혁신 과제별로 담당 실명제(담당자-간부-임원)를 운영

○ 과제별·담당자별로 혁신과제 수행 기간, 추진실적, 외부평가(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등)결과를 DB화하여 관리

○ DB화된 자료는 인사, 교육, 보상과 연계하여 활용

③ 혁신 홍보활동 강화

○ 기관의 혁신노력 및 성과, 미담사례 등에 대해 정기간행물, CRM,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각 기관의 대표 혁신브랜드 홍보를 언론, 홍보물, 게시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2. 자율추진과제

① 성과중심 경영 정착

□ 경쟁체제 도입·확대

○ 기관의 특성에 맞게 사내공모제, 팀제 실시
○ 다면평가제를 활용하여 인사 및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운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단위별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체제 구축
○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여를 연계 운영

□ 독립사업단 체제 운영

○ 準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독립사업단으로 지정·운영
○ 독립사업단의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② ‘고객 최우선’ 경영 확립

□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노력 강화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운영, 업무처리 기간

단축, One-stop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강화

○ 고객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 고객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 개념을 합리적으로 설정,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혁신관리 지표로 활용

□ 국민에 대한 규제 정비

○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에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

○ 제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기한 단축 등 추진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노력 강화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방 인재 등 채용기회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등 여성근무환경 개선

□ 사회공헌활동 추진

○ 소외 이웃에 봉사,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중점 지원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문화, 의료, 주거 등이 복합된 봉사활동 추진

③ 일하는 방식 및 경영효율성 제고

□ 업무처리절차 혁신

○ 권한의 하부위임, 결재단계 축소, 회의 간소화 등 업무체계의 부가가치 제고

○ 전산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경영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

- 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확대 방안 강구

□ 경영의 효율성 제고

-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기 실시된 외부위탁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자산은 적극 발굴하여 매각하고, 경영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
-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최대한 억제
- 연구개발(R&D)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투자 여부를 사전점검

□ 노사간 원-원정책의 모범적 추진

- 공공기관이 노사간 자율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정착 노력
- 새로운 임금·복지체계는 기관의 불합리한 경영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설계

④ 경영투명성 강화

□ 경영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

- 각 기관은 사업 추진상황, 기관장추천위원회 회의록, 결산자료 등 주요경영사항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경영공시 사항은 감사의 확인을 거쳐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고 항상 최신자료를 유지
- 재무제표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 경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필요충분한 감사서비스를

-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토록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

□ 조달, 계약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물품구매의 전자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채무보증을 축소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부당·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기관 특성을 감안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 및 구매조건 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

□ 이사회 운영 활성화

-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경영상 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정기적 업무보고, 사내 정보망 접근권 보장,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등 비상임이사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감사의 독립성 확충

-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와의 협의를 거쳐 배치하되 감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감사 담당인력의 객관성 확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임용, 다른 공공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
 - 감사인력 교류 기관간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교류 직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이 부담하되, 파견받는 기관은 필요한 수당 등 별도 지급 가능

⑤ 혁신 내재화 노력 강화

- 혁신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주무부처의 혁신지원 강화

- 주무부처는 소관 산하단체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사전 규제 정비 및 혁신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 전담조직 확보

- 각 기관은 혁신 전담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및 예산을 우선 지원

□ 혁신 학습 강화

- 임직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적극 운용
- 다른 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혁신 우수기관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참여
- 학습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학습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학습의 품질을 제고
- 이해관계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조직 등의 운영으로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학습 활성화

III. 행정사항

1. 적용대상 기관

□ 필수 적용대상기관(152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14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92개
- 출연(연)법 적용대상: 46개

□ 자율 적용대상기관

- 주무부처가 원칙적으로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서 업무특성,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혁신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관
- 다만, 50명 미만 기관인 경우에도 혁신관리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포함 가능

-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상 정부로부터의 특별한 독립성이 요구되거나, 혁신관리의 실익이 없는 기관은 제외
- 주무부처는 자율 적용대상기관에 추가,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통보

2. 경영혁신 계획수립 및 혁신평가

□ 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

-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토대로 「06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 공통추진과제는 모든 기관이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자율추진과제는 각 기관이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추진
- 각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혁신망(www.mpb.go.kr/ppr.html)에 게재

□ 경영혁신 점검 및 평가

<공통추진과제>

- 공통추진과제 점검은 '05년도 점검양식을 기준으로 이행실적 점검
 - 추가된 공통추진과제에 대한 점검 양식은 별도 통보 예정
- 경영평가 대상기관(투자기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과정에서 경영평가단이 점검·평가
 -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여타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성한 별도의 혁신평가단이 점검·평가

<자율추진과제>

- 자율추진과제는 경영평가 지표 및 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실적 및 성과를 점검·평가
- 과제의 난이도, 충실도, 개선도 등을 중점 평가

3. 기 타

□ 혁신평가 일정

- '06년도 경영혁신 실적에 대한 평가는 '07. 2~4월에 실시
- 혁신평가지표, 세부 추진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세부지침 통보

- 「감사인력 교류», 「직무청렴 계약제도», 「비용소요추계 공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통보
- 각 기관은 세부지침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06. 3월까지 의견을 제출

□ 기계화된 경영혁신 과제의 지속적 추진

- 2005년 경영혁신과제 중 미완료 과제는 '06년 경영혁신 과제에 포함하고, 조속히 완료

□ 인력증원·조직 확대 등 협의

- 정부투자기관, 민영화법 적용기관 및 소속 자회사는 인력증원, 조직 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추진

〈붙임 2〉 주요 신규 도입제도

	현 행	개 선
직무청렴계약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불법 행위시, 형사상 책임 및 면직처리 * 공공기관이 해당 임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사실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상 처벌 및 면직처리 + ○ 비리로 인한 형사처벌시, 직무청렴계약 이후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하여 환수
비용추계 공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협약, 각종 보증 등 장래에 경영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공개 ○ 국민들은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 알게 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계약·협약체결의 내용, 추정 소요금액, 재원확보방안 등을 공개 ○ 국민들의 경영감독권이 강화되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중한 의사결정 유도
감사인력 교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력은 대부분 내부에서 총원 → 문제 적발시에도 엄정한 처리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받아 감사팀 구성 가능 ○ 내부 감사의 엄정성, 투명성 확충
클린 카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를 일반 카드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사용범위를 사전에 제한하여 사용 ○ 클린카드 발급을 통해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
혁신과제 실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혁신평가 결과는 기관의 실적으로만 관리 ○ 공기업 임원인사시 객관적으로 축적된 자료확보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평가결과를 담당자(실무자-간부-임원)별로 유지·관리 ○ 공공기관 임원 인사시 객관적인 성과에 근거하여 인사

<붙임 3> 2006년도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

부처별	계	투자기관	정 산 법	출연(연)법	자 율 선 정
계	224	14	92	46	72
재정경제부	10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6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
외교통상부	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법무부	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강생보호공단
국방부	3				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군사문제연구원
행정자치부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학기술부	35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개 연구회 소속 기초기술연구회(4) 산업기술연구회(7) 공공기술연구회(8)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등과학원,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문화관광부	23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영상자료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포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언론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경북관광개발공사
농림부	6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한국마사회,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부처별	계	투자기관	정 산 법	출연(연)법	자율선정
산업자원부	36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한국가스기술공업, 한전기공(주), 한전KDN(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부	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무선국관리 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환경부	4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부	9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교통부	19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인터내셔널패스앤커머스(주), 철도유통(주)
해양수산부	8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물류정보통신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경찰청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처별	계	투자기관	정 산 법	출연(연)법	자 율 선 정
중소기업청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소방방재청	1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금융감독위	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청소년위원회	2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총리실	24			1개 연합회소속 출연(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 이 자료는 2006년 2월 14일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발표한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5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844억달러, 수입은 16.4% 증가한 2,612억달러, 무역수지는 62억달러 감소

한 232억달러 흑자, 교역규모는 5,000억달러(5,456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단위: 억달러, %)

구 분	'03년		'04년		'05년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 출	1,938	19.3	2,538	31.0	2,844	12.0
수 입	1,788	17.6	2,245	25.5	2,612	16.4
무 역 수 지	150	46	294	144	232	-62

※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무역수지는 증감액)임.

□ 수출은 '04년 대비 306억달러 증가한 2,844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31%→12%)은 크게 둔화되었음

(12.5%)등 주력 수출품의 증가율이 10% 수준으로 둔화된 반면 기계류(41.7)와 석유제품(50.1%) 등은 4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 품목별로는 반도체(13.1%), 승용차(10.6%) 및 선박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억달러, %)

구 분	반도체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정밀기기	항공품	철강 및 금속제품	선박	석유제품	직물	의류	컴퓨터
금 액	300	272	207	320	248	225	172	155	57	26	4
증감률	13.1	10.6	-0.9	41.7	20.5	20.7	12.5	50.1	-5.0	-24	-43.5

○ 지역별로는 CIS(51.0%), 중남미(29.6%) 및 중국(24.4%)으로의 수출이 20%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

으나, 동남아(3.5%)와 미국(-3.5%)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에 그쳤음

〈주요 지역별 수출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중국	미국	EU	일본	동남아	중남미	중동	CIS	호주
금 액	619	413	437	240	538	150	122	55	38
증감률	24.4	-3.5	15.4	10.7	3.5	29.6	11.2	51.0	12.8

□ 수입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추월하여 무역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었으며,

광물(24.6%), 철강재(23.8%) 및 정밀기기(19.4%)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

○ 품목별로는 원유(42.4%), 석탄(22.6%) 등 에너지류와

〈주요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억달러, %)

구분	원유	반도체	기계류	철강재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비철금속	광물	석탄	곡물	가전제품
금 액	426	251	206	164	112	113	86	94	54	34	25
증감률	42.4	6.4	9.9	23.8	15.1	19.4	10.8	24.6	22.6	-9.5	12.6

○ 지역별로는 중동(40.8%)과 중국(30.6%)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對일본 수입증가율은 크게 하락(27.1%→4.9%)하였으나 아직까지 최대 수입국을 유지

〈주요 지역별 수입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중동	동남아	EU	호주	중남미	CIS
금 액	484	386	306	474	362	273	99	70	45
증감률	4.9	30.6	6.3	40.8	9.7	12.9	32.6	5.5	-1.0

□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과 EU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동남아는 흑자폭이 축소되었으며, 일본과는 '04년

과 동일한 규모의 24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구 분	중 국	미 국	E U	동남아	일 본
'04년	202	141	136	190	-244
'05년	233	108	164	177	-244
증감액	31	-33	28	-13	0

1. 수출동향

- '05년 수출은 2,844억달러로서 '95년 수출 1,000억달러 달성 이후 10년 만에 3배 가까운 증가세 기록
 - 영국, 캐나다, 홍콩에 이어 세계 11위 수출국 기록 예상
- 품목별로는 원료·연료(42.8%) 및 중화학공업품(13.6%)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의류 및 종이 등 경공업품(-11.1%)은 감소세를 나타냄
 - 반도체(13.1%), 승용차(10.6%), 기계류·정밀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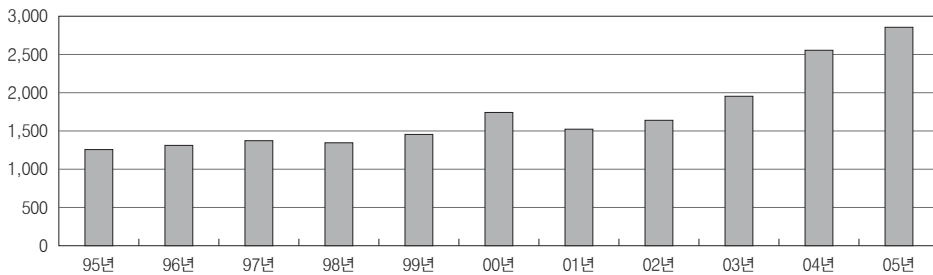
- (41.7%) 및 선박(12.5%) 등 주력 수출품목은 여전히 증가세 유지
 - 다만, 컴퓨터(-43.5%), 의류(-24.0%) 및 식물(-5.0%)은 감소
- 지역별로는 CIS, 중남미 및 중국 등이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감소세(-3.5%)로 반전
 - 호주·중동·일본 등은 10% 수준의 증가세 유지

- 05년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꾸준히 1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04년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 기록(10년전 수출금액 대비 2.3배 증가)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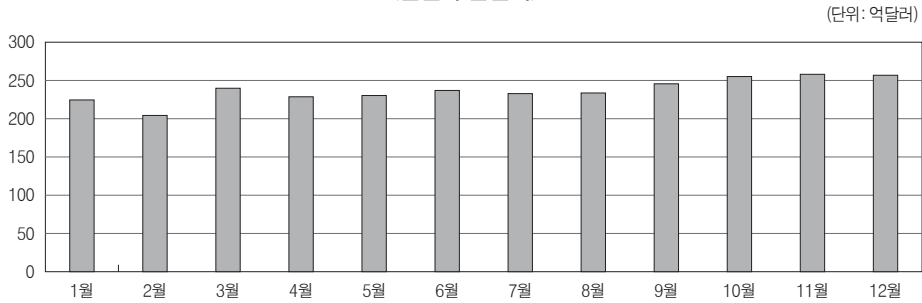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금 액	1,251	1,297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9	2,844
증감률	30.3%	3.7%	5.0%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 월별로는 설날 등 연휴기간이 많은 2월에 최저치를 기록 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0월에 사상 처음

250억달러에 진입한 이후 11월에 월간 실적 기록

[월별 수출실적]



(단위: 억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액	225	204	240	229	231	237	232	233	245	254	258	256
증감률	18.3%	6.6%	13.1%	6.5%	11.0%	9.5%	10.6%	17.9%	17.7%	11.9%	11.9%	10.5%

□ 품목별로는 기계류·정밀기기(320억달러), 반도체(300억달러) 및 승용차(272억달러) 순으로 수출되었으며, 이들 3개 품목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출증가율 또한 10~40% 수준으로 전체 수출을 선도

○ 또한, 석유제품(50.1%)과 철강·금속제품(20.7%)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중국 등과 가격경쟁이 심화된 컴퓨터, 의류, 직물 등의 수출은 '04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억달러, %)

구분	반도체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정밀기기	화학품	철강 및 금속제품	선박	석유제품	직물	의류	컴퓨터
금 액	300	272	207	320	248	225	172	155	57	26	4
증감률	13.1	10.6	-0.9	41.7	20.5	20.7	12.5	50.1	-5.0	-24.0	-43.5

□ 지역별로는 CIS, 중남미, 중국, EU 순으로 꾸준히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은 '01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

〈주요 지역별 수출현황〉

(단위: 억달러)

구분	중국	미국	EU	일본	동남아	중남미	중동	CIS	호주
금 액	619	413	437	240	538	150	122	55	38
증감률	24.4%	-3.5%	15.4%	10.7%	3.5%	29.6%	11.2%	51.0%	12.8%

○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對중국 수출은 여전히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185억 달러, 25.5%), 화공품(105억달러, 23.9%), 기계류·정밀기기(100억달러, 39.9%)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컴퓨터주변기기(50억달러, -5.5%) 및 무선통신기기(7억달러, -42.7%) 등은 감소
- 대중국 수출 증감률 : 47.8%('03) → 41.7%('04) → 24.4%('05)
- 對미국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승용차(86억달러, -14.4%), 무선통신기기(51억달러, -28.1%), 반도체

(36억달러, -21.5%) 등은 감소하였으나 철강·금속제품(25억달러, 18.1%)과 화물자동차 등(20억달러, 90.3%)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미국 수출 증감률 : 4.4%('03) → 25.2%('04) → -3.5%('05)
- 對EU 수출은 승용차(82억달러, 22.7%), 무선통신기기(79억달러, 42.7%), 선박(58억달러, 25.0%) 등은 '04년에 이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주변기기(22억달러, -25.8%)는 큰 폭으로 감소
- 대EU 수출 증감률 : 14.7%('03) → 40.2%('04) → 15.4%('05)

2.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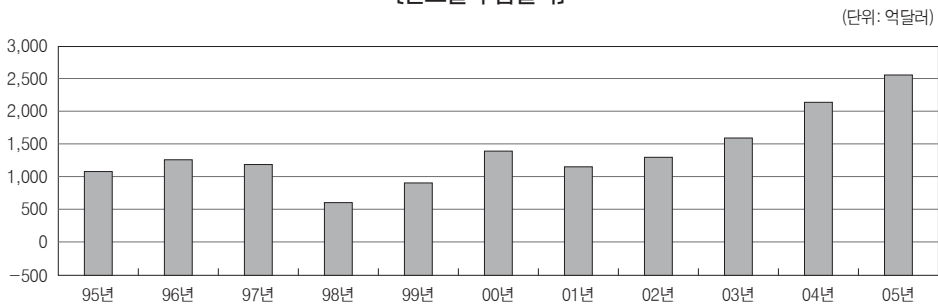
- '05년 수입은 2,612억달러로 '94년 1,000억달러 돌파 이후 10년 만에 2,500억달러 달성('05. 12)
- 벨기에, 홍콩, 스페인에 이어 세계 13위 수입국 기록 예상
- 용도별로 보면 원자재(24.2%) 및 자본재(10.6%)의 수입이 소비재(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세부 품목별로는 연료(34.7%), 광물(24.6%) 및 철강재(23.8%)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9.0%) 및 개도국(23.6%)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중동(40.8%) 및 중국(30.6%)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 증가

- '05년 수입은 원유가 급등과 수출 호황에 따른 철강재 및 비철금속 등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

였으며, 소비재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

[연도별 수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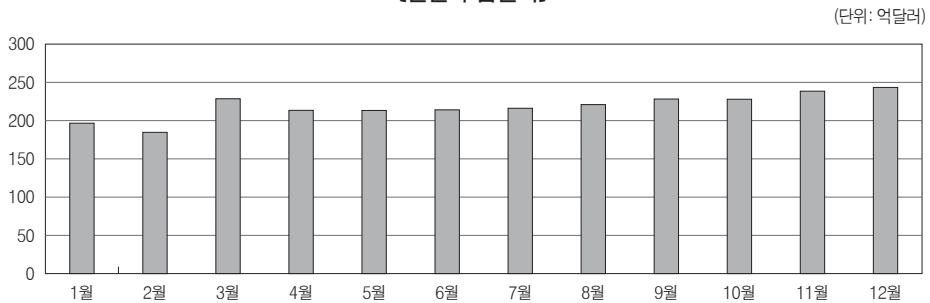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금 액	1,351	1,503	1,446	933	1,198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증감률	32.0%	11.3%	-3.8%	-35.5%	28.4%	34.0%	-12.1%	7.8%	17.6%	25.5%	16.4%

□ 월별로는 연초(1,2월)를 제외하고는 매월 2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사상 처음 월간 수입 240억달러 돌파

[월별 수입실적]



(단위: 억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액	195	184	228	212	212	213	215	220	227	227	238	242
증감률	20.0%	5.3%	19.1%	12.8%	18.3%	14.8%	17.0%	21.4%	24.9%	11.0%	17.4%	15.4%

□ 용도별로 보면 원자재(24.2%) 및 자본재(10.6%) 수입이 소비재(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아진 반면 소비재는 다소

하락

○ 원자재 수입비중은 전년 대비 3.4%p 상승, 소비재는 1.5%p 하락

〈용도별 수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03년		'04년		'05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원자재	864	48.3	1,139	50.7	1,414	54.1	24.2
자본재	688	38.5	841	37.5	930	35.6	10.6
소비재	236	13.2	265	11.8	268	10.3	1.2
합 계	1,788	100	2,245	100	2,612	100	16.4

- 원자재는 유가 급증 및 기초원재료 수입증가로 24.2% 증가
- 원유, 석탄 등 에너지류 및 광물, 철강재, 비철금속 수입이 큰 폭 증가
 - 광물(94억달러)은 전년 대비 24.6%, 철강재(164억

- 달러)는 23.8%, 석탄(54억달러)은 22.6%, 비철금속(86억달러)은 10.8% 증가
- 원유의 경우 물량은 1.9% 증가한 8억 4,400만배럴에 불과하나, 도입단가가 '04년보다 배럴당 14.36달러 상승하여 금액은 42.4% 증가한 426억달러 기록

〈원유 수입 현황〉

구 분	'04.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04년	'05.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05년
국제유가(dubai산,\$/배럴)	29.51	33.24	36.23	35.77	33.74	41.58	48.02	55.50	52.92	49.51
원유도입단가(\$/배럴)	31.58	34.56	38.55	39.38	36.15	41.73	49.31	56.12	54.73	50.51
원유수입액(백만달러)	6,346	6,747	7,411	9,414	29,917	8,940	9,727	11,608	12,330	42,606
증감률(%)	-1.6	39.2	37.8	46.9	29.6	40.9	44.2	56.6	31.0	42.4
원유수입물량(백만배럴)	201	195	192	239	827	214	197	207	225	844
증감률(%)	-5.6	10.5	0	6.9	2.7	6.6	1.0	7.6	-5.8	1.9

※ ① 증감률은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임.
 ② 단위 : 국제유가(\$/배럴), 원유단가(\$/배럴), 원유수입액(백만달러).

- 자본재는 수출 호조에 따른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0.6% 증가

〈주요 자본재 수입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반도체	기계류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금 액	251	206	112	113
증감률	6.4%	9.9%	15.1%	19.4%

- 소비재는 곡물·금 등은 감소하고 가전제품·승용차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04년과 비슷한 수준 (1.2% 증가)

〈주요 소비재 수입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곡 물	금	가전제품	승용차	골프용품
금 액	34	8	25	12	2
증감률	-9.5%	-77.0%	12.6%	52.7%	22.3%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수입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으로부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일본(27.1% → 4.9%)과 미국(16.0% → 6.3%)의 증가세는 크

게 둔화되었으나, 중국의 경우 여전히 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주요 지역별 수입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일 본	중 국	미 국	중 동	동남아	E U	호 주	중남미	CIS
금 액	484	386	306	474	362	273	99	70	45
증감률	4.9%	30.6%	6.3%	40.8%	9.7%	12.9%	32.6%	5.5%	-1.0%

○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 對일본 수입은 지난해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비철금속(13억달러, 23.5%) 및 철강재(60억달러, 10.9%)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기기(14억달러, -21.9%)의 수입은 감소
 - 대일 수입 증감률: 21.6%('03) → 27.1%('04) → 4.9%('05)
- 對중국 수입은 철강재(48억달러, 54.9%), 화공품(23억달러, 34.3%), 반도체(19억달러, 36.7%)가 크게 증

가

- 대중 수입 증감률: 25.9%('03) → 35.0%('04) → 30.6%('05)
- 對미국 수입은 기계류(45억달러, 19.6%) 및 화공품(40억달러, 13.8%) 등의 품목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57억달러, -3.4%)와 소비재(36억달러, -8.4%) 수입은 약간 감소
 - 대미 수입 증감률: 7.8%('03) → 16.0%('04) → 6.3%('05)

〈주요국가수입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03년		'04년		'05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일 본	363	21.6%	461	27.1%	484	4.9%
중 국	219	25.9%	296	35.0%	386	30.6%
미 국	248	7.8%	288	16.0%	306	6.3%

3. 무역수지 동향

- '05년 무역수지는 '04년 대비 62억달러 감소한 232억 달러 흑자로 '98년 390억달러, '04년 294억달러 다음으로 최대 규모
 - '98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98년 이후 1,620억달러 누계흑자 기록
- 對선진국 무역수지는 74억달러(전년 대비 33억달러 악화) 적자를 보인 반면, 對개도국은 305억달러(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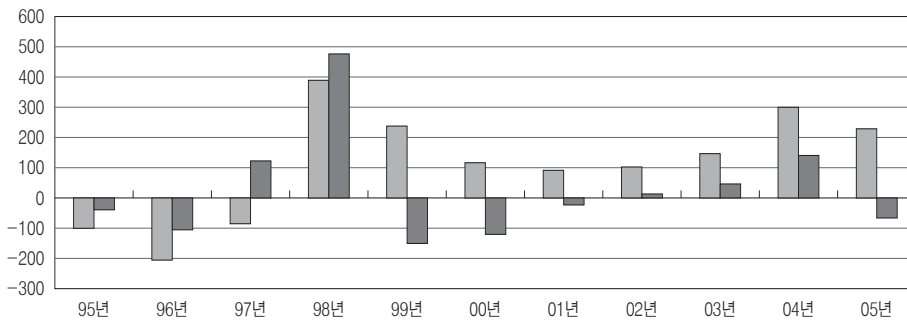
- 대비 29억달러 감소) 흑자 기록
- 對중국 무역흑자가 '04년에 이어 최고치를 갱신한 반면, 對중동 무역적자는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최고치 기록
 - 對중국 흑자는 31억달러 증가한 233억달러, 對중동 적자는 125억달러 증가한 352억달러 기록

□ 무역수지는 '98년을 정점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난 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흑자 기반 구축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단위: 억달러)

구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금액	-101	-206	-85	390	239	118	93	103	150	294	232
증감액	-38	-106	122	475	-151	-121	-24	10	46	14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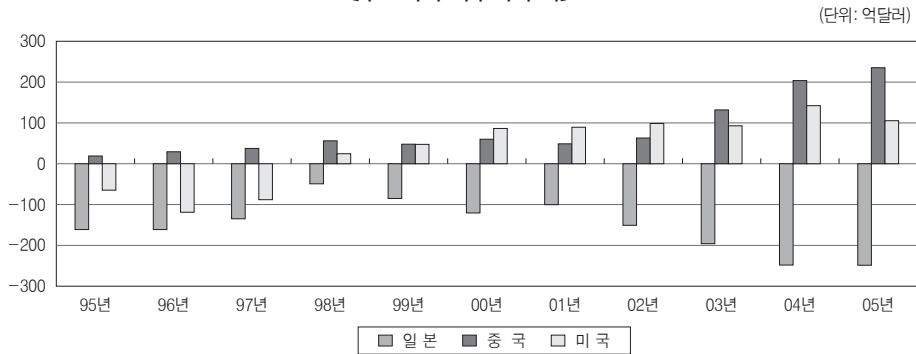
- 對선진국은 74억달러 적자(전년 대비 33억달러 악화)
 - 일본: 244억달러 적자(전년과 같음)
 - 미국: 108억달러 흑자(전년 대비 33억달러 감소)
 - EU: 137억달러 흑자(전년 대비 27억달러 확대)

- 對개도국은 305억달러 흑자(전년 대비 29억달러 감소)
 - 중국: 233억달러 흑자(전년 대비 31억달러 확대)
 - 동남아: 177억달러 흑자(전년 대비 13억달러 감소)
 - 중동: 352억달러 적자(전년 대비 125억달러 악화)

□ 對일본 무역적자는 전년과 동일한 244억달러, 對중국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31억달러 증가한 233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對미국 흑자는 감소세로 반전

[주요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일 본	-156	-157	-131	-46	-83	-114	-101	-147	-190	-244	-244
중 국	17	28	35	55	48	57	49	64	132	202	233
미 국	-63	-116	-85	24	46	84	88	98	94	141	108

〈붙임 1〉 수리일 기준 보조통계

1. 수출동향

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320	3.0	3,174	1.7
2. 원료 및 연료	1,854	31.0	18,651	42.8
○ 석유제품	1,583	35.7	15,520	50.1
3. 경공업품	2,243	-4.1	26,346	-11.1
○ 섬유사	114	-14.1	1,438	-9.6
○ 직물	454	-9.2	5,704	-5.0
○ 의류	211	-16.3	2,569	-24.0
○ 고무타이어·튜브	205	-0.6	2,439	16.5
○ 금	71	68.5	262	-91.2
○ 종이류	178	-5.1	2,145	-0.3
4. 중화학공업품	21,214	10.9	236,247	13.6
○ 화공품	2,157	8.2	24,753	20.5
○ 철강 및 금속제품	1,922	4.3	22,474	20.7
○ 기계류와 정밀기기	3,226	47.1	32,033	41.7
○ 전기·전자제품	6,996	1.9	88,269	0.6
(가전제품)	616	-15.1	8,306	-14.5
(정보통신기기)	3,549	-0.6	44,777	-2.4
(반도체)	2,389	13.4	29,986	13.1
○ 수송장비	5,439	4.6	54,984	14.9
(승용자동차)	2,749	-1.7	27,180	10.6
(선박)	1,692	8.3	17,231	12.5
총 계	25,632	10.5	284,419	12.0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나. 국가(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전체수출	25,632	10.5	284,419	12.0
대선진국 수 출	10,137	3.0	114,037	6.3
대개도국 수 출	15,495	16.0	170,379	16.3
미 국	3,674	-3.5	41,343	-3.5
일 본	2,209	8.7	24,027	10.7
E U	3,901	7.3	43,659	15.4
호 주	365	20.7	3,812	12.8
캐 나 다	324	-1.8	3,446	1.9
동 남 아	4,796	11.5	53,826	3.5
(홍 콩)	1,456	18.3	15,531	-14.3
(싱가포르)	668	38.1	7,407	31.0
(대 만)	961	8.3	10,863	10.3
중 동	1,131	14.8	12,241	11.2
중 국	5,485	23.5	61,915	24.4
중 남 미	1,485	27.6	14,987	29.6
C I S	463	29.3	5,468	51.0
동 구 권	436	43.7	4,095	34.7

주: ①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②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2. 수입동향

가.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1. 소 비 재	2,597	18.4	26,818	1.2
○ 곡 물	352	1.8	3,365	-9.5
○ 직접소비재	664	8.5	7,155	13.1
(담배)	3	-50.7	53	-42.7
(주류)	45	18.1	431	13.6
○ 내구소비재	1,133	29.8	10,857	-6.3
(가전제품)	219	9.3	2,457	12.6
(승용차)	233	135.6	1,271	52.7
(금)	69	-30.3	805	-77.0
(골프용품)	15	17.8	239	22.3
○ 비내구 소비재	448	23.8	5,440	11.8
(의류)	218	28.5	2,859	6.1
2. 원 자 재	13,310	16.3	141,378	24.2
○ 연 료	6,894	35.0	66,487	34.7
○ 광 물	933	26.6	9,368	24.6
○ 경공업 원료	515	6.9	5,968	2.6
○ 유 지	52	15.5	564	14.4
○ 섬 유 류	275	3.6	3,270	3.3
○ 화 공 품	1,814	-0.4	21,531	18.1
○ 철 강 재	1,185	-15.5	16,408	23.8
○ 비철금속	768	-1.8	8,597	10.8
3. 자 본 재	8,280	13.0	93,042	10.6
○ 기계류와 정밀기기	2,965	17.2	31,925	13.1
○ 전기·전자기기	4,740	13.2	54,483	9.0
(정보통신기기)	1,060	13.0	11,197	15.1
(반도체)	2,108	13.6	25,133	6.4
○ 수송장비	480	-5.4	5,195	15.5
총 계	24,186	15.4	261,238	16.4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나. 국가(지역)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전체수입	24,186	15.4	261,238	16.4
대선진국 수 출	10,739	6.6	121,390	9.0
대개도국 수 출	13,447	23.4	139,846	23.6
미 국	2,745	4.5	30,586	6.3
일 본	4,114	0.1	48,403	4.9
E U	2,486	12.8	27,296	12.9
호 주	949	32.0	9,859	32.6
캐 나 다	240	31.3	2,604	19.0
동 남 아	3,408	19.8	36,156	9.7
(홍 콩)	180	0.6	2,043	-37.5
(싱가포르)	397	-0.1	5,318	19.2
(대 만)	756	30.7	8,050	10.1
중 동	4,943	38.4	47,395	40.8
중 국	3,388	15.6	38,648	30.6
중 남 미	685	22.2	7,017	5.5
C I S	444	5.9	4,508	-1.0
동 구 권	65	52.7	595	10.4

주: ①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②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다. 용도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증 감 률		2005. 1~12월		증 감 률	
	내수용	수출용	내수용	수출용	내수용	수출용	내수용	수출용
1. 소 비 재	2,281	316	20.9	3.1	23,330	3,488	10.9	-36.1
○ 곡 물	351	0	1.8	0.0	3,363	2	-9.5	107.5
○ 직접소비재	649	15	10.4	-38.7	6,947	207	13.9	-7.9
(담 배)	1	2	-13.4	-62.4	16	37	-75.1	27.3
(주 류)	45	0	18.1	0.0	426	5	13.0	95.0
○ 내구소비재	846	287	33.1	20.9	7,824	3,033	11.4	-33.5
(가전제품)	152	67	13.7	0.3	1,656	801	12.3	13.2
(승용차)	233	0	135.6	0.0	1,271	0	52.7	0.0
(금)	22	47	-54.6	-6.3	244	561	-69.7	-79.1
(골프용품)	13	1	9.9	0.0	229	9	19.6	163.0
○ 비내구 소비재	434	15	37.1	-68.0	5,195	245	23.7	-63.2
(의류)	213	5	58.1	-85.6	2,739	119	27.1	-77.8
2. 원 자 재	7,132	6,177	7.5	28.4	77,585	63,792	24.0	24.5
○ 연 료	3,188	3,705	6.4	75.5	33,576	32,911	37.1	32.3
○ 광 물	740	193	28.4	20.4	7,288	2,079	26.2	19.3
○ 경공업 원료	320	195	10.2	2.0	3,651	2,317	3.3	1.4
○ 유 지	51	1	20.0	-61.5	533	31	15.3	-0.1
○ 섬유류	141	134	2.3	4.9	1,636	1,635	8.5	-1.4
○ 화공품	1,051	763	6.3	-8.4	12,012	9,519	16.2	20.6
○ 철강재	566	619	-7.8	-21.4	7,616	8,792	16.6	30.8
○ 비철금속	456	311	-2.6	-0.6	5,197	3,400	13.0	7.4
3. 자 본 재	5,017	3,263	15.7	9.0	54,047	38,995	13.5	6.8
○ 기계류와 정밀기기	2,366	598	21.3	3.3	25,116	6,809	13.3	12.5
○ 전기·전자기기	2,157	2,583	16.4	10.6	23,276	31,208	13.9	5.6
(정보통신기기)	762	298	12.9	13.2	7,851	3,346	20.4	4.4
(반도체)	442	1,667	11.8	14.1	5,088	20,045	4.8	6.8
○ 수송장비	409	71	-7.2	6.7	4,364	831	16.3	11.2
총 계	14,430	9,756	12.2	20.3	154,962	106,276	18.1	14.0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3.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액		증감액
전 체	1,446	-784	23,180	-6,202
대 선 진 국	-602	-377	-7,353	-3,302
대 개 도 국	2,048	-408	30,533	-2,900
미 국	929	-251	10,757	-3,310
일 본	-1,906	174	-24,376	67
E U	1,415	-17	16,363	2,720
호 주	-584	-168	-6,047	-1,988
캐 나 다	84	-63	842	-352
동 남 아	1,388	-69	17,670	-1,362
(홍 콩)	1,275	225	13,488	-1,371
(싱가포르)	270	185	2,089	896
(대 만)	205	-104	2,813	281
중 동	-3,812	1,225	-35,154	-12,495
중 국	2,096	583	23,267	3,088
중 남 미	799	197	7,970	3,059
C I S	19	80	959	1,891
동 구 권	370	110	3,500	998

주: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붙임 2〉 출항일 기준 보조통계

1. 수출동향

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307	-1.2	3,156	1.3
2. 원료 및 연료	2,025	41.0	18,614	42.4
○ 석유제품	1,757	47.3	15,487	49.7
3. 경공업품	2,200	-5.0	26,330	-11.0
○ 섬유사	112	-12.9	1,444	-9.6
○ 직물	448	-7.0	5,715	-4.9
○ 의류	198	-20.6	2,584	-23.2
○ 고무타이어·튜브	208	-5.1	2,398	14.8
○ 금	71	42.6	262	-91.2
○ 종이류	175	-7.8	2,139	-0.4
4. 중화학공업품	20,234	7.0	235,362	13.5
○ 화공품	2,111	7.3	24,737	20.7
○ 철강 및 금속제품	1,856	2.0	22,266	20.5
○ 기계류와 정밀기기	3,062	43.4	31,933	41.3
○ 전기·전자제품	6,939	1.0	88,247	0.6
(가전제품)	577	-19.5	8,293	-14.8
(정보통신기기)	3,540	-1.4	44,769	-2.3
(반도체)	2,384	13.3	29,983	13.0
○ 수송장비	4,821	-5.0	54,432	14.9
(승용자동차)	2,704	-6.0	26,963	10.7
(선박)	1,184	-13.0	16,904	11.9
총 계	24,765	7.8	283,462	12.0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나. 국가(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률		증감률
전체수입	24,765	7.8	283,462	12.0
대선진국 수 출	9,852	0.8	113,509	6.1
대개도국 수 출	14,913	13.0	169,950	16.3
미 국	3,534	-6.6	41,073	-4.2
일 본	2,164	10.3	23,967	10.7
E U	3,723	1.5	43,525	15.9
호 주	329	22.0	3,805	13.8
캐 나 다	302	-14.5	3,406	1.2
동 남 아 (홍 콩)	4,662	9.4	53,723	3.3
(싱가포르)	1,447	18.8	15,529	-14.3
(대 만)	647	33.5	7,342	29.0
중 동	921	3.5	10,852	10.3
중 국	1,025	5.6	12,126	11.0
중 남 미	5,514	25.0	61,911	24.4
C I S	1,517	35.7	14,859	30.7
동 구 권	480	30.5	5,440	50.8
		30.9	4,078	35.0

주: ①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②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2.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 12월		2005. 1~12월	
		증감액		증감액
전 체	579	-1,425	22,224	-6,416
대 선 진 국	-887	-588	-7,881	-3,520
대 개 도 국	1,465	-837	30,104	-2,897
미 국	789	-369	10,487	-3,594
일 본	-1,951	200	-24,437	54
E U	1,237	-229	16,229	2,857
호 주	-620	-171	-6,054	-1,961
캐 나 다	61	-108	802	-375
동 남 아	1,254	-164	17,566	-1,483
(홍 콩)	1,266	228	13,486	-1,375
(싱가포르)	250	163	2,024	793
(대 만)	165	-146	2,802	276
중 동	-3,917	-1,316	-35,269	-12,530
중 국	2,126	644	23,263	3,079
중 남 미	832	275	7,842	3,127
C I S	37	88	932	1,876
동 구 권	351	76	3,483	1,002

주: ①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②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적이 포함되었음.

〈붙임 3〉

□ 출항일 기준 통계와 비교표

○ '05년 수리일과 출항일 기준간 수출통계를 비교해 보면, 출항일 기준 수출이 수리일 기준보다 9억 5,700만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05년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가 수리일 기준보다 적은 것은 '05년 수출신고 수리건 중 승용차·선박 등 일부 품목이 미출항된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리일 기준 (A)	출항일 기준 (B)	차 이	
			차 액 (C=A-B)	비 율 (C/A)
2005년	284,419	283,462	957	0.3

□ 잠정치 통계와 비교표

○ 2005년 수출입 동향 확정치와 산자부가 발표한 잠정치를 비교한 결과 확정치가 잠정치에 비해 수출은 2억

7,600만달러 감소, 수입이 8,800만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액이 3억 6,400만달러 줄었음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5년			
	확정치(A)	잠정치(B)	차이(C=A-B)	비율(C/A)
수 출 액 증감률	284,419 12.0	284,695 12.2	-276	-0.1
수 입 액 증감률	261,238 16.4	261,150 16.3	88	0.03
무역수지	23,181	23,545	-364	1.3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 이 자료는 2006년 3월 2일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에서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만성적인 외환 초과공급 현상에 따른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아울러 개인과 기업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고자 함

□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 ① 실수요 목적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 취득한도 자유화: 현행 100만불 → 한도제한 폐지
 - 귀국일로부터 3년내 처분의무 폐지
 - 국세청 통보금액 상향조정: 현행 20만불 → 30만불
- ②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폐지(현행 1천만불)
 - 대형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한은의 외화 대출연계 통화스왑 활성화 및 수은의 자금지

원 확대 등

- ③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 개인의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및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제한 완화
- ④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대폭 완화
 - 의무면제 금액 상향조정: 건당 10만불 → 50만불
- ⑤ 해외예금 등 국세청 통보제도 완화
 - 해외예금 통보 금액: 연간 1만불 → 연간 5만불
- ⑥ 외환시장 심화를 위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
 -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 30%

* 국내 외환시장의 심화·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MF의 자문용역 요청

□ 정부는 이상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임

1.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2월중 주거용 부동산 취득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취득절차 개선: ① 2년 체재요건 확인서류 제출을 '서약서'로 대체('06. 1. 1),

②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완화('06. 1. 9)

* 취득한도 완화: 30만불 → 50만불('05. 7월) → 100만불('06. 1. 9)

※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05. 7~12) 월평균 4.3건, 141만불 → ('06. 1) 13건, 480만불 → ('06. 2. 1~15) 16건, 574만불

□ 현행 제도에 남아 있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관련 나머지 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사실상 자유화

① 실수요 목적의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
: 현행 100만불 → 한도 폐지

* 지난 1. 6일 해외투자 촉진방안 발표시 금년중 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② 해외 거주 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제한을 폐지

- 해외부동산 취득 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의 처분의무를 철폐함으로써 해외부동산 취득의 심리적 걸림돌을 제거

* 비거주자(해외 유학생·주재원 등)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도 감안

③ 해외 부동산 취득시 국제청에 통보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현행 20만불 → 30만불

* 배우자간 증여세 면제한도가 3억원(약 30만불)인 점을 감안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마

련할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에 반영하여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임

2.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및 지원 확대

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완전 자유화

□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없으나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불 한도의 규제가 남아 있음

□ 개인 등의 경우에도 투자한도를 폐지하여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

현 행 개 선

• 투자 한도: 1,000만불 → 한도 폐지

〈해외직접투자 실적〉

(단위: 억불, %)

	'02년	'03년	'04년	'05년(증감률)
전 체	63.4	59.1	80.6	90.4(12.2)
법 인	60.6	54.9	73.9	81.5(10.3)
개 인	2.8	4.2	6.7	8.9(32.8)

나. 자원개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은·수은의 금융지원을 강화

① 한국은행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대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

- 석유개발공사 등 자원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에 대한 자금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주고 은행

확대에 기여

- 일반간접투자기구의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
(현행) 자산총액의 5% 이내 → (개선) 20% 이내
- 재간접투자기구의 동일 외국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
(현행) 자산총액의 50% 이내 → (개선) 100%

4.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년 6개월 이내 회수*하여야 함

* 3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 : 1년 6개월 10만불 → 50만불

○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외채권회수의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 등의 자유로운 해외영업활동을 지원

* OECD회원국(30개국) 중 터키, 슬로바키아 2개국을 제외하고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가 없음

5. 외환거래 규제 목적의 관계기관 통보제도 개선

-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외환거래 정보에 대하여는 ① 과세자료 수집 목적과 ② 외환자유화에 따른 자유화 속도 조절을 위해 국세청 등에 통보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통보사항 중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건전한 외환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통보대상 거래 (국세청의 경우)
 - 연간(누적) 1만불을 초과하는 증여성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1만불 초과 지급
 - 5만불 초과 외국 부동산·시설물 이용에 관한 회원권 취득
 - 20만불 초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 연간(누적) 2만불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

- 과세자료 수집 목적보다는 외환거래의 위축 소지가 있는 규제 목적의 국세청 통보대상을 축소

- 해외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 :
(현행) 5만불 초과 → (개선) 10만불 초과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
(현행) 20만불 초과 → (개선) 30만불 초과
- 거주자의 해외예금 :
(현행) 연간 1만불 초과 → (개선) 연간 5만불 초과

- ※ ①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 실적
: ('05. 7~12) 월평균 17건, 60만불
→ ('06. 1) 35건, 140만불
- ② 해외예금(송금기준; 백만불)

구분	'03년	'04년	'05년
개인	2	24	52
법인	487	1,013	2,022
계	489	1,037	2,074

6. 비거주자 원화증권 발행 활성화

-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증권발행절차 등을 개선

- ①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1차 상장 허용, 자기자본 요건 적용 등 상장기준 개선, 국제회계기준 사용 허용 등

- ② 4월부터 유가증권 발행 공시의무사항을 200개에서 71개로 대폭 축소

- ③ 주요 경영사항 신고절차, 공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화

* 전자공시 시스템 개선, 영문공시 홈페이지 개설 등

- 앞으로도 비거주자 국내 증권발행의 애로요인을 지속적

으로 파악·개선하여 비거주자의 국내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금년 1. 1일부터 이미 자유화한 바 있음

7. 외국환포지션 한도 완화를 통한 외환시장 심화

□ 현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액의 합계액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미국·일본·홍콩·싱가폴 등은 포지션 한도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영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은 규제

○ 포지션 규제는 은행들의 외환리스크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제도이나, 은행들의 외환거래를 일부 제약함으로써 외환시장 발전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포지션한도 규제를 일시에 대폭 완화하는 경우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 현행 20%의 한도를 30%로 상향조정하여 시장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거래의 확대를 도모

〈외환시장 전체 일평균거래액 비교 (04. 4월)〉

	한 국	홍 콩	싱가폴	일 본	미 국	영 국
일평균 외환거래(10억불)	20	102	125	199	461	753
무역거래대비*(%)	5.4	22.4	43.7	25.1	23.3	108.9

* 2003년 연간 무역거래액 대비

※ 이 외에, 금년 3월중 IMF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국내외 선물환시장 제도개선방안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8. 기 타

□ 외환보유액 발표주기 조정 검토: 월 2회 → 월 1회
○ 그간 외환위기 이후 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환보

유액 내역을 월 2회 발표하고 있으나,

○ 빈번한 외환보유액 발표로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점과 대다수의 국가들이 월 1회 발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월 1회 발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43개국

월 2회 발표국: 한국, 말레이시아 2개국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발표주기 조정방안을 검토하여 IMF와 협의를 거쳐 별도 발표할 예정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 이 자료는 2006년 3월 2일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에서 발표한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기획예산처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에 부담금 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부담금을 주요 대상으로 유사부담금 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번엔 실시하는 부담금 운용평가의 특징은 '05. 11월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부담금의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 102개 부담금별로 유사부담금간의 부과수준의 적정성, 부담금과다징수 여부, 부과 타당성, 부과요건의 법제화현황 등 부담금 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게 되며
 - 평가결과를 토대로 존치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였음.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은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제

학과)를 단장으로 관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었음.[임가: '06. 3~6(4개월)]

- ※ 법제관련 : 오준근(경희대), 박용도(법제연구원)
- 경제분석 : 이종훈(명지대), 황성현(인천대)
- 조세관련 : 정재호(조세연구원)

- 기획예산처는 금년 중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하는 점검·평가결과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평가는 '03년에 처음 도입,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기획예산처는 그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01. 12. 31),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02년부터) 등 부담금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참고 1〉 부담금 현황자료

□ 부담금 수: 102개('06. 2월)

○ '90년대에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가 급증, '01년부터 부담금 정비결과 증가세가 둔화

(단위: 개)

	'61~'79	'80~'89	'90~'00	'01	'02	'03	'04	'05
• 신설 (환경 및 건설교통)	14 (7)	20 (8)	65 (32)	12 (10)	2 (-)	6 ¹⁾ (1)	2 (1)	1 (1)
• 폐지	-	-	1	9	1	8	-	1
• 누계	14	34	98	101	102	100	102	102

주: 이 중 6개는 부담금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담금 중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것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한 것

□ '03년 부담금 정비내용

	대상 부담금
폐지 및 삭제(8개)	•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문예진흥기금 모금, 산업단지공동부담금
관리대상 추가(6개)	• 기반시설부담금, 향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징수규모: 10조 415억원('04년)

○ '04년 주요증가액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

(단위: 억원, %)

	'99	'00	'01	'02	'03	'04
• 징수금액(억원)	41,772	48,497	70,891	78,215	91,831	100,415
(증가율, %)	(8.7)	(16.1)	(46.2) ¹⁾	(10.4)	(17.4) ²⁾	(9.3)

주: 1) IMT-2000 일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제외시 11.6% 증가

2)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제외시 9.4% 증가

□ 사용내역('04년)

○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75%, 지자체에서 14% 사용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 징수금액(억원)	54,231	21,086	7,840	5,662	11,596	100,415
• 비율(%)	54.0	21.0	7.8	5.6	11.5	100.0

〈참고 2〉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요약)

-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05. 11. 22)

□ 추진배경

- 각종 부담금 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

- 유사한 취지로 부과되는 부담금의 중복성 해소
 - 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
 - *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 복구비용예치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
 - 환경분야 부담금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지, 축산폐수배출 기준위반시 제재체계 일원화
- 부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 제고
 - 정책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낮은 부담금의 폐지 및 개선
 - * 장기간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제도 폐지 추진, 손괴자부담금 과 원인자부담금 통합,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의 개선
 - *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가금 개선, 수질개선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운영 개선
- 부담금의 불합리한 세부사항 개선
 - 부과대상·부과기준 및 제도운영 개선
 -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운영 개선,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부담금 개선
 - 부담금 징수규모 및 징수범위의 적정화
 - * 전력사업기반기금부담금 운용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부담 경감
- 효율적인 부담금 관리·운영 방안 마련

- 부담금 신설 억제 및 일몰제 법규화
- 부담금 부과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 * 유사 부담금간 부과수준의 적정성, 부담금 과다징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공개
 - * 매년 전년도 부담금 운용내역을 소관부처와 예산처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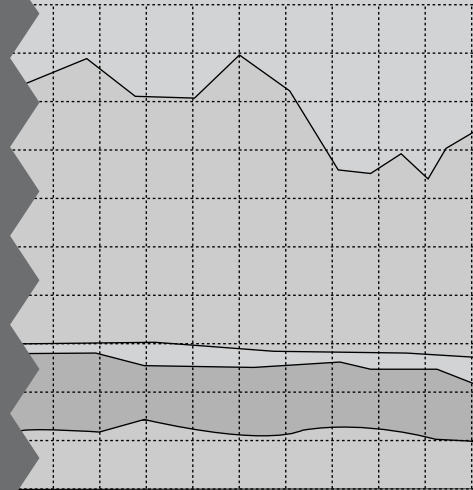
재정통계

• 지방세 IV편

• 지방세 V편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국제비교 I 편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단위: 원)

연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3,329	16,924	2,122	10,724	-	-	-	-
1972	3,466	17,810	2,502	12,777	-	-	-	-
1973	5,126	26,527	3,915	19,985	-	-	-	-
1974	7,032	36,216	5,353	26,822	-	-	-	-
1975	10,201	49,818	6,517	31,732	-	-	-	-
1976	13,391	68,978	8,588	43,930	-	-	-	-
1977	21,322	104,739	12,885	63,839	-	-	-	-
1978	26,075	126,766	15,748	76,311	-	-	-	-
1979	30,948	105,576	22,003	105,819	-	-	-	-
1980	35,159	165,745	27,288	128,760	-	-	-	-
1981	42,345	192,097	30,386	139,127	26,486	118,040	34,680	153,788
1982	51,409	229,117	33,855	153,962	30,347	131,917	37,191	164,999
1983	87,432	380,259	38,147	169,251	35,278	150,476	46,315	200,885
1984	63,924	270,469	41,261	179,597	37,270	156,939	52,434	222,802
1985	68,080	282,398	43,742	183,330	39,108	158,934	55,071	225,389
1986	72,053	290,758	47,212	196,959	44,024	176,580	55,741	226,187
1987	84,119	333,759	59,038	244,291	56,338	225,596	62,994	254,832
1988	112,388	434,964	66,720	268,083	65,542	258,359	74,360	292,457
1989	166,188	624,084	115,990	456,896	114,854	444,628	131,464	506,217
1990	196,812	742,452	144,206	551,376	146,834	548,462	173,291	647,714
1991	233,726	775,470	178,495	663,561	182,765	638,147	208,086	638,177
1992	265,010	859,330	210,910	759,670	212,080	730,500	229,770	770,570
1993	300,070	970,570	245,730	885,670	253,130	872,650	265,140	890,490
1994	352,385	1,114,105	277,089	960,953	312,962	979,465	288,543	881,863
1995	411,559	1,082,107	312,953	1,078,839	329,004	16,847,411	325,914	1,056,944
1996	469,692	1,429,472	368,294	1,248,343	373,447	1,219,069	356,696	1,144,657
1997	516,190	1,539,910	365,560	1,215,680	360,130	1,163,320	390,010	1,231,700
1998	481,421	1,429,269	342,398	1,117,400	331,106	1,059,235	348,984	1,091,577
1999	558,029	1,640,621	375,334	1,206,322	358,375	1,136,840	368,365	1,141,525
2000	588,507	1,730,227	363,593	1,168,585	368,157	1,167,871	377,718	1,170,509
2001	787,079	2,262,618	486,285	1,514,059	444,641	1,376,430	520,468	1,578,253
2002	923,912	2,602,324	579,065	1,770,622	511,548	1,562,023	593,586	1,754,770
2003	964,507	2,641,659	610,889	1,824,099	579,569	1,734,469	603,290	1,739,080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계속)

(단위: 원)

연 도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	-	-	-	-	-	913	4,841
1972	-	-	-	-	-	-	1,158	6,123
1973	-	-	-	-	-	-	1,801	9,541
1974	-	-	-	-	-	-	2,576	13,452
1975	-	-	-	-	-	-	3,775	18,661
1976	-	-	-	-	-	-	5,464	27,007
1977	-	-	-	-	-	-	7,931	39,664
1978	-	-	-	-	-	-	11,402	56,137
1979	-	-	-	-	-	-	15,485	74,698
1980	-	-	-	-	-	-	22,417	102,577
1981	-	-	-	-	-	-	23,322	106,571
1982	-	-	-	-	-	-	26,380	120,417
1983	-	-	-	-	-	-	34,431	151,652
1984	-	-	-	-	-	-	37,468	163,605
1985	-	-	-	-	-	-	42,793	176,056
1986	-	-	-	-	-	-	46,298	188,543
1987	33,632	149,108	-	-	-	-	53,437	215,112
1988	53,459	233,046	-	-	-	-	79,092	311,469
1989	93,678	403,668	117,808	508,413	-	-	114,214	445,398
1990	128,317	510,048	156,628	634,388	-	-	162,118	616,572
1991	162,585	597,400	211,936	751,748	-	-	205,575	680,199
1992	195,220	690,230	242,880	845,120	-	-	237,500	768,380
1993	213,350	756,540	309,730	1,078,270	-	-	311,040	1,002,340
1994	257,915	860,910	344,822	1,129,076	-	-	374,068	1,121,911
1995	286,778	972,513	351,123	1,177,698	-	-	405,091	1,266,048
1996	318,483	1,071,411	363,208	1,199,221	-	-	436,956	1,351,262
1997	359,910	1,193,310	370,570	1,197,430	433,310	1,423,750	449,060	1,367,630
1998	332,661	1,081,597	330,802	1,062,798	392,240	1,279,636	405,909	1,237,753
1999	335,554	1,081,539	381,935	1,219,206	432,114	1,403,350	448,712	1,361,679
2000	289,836	934,181	367,671	1,173,674	407,280	1,322,697	394,321	1,196,621
2001	433,025	1,363,007	498,630	1,553,110	549,435	1,749,592	681,805	2,039,267
2002	482,057	1,498,773	591,777	1,813,349	605,888	1,904,391	807,556	2,361,456
2003	518,391	1,570,728	631,256	1,883,967	671,307	2,069,261	808,397	2,297,009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계속)

(단위: 원)

연 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435	2,347	576	3,349	688	4,045	674	3,928
1972	564	3,073	698	4,076	808	4,791	819	4,836
1973	917	5,003	1,141	6,638	1,255	7,431	1,305	7,696
1974	1,251	6,893	1,603	9,254	1,808	10,681	1,923	11,260
1975	1,856	9,545	2,547	13,801	2,850	15,698	2,964	16,372
1976	2,541	13,065	3,620	19,616	4,011	22,096	4,078	22,524
1977	3,540	17,863	5,321	28,542	5,779	32,073	5,704	31,772
1978	4,238	21,665	6,108	31,833	6,662	36,288	6,750	37,008
1979	6,479	32,317	9,042	46,455	9,683	52,212	9,570	51,407
1980	8,900	42,544	11,337	56,852	13,199	69,572	13,700	71,029
1981	11,589	55,352	14,134	53,667	15,377	77,761	16,010	81,042
1982	13,814	65,457	16,144	78,581	18,232	92,400	18,258	91,622
1983	15,815	73,734	18,035	85,015	21,464	106,715	20,626	101,086
1984	17,867	82,399	21,641	100,150	24,312	119,081	22,086	106,212
1985	21,903	93,725	25,487	110,267	26,439	121,220	21,495	96,645
1986	23,082	99,304	27,060	116,710	28,913	130,947	22,133	98,411
1987	27,645	118,734	30,149	129,678	32,559	145,923	25,756	113,538
1988	43,944	184,629	48,308	202,545	52,882	231,456	11,578	179,152
1989	77,189	317,577	81,708	338,661	66,089	282,674	64,713	273,180
1990	113,983	439,162	106,449	424,375	83,627	354,420	89,722	359,155
1991	137,577	510,483	143,040	528,310	123,645	467,969	116,465	444,393
1992	165,280	594,790	164,840	588,220	142,700	521,930	135,900	497,640
1993	177,890	640,440	196,040	700,140	167,000	611,240	156,820	574,570
1994	211,522	763,814	223,337	761,494	203,511	710,534	187,463	661,791
1995	262,838	875,699	272,920	915,403	252,034	847,859	226,617	777,075
1996	298,392	969,323	311,368	1,024,020	295,335	967,499	239,711	844,206
1997	325,550	1,031,030	307,110	986,820	309,330	983,630	258,690	851,970
1998	302,360	937,677	279,895	880,578	287,913	896,783	253,554	815,623
1999	306,889	934,960	308,079	956,625	309,931	949,162	262,077	828,460
2000	304,556	927,852	265,129	823,259	295,591	905,242	251,261	794,269
2001	419,287	1,225,525	409,112	1,225,128	424,527	1,245,852	334,352	1,022,366
2002	461,240	1,317,679	449,419	1,319,122	463,128	1,326,206	357,369	1,060,253
2003	499,089	1,379,866	491,673	1,401,745	562,839	1,555,858	379,683	1,104,078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계속)

(단위: 원)

연 도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516	3,020	762	4,106	607	3,419	880	3,879
1972	634	3,760	937	5,084	788	4,480	1,183	5,486
1973	969	5,740	1,699	9,169	1,261	7,121	1,838	8,513
1974	1,380	8,127	2,271	12,163	2,103	11,796	2,459	11,229
1975	2,148	11,672	3,091	15,742	2,807	14,646	3,519	15,726
1976	3,248	17,649	4,031	20,532	3,881	20,251	4,746	21,208
1977	4,640	25,525	5,754	28,894	6,179	31,826	6,297	27,760
1978	5,275	28,622	7,710	37,573	8,052	40,852	8,772	38,544
1979	8,044	43,205	10,990	52,475	11,398	57,195	12,981	56,928
1980	11,236	57,979	13,769	65,340	15,294	72,500	17,815	77,395
1981	12,776	63,051	14,262	66,234	19,188	89,265	19,816	86,900
1982	14,689	73,118	15,931	73,412	21,419	99,113	17,067	113,550
1983	17,707	85,764	19,416	87,507	25,980	117,148	26,246	111,204
1984	19,385	92,731	21,816	95,362	28,073	124,362	26,141	109,820
1985	20,776	93,325	25,431	104,510	32,596	134,729	29,134	120,682
1986	23,154	103,843	27,664	112,750	36,137	148,901	30,323	124,184
1987	23,696	106,538	33,406	135,395	46,038	187,858	34,968	142,091
1988	36,970	164,294	51,204	203,272	68,331	272,423	52,870	211,869
1989	55,288	242,089	80,506	313,017	106,018	415,252	88,613	350,915
1990	78,300	318,725	110,612	401,836	137,420	509,894	130,722	512,001
1991	102,293	379,383	142,003	510,085	175,281	626,268	180,679	633,662
1992	125,480	448,040	165,590	575,010	204,680	715,340	216,600	746,120
1993	134,390	479,610	187,530	651,320	225,410	788,350	238,930	822,970
1994	154,991	530,458	228,144	787,935	273,927	933,367	278,741	929,479
1995	188,153	615,267	261,290	843,103	302,862	1,012,217	372,163	1,080,169
1996	231,247	738,073	303,191	958,436	346,145	1,138,006	343,332	1,116,328
1997	234,240	728,790	308,950	957,190	325,730	1,047,940	371,130	1,184,350
1998	220,847	673,916	286,279	873,121	313,846	995,468	376,302	1,179,705
1999	246,500	740,742	313,148	944,538	323,191	1,014,921	399,448	1,239,549
2000	220,589	662,879	290,574	876,446	301,727	947,517	417,196	1,294,622
2001	338,240	974,251	421,060	1,227,865	444,742	1,357,111	604,081	1,802,830
2002	372,915	1,047,808	433,941	1,240,897	523,675	1,567,667	682,517	1,991,692
2003	383,168	1,048,729	463,573	1,294,840	546,035	1,595,913	701,345	1,987,89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누 계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공 동 시 설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5	총 괄	7,880,198	889,368	485,440	396,916	52,347	49,747	3,117,272	53,158	684,771	17,890
		100.0	100.0	6.2	44.6	0.7	5.6	39.6	6.0	8.7	2.0
	현년도분	2,793,746	385,936	207,167	195,795	32,008	22,466	1,068,703	19,602	280,849	7,855
		100.0	100.0	3.7	30.6	0.6	3.5	19.1	3.1	5.0	1.2
	과년도분	5,086,452	503,432	278,273	201,121	20,339	27,281	2,048,569	33,556	403,922	10,035
		100.0	100.0	2.6	25.6	0.2	3.5	19.3	4.3	3.8	1.3
	94년도	1,657,888	218,751	91,958	104,517	13,068	16,797	657,000	11,759	163,602	4,362
	(비율)	100.0	100.0	2.7	31.4	0.4	5.0	19.0	3.5	4.7	1.3
	93년도	1,139,415	114,855	43,173	40,155	1,732	5,189	520,373	8,973	85,340	2,175
	(비율)	100.0	100.0	1.9	22.8	0.1	2.9	23.0	5.1	3.8	1.2
	92년도	931,116	75,007	40,889	27,078	2,118	2,852	390,208	6,430	57,366	1,235
	(비율)	100.0	100.0	2.2	23.3	0.1	2.5	21.1	5.5	3.1	1.1
	91년도	799,432	44,250	36,199	15,709	2,118	1,588	318,888	4,714	37,901	542
(비율)	100.0	100.0	2.3	21.5	0.1	2.2	20.1	6.5	2.4	0.7	
91이전	558,601	50,569	66,054	13,662	1,303	855	162,100	1,680	59,713	1,721	
(비율)	100.0	100.0	4.5	15.6	0.1	1.0	11.0	1.9	4.1	2.0	

연도	구분	지 역 개 발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5	총 괄	12,529	746	3,527,839	370,911	856,112	38,254	4,320,144	323,909	1,841	169
		0.2	0.1	44.8	41.7	10.9	4.3	54.8	36.4	-	-
	현년도분	7,940	102	1,197,079	140,116	311,817	16,285	1,207,372	144,907	941	84
		0.1	-	21.3	21.9	5.6	2.5	21.5	22.7	-	-
	과년도분	4,589	644	2,330,760	230,795	544,295	21,969	3,112,772	179,002	900	85
		-	0.1	21.9	29.4	5.1	2.8	29.3	22.8	-	-
	94년도	4,580	643	727,680	80,673	185,889	9,075	967,952	65,195	194	37
	(비율)	0.1	0.2	21.0	24.2	5.4	2.7	27.9	19.6	-	-
	93년도	9	1	488,788	58,362	108,957	5,172	615,126	38,232	80	10
	(비율)	-	-	21.6	33.1	4.8	2.9	27.2	21.7	-	-
	92년도	-	-	440,535	37,412	83,113	3,373	492,839	26,682	113	7
	(비율)	-	-	23.8	32.2	4.5	2.9	26.6	23.0	-	-
	91년도	-	-	404,326	21,697	64,951	1,784	446,145	20,657	215	19
(비율)	-	-	25.5	29.7	4.1	2.4	28.1	28.3	-	-	
91이전	-	-	269,431	32,651	101,385	2,565	590,710	28,236	298	12	
(비율)	-	-	18.4	37.3	6.9	2.9	40.2	32.2	-	-	

연도	구분	도 축 세		총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담 배 소 비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5	총 괄	6	45	1,736,752	115,240	1,416,899	50,467	26,296	7,540	1	-
		-	-	22.0	13.0	18.0	5.7	0.3	0.8	-	-
	현년도분	6	45	704,671	64,373	577,881	24,065	11,647	3,161	1	-
		-	-	12.6	10.1	10.3	3.8	0.2	0.5	-	-
	과년도분	-	-	1,032,081	50,867	839,018	26,402	14,649	4,379	-	-
		-	-	9.7	6.5	7.9	3.4	0.1	0.6	-	-
	94년도	-	-	371,730	26,334	274,655	12,286	4,870	1,595	-	-
	(비율)	-	-	10.7	7.9	7.9	3.7	0.1	0.5	-	-
	93년도	-	-	224,565	11,414	169,243	5,620	2,666	950	-	-
	(비율)	-	-	9.9	6.5	7.5	3.2	0.1	0.5	-	-
	92년도	-	-	190,535	6,598	153,420	3,744	2,244	612	-	-
	(비율)	-	-	10.3	5.7	8.3	3.2	0.1	0.5	-	-
	91년도	-	-	150,272	3,697	122,724	2,165	1,606	393	-	-
(비율)	-	-	9.5	5.1	7.7	3.0	0.1	0.5	-	-	
91이전	-	-	94,979	2,824	118,976	2,587	3,263	829	-	-	
(비율)	-	-	6.5	3.2	8.1	3.0	0.2	0.9	-	-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누 계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공 동 시 설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6	총 괄	16,098,092	1,642,239	432,288	440,796	54,817	53,347	3,281,028	56,699	697,033	22,081
		100.0	100.0	2.7	26.8	3.0	3.2	20.4	3.5	4.3	1.3
	현년도분	5,645,954	664,428	153,769	189,106	25,429	23,209	1,097,883	20,777	270,906	7,746
		100.0	100.0	2.7	28.5	0.5	3.5	19.4	3.1	4.8	1.2
	과년도분	10,452,138	977,811	278,519	251,690	29,388	30,138	2,183,145	35,922	426,127	14,335
		100.0	100.0	2.7	25.7	0.3	3.1	20.9	3.7	4.1	1.5
	95년도 (비율)	3,355,190	400,859	91,434	113,116	16,125	12,130	763,306	13,358	153,571	5,573
		100.0	100.0	2.7	28.2	0.5	3.0	22.8	3.3	4.6	1.4
	94년도 (비율)	2,494,166	245,000	55,099	68,672	7,688	9,276	488,541	8,106	112,710	3,654
		100.0	100.0	2.2	28.0	0.3	3.8	19.6	3.3	4.5	1.5
	93년도 (비율)	1,791,365	137,943	31,819	27,513	1,433	3,782	419,643	6,954	63,419	1,798
		100.0	100.0	1.8	19.9	0.1	2.7	23.4	5.0	3.5	1.3
	92년도 (비율)	1,503,225	94,733	34,743	20,748	2,107	3,104	335,711	5,269	50,627	1,087
		100.0	100.0	2.3	21.9	0.1	3.3	22.3	5.6	3.4	1.1
92이전 (비율)	1,308,192	99,276	65,424	21,641	2,035	1,846	175,944	2,235	45,800	2,223	
	100.0	100.0	5.0	21.8	0.2	1.9	13.4	2.3	3.5	2.2	

연도	구분	지역개발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6	총 괄	10,836	600	3,364,218	445,000	856,112	38,254	4,171,321	399,201	1,011	1,392
		0.1	0.0	20.9	27.1	4.3	10.9	25.9	24.3	0.0	0.1
	현년도분	2,588	207	1,239,331	160,929	311,817	16,285	1,363,093	169,513	459	1,306
		0.0	0.0	22.0	24.2	5.6	2.5	24.1	25.5	0.0	0.2
	과년도분	8,248	393	2,124,887	284,071	544,295	21,969	2,808,228	229,688	552	88
		0.1	0.0	20.3	29.1	5.1	2.8	26.9	23.5	0.0	0.0
	95년도 (비율)	4,257	129	798,706	110,434	185,889	9,075	650,781	89,379	93	37
		0.1	0.0	23.8	27.5	5.4	2.7	19.4	22.3	0.0	0.0
	94년도 (비율)	1,988	94	515,204	68,829	108,957	5,172	686,405	50,751	100	22
		0.1	0.0	20.7	28.1	4.8	2.9	27.5	20.7	0.0	0.0
	93년도 (비율)	1,002	81	355,269	46,768	83,113	3,373	493,402	32,560	37	3
		0.1	0.0	19.8	33.9	4.5	2.9	27.5	23.6	0.0	0.0
	92년도 (비율)	801	67	304,232	30,062	64,951	1,784	407,739	23,423	92	9
		0.1	0.0	20.2	31.7	4.1	2.4	27.1	24.7	0.0	0.0
92이전 (비율)	200	22	151,476	27,978	101,385	2,565	569,901	33,575	230	17	
	0.0	0.0	11.6	28.2	6.9	2.9	43.6	33.8	0.0	0.0	

연도	구분	도 축 세		중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6	총 괄	24	759	1,765,707	117,451	1,432,966	53,040	42,321	8,857
		0.0	0.0	11.0	702.0	8.9	3.2	0.3	0.5
	현년도분	20	758	610,566	49,813	558,160	20,642	17,139	3,303
		0.0	0.1	10.8	7.5	9.9	3.1	0.3	0.5
	과년도분	4	1	1,155,141	67,638	874,806	32,394	25,182	5,554
		0.0	0.0	11.1	6.9	8.4	3.3	0.2	0.6
	95년도 (비율)	0	0	388,058	31,378	300,930	12,804	7,931	2,187
		0.0	0.0	11.6	7.8	9.0	3.2	0.2	0.5
	94년도 (비율)	4	1	277,713	18,096	205,967	9,434	5,625	1,341
		0.0	0.0	11.1	7.4	8.3	3.9	0.2	0.5
	93년도 (비율)	0	0	192,887	9,194	143,662	4,346	4,863	779
		0.0	0.0	10.8	6.7	8.0	3.2	0.3	0.6
	92년도 (비율)	0	0	172,127	4,822	119,852	3,082	4,863	546
		0.0	0.0	11.5	5.1	8.0	3.3	0.3	0.6
92이전 (비율)	0	0	124,356	4,148	104,395	2,728	1,877	702	
	0.0	0.0	9.5	4.2	8.0	2.7	0.1	0.7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누 계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공 동 시 설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7	총 괄	16,007,563	2,119,872	417,689	582,412	62,385	76,903	3,164,105	56,845	757,340	27,871
		100.0	100.0	2.6	27.5	0.4	3.6	19.8	2.7	4.7	1.3
	현년도분	5,490,437	890,763	162,328	267,849	28,684	38,909	784,744	14,637	282,703	9,994
		100.0	100.0	1.0	12.6	0.2	1.8	4.9	0.7	1.8	0.5
	과년도분	10,517,126	1,229,109	255,361	314,563	33,701	37,994	2,379,361	42,208	474,637	17,877
		100.0	100.0	1.6	14.8	0.2	1.8	14.9	2.0	3.0	0.8
	96년도 (비율)	3,210,245	440,797	71,361	120,918	12,822	15,839	780,001	14,394	159,939	5,763
		100.0	100.0	0.4	5.7	0.1	0.7	4.9	0.7	1.0	0.3
	95년도 (비율)	2,423,106	317,956	61,595	84,156	10,496	8,329	595,605	10,769	120,584	4,841
		100.0	100.0	0.4	4.0	0.1	0.4	3.7	0.5	0.8	0.2
	94년도 (비율)	1,903,876	205,631	38,495	54,380	5,591	7,317	418,290	7,348	91,183	3,688
		100.0	100.0	0.2	2.6	0.0	0.3	2.6	0.3	0.6	0.2
	93년도 (비율)	1,497,061	125,210	27,071	24,424	1,498	3,302	345,486	5,925	53,877	1,746
	100.0	100.0	0.2	1.2	0.0	0.2	2.2	0.3	0.3	0.1	
92이전 (비율)	1,482,838	139,515	56,839	30,685	3,294	3,207	239,979	3,772	49,054	1,839	
	100.0	100.0	0.4	1.4	0.0	0.2	1.5	0.2	0.3	0.1	

연도	구분	지역개발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7	총 괄	12,269	789	3,167,363	577,078	879,200	53,121	4,458,526	509,376	1,084	1,586
		0.1	0.0	19.8	27.2	5.5	2.5	27.9	24.0	0.0	0.1
	현년도분	5,921	161	1,091,294	214,794	327,061	20,786	1,635,695	226,204	410	59
		0.0	0.0	6.8	10.1	2.0	1.0	10.2	10.7	0.0	0.0
	과년도분	6,348	628	2,076,069	362,284	552,139	32,335	2,882,831	283,172	674	1,527
		0.0	0.0	13.0	17.1	3.4	1.5	18.0	13.4	0.0	0.1
	96년도 (비율)	2,738	249	685,619	128,795	184,101	10,934	690,098	101,284	112	1,441
		0.0	0.0	4.3	6.1	1.2	0.5	4.3	4.8	0.0	0.1
	95년도 (비율)	1,606	57	537,885	94,294	131,841	8,579	486,748	71,449	46	14
		0.0	0.0	3.4	4.4	0.8	0.4	3.0	3.4	0.0	0.0
	94년도 (비율)	1,013	264	356,156	58,459	100,392	5,895	544,184	43,913	65	57
		0.0	0.0	2.2	2.8	0.6	0.3	3.4	2.1	0.0	0.0
	93년도 (비율)	988	58	283,630	45,458	68,884	3,629	459,998	29,396	35	1
	0.0	0.0	1.8	2.1	0.4	0.2	2.9	1.4	0.0	0.0	
92이전 (비율)	3	-	212,779	35,278	66,921	3,298	641,803	37,130	416	14	
	0.0	-	1.3	1.7	0.4	0.2	4.0	1.8	0.0	0.0	

연도	구분	도 축 세		중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7	총 괄	39	1,629	1,666,804	152,014	1,395,542	69,264	25,217	10,984
		0.0	0.1	10.4	7.2	8.7	3.3	0.2	0.5
	현년도분	22	974	617,930	66,932	544,105	25,112	9,540	4,352
		0.0	0.0	3.9	3.2	3.4	1.2	0.1	0.2
	과년도분	17	655	1,048,874	85,082	851,437	44,152	15,677	6,632
		0.0	0.0	6.6	4.0	5.3	2.1	0.1	0.3
	96년도 (비율)	16	619	333,903	25,949	284,586	12,484	4,949	2,128
		0.0	0.0	2.1	1.2	1.8	0.6	0.0	0.1
	95년도 (비율)	1	36	260,939	23,488	211,796	10,307	3,964	1,637
		0.0	0.0	1.6	1.1	1.3	0.5	0.0	0.1
	94년도 (비율)	-	-	196,813	15,390	148,926	7,687	2,768	1,233
		-	-	1.2	0.7	0.9	0.4	0.0	0.1
	93년도 (비율)	-	-	142,466	6,861	111,492	3,755	1,636	622
	-	-	0.9	0.3	0.7	0.2	0.0	0.0	
92이전 (비율)	-	-	114,753	13,394	94,637	9,919	2,360	979	
	-	-	0.7	0.6	0.6	0.5	0.0	0.0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누 계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공 동 시 설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8	총 괄	18,157,114	2,945,430	421,974	786,055	66,965	92,701	3,297,276	59,465	896,993	47,274
		100.0	100.0	2.3	26.7	0.4	3.1	18.2	2.0	4.9	1.6
	현년도분	6,906,374	1,191,970	140,662	285,127	22,503	25,144	1,007,486	18,096	404,879	23,691
		100.0	100.0	0.8	9.7	0.1	0.9	5.5	0.6	2.2	0.8
	과년도분	11,250,740	1,753,460	281,312	500,928	44,462	67,557	2,289,790	41,369	492,114	23,583
		100.0	100.0	1.5	17.0	0.2	2.3	12.6	1.4	2.7	0.8
	97년도 (비율)	3,450,094	686,573	89,499	216,564	17,382	33,998	579,723	11,011	158,987	8,590
		100.0	100.0	0.5	7.4	0.1	1.2	3.2	0.4	0.9	0.3
	96년도 (비율)	2,484,727	419,053	52,926	109,659	9,586	13,211	623,363	10,994	118,267	5,521
		100.0	100.0	0.3	3.7	0.1	0.4	3.4	0.4	0.7	0.2
	95년도 (비율)	1,945,443	298,267	45,608	82,504	9,121	8,397	467,795	7,905	89,085	3,865
		100.0	100.0	0.3	2.8	0.1	0.3	2.6	0.3	0.5	0.1
	94년도 (비율)	1,634,581	198,389	33,976	51,840	4,813	6,163	336,921	5,472	67,053	3,303
	100.0	100.0	0.2	1.8	0.0	0.2	1.9	0.2	0.4	0.1	
93이전 (비율)	1,735,895	151,178	59,302	40,361	3,560	5,788	281,988	5,987	58,722	2,304	
	100.0	100.0	0.3	1.4	0.0	0.2	1.6	0.2	0.3	0.1	

연도	구분	지역개발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8	총 괄	16,497	367	3,647,664	863,358	1,097,570	86,489	5,090,149	686,111	836	347
		0.1	0.0	20.1	29.3	6.0	2.9	28.0	23.3	0.0	0.0
	현년도분	10,984	198	1,476,102	359,056	469,868	43,762	1,824,632	283,754	353	266
		0.1	0.0	8.1	12.2	2.6	1.5	10.0	9.6	0.0	0.0
	과년도분	5,513	169	2,171,562	504,302	627,702	42,726	3,265,517	402,357	483	81
		0.0	0.0	12.0	17.1	3.5	1.5	18.0	13.7	0.0	0.0
	97년도 (비율)	3,158	96	740,139	169,370	201,588	16,033	978,091	161,256	107	28
		0.0	0.0	4.1	5.8	1.1	0.5	5.4	5.5	0.0	0.0
	96년도 (비율)	1,331	36	502,631	142,143	141,083	10,281	566,615	86,670	74	21
		0.0	0.0	2.8	4.8	0.8	0.3	3.1	2.9	0.0	0.0
	95년도 (비율)	565	17	416,148	93,449	107,800	7,707	428,490	65,674	36	2
		0.0	0.0	2.3	3.2	0.6	0.3	2.4	2.2	0.0	0.0
	94년도 (비율)	247	18	280,429	68,094	88,166	4,580	517,403	37,964	70	23
	0.0	0.0	1.5	2.3	0.5	0.2	2.8	1.3	0.0	0.0	
93이전 (비율)	212	2	232,215	31,246	89,065	4,125	774,918	50,792	196	7	
	0.0	0.0	1.3	1.1	0.5	0.1	4.3	1.7	0.0	0.0	

연도	구분	도 축 세		중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8	총 괄	38	1,853	1,898,310	211,695	1,692,539	94,859	30,303	14,856
		0.0	0.1	10.5	7.2	9.3	3.2	0.2	0.5
	현년도분	13	775	779,522	100,379	757,472	45,816	11,898	5,905
		0.0	0.0	4.3	3.4	4.2	1.6	0.1	0.2
	과년도분	25	1,078	1,118,788	111,316	935,067	49,043	18,405	8,951
		0.0	0.0	6.2	3.8	5.1	1.7	0.1	0.3
	97년도 (비율)	12	523	366,219	47,173	309,470	18,819	5,719	3,111
		0.0	0.0	2.0	1.6	1.7	0.6	0.0	0.1
	96년도 (비율)	13	555	253,715	27,212	210,938	10,994	4,184	1,756
		0.0	0.0	1.4	0.9	1.2	0.4	0.0	0.1
	95년도 (비율)	-	-	209,511	18,827	167,743	8,185	3,541	1,735
		-	-	1.2	0.6	0.9	0.3	0.0	0.1
	94년도 (비율)	-	-	171,620	12,180	131,035	7,107	2,848	1,645
	-	-	0.9	0.4	0.7	0.2	0.0	0.1	
93이전 (비율)	-	-	117,723	5,924	115,881	3,938	2,113	704	
	-	-	0.6	0.2	0.6	0.1	0.0	0.0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누 계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공 동 시 설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9	총 괄	19,283,689	3,262,868	408,947	760,317	59,213	96,085	3,301,510	64,872	1,059,324	57,585
		100.0	100.0	2.1	23.3	0.3	2.9	17.1	2.0	5.5	1.8
	현년도분	6,767,874	973,318	123,111	179,921	9,690	19,771	935,113	19,181	400,896	21,873
		100.0	100.0	0.6	5.5	0.1	0.6	4.8	0.6	2.1	0.7
	과년도분	12,515,815	2,289,550	285,836	580,396	49,523	76,314	2,366,397	45,691	658,428	35,801
		100.0	100.0	1.5	17.8	0.3	2.3	12.3	1.4	3.4	1.1
	98년도	4,243,264	839,966	80,983	191,006	16,250	20,458	655,859	13,661	187,245	16,112
	(비율)	100.0	100.0	22.0	5.9	0.4	0.6	0.1	0.4	3.4	0.5
	97년도	2,565,193	570,171	61,929	170,678	11,924	30,187	478,163	9,704	118,739	6,735
	(비율)	100.0	100.0	0.4	5.2	0.1	0.9	3.4	0.3	1.0	0.2
	96년도	1,949,583	338,545	41,334	84,700	8,138	10,437	447,149	9,217	99,744	4,608
	(비율)	100.0	100.0	0.2	2.6	0.0	0.3	2.3	0.3	0.5	0.1
	95년도	1,589,562	262,814	39,788	69,264	8,681	6,879	343,950	6,818	76,640	3,894
(비율)	100.0	100.0	0.2	2.1	0.0	0.2	1.8	0.2	0.4	0.1	
94이전	2,168,213	278,054	61,802	64,749	4,530	8,535	441,276	6,290	76,060	4,452	
(비율)	100.0	100.0	0.3	2.0	0.0	0.3	2.3	0.2	0.4	0.1	

연도	구분	지역개발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9	총 괄	15,665	968	3,967,255	1,031,627	1,196,456	103,592	5,521,210	775,883	1,530	470
		0.1	0.0	20.6	31.6	6.2	3.2	28.6	23.8	0.0	0.0
	현년도분	5,031	250	1,490,285	310,483	453,681	40,588	1,886,449	246,058	1,061	195
		0.0	0.0	7.7	9.5	2.4	1.2	9.8	7.5	0.0	0.0
	과년도분	10,634	717	2,476,970	721,144	742,775	63,004	3,634,761	529,825	469	275
		0.1	0.0	12.8	22.1	3.9	1.9	18.8	16.2	0.0	0.0
	98년도	3,602	149	951,305	293,814	305,979	28,488	1,078,786	179,748	101	209
	(비율)	1.0	0.0	0.0	9.0	1.6	0.9	5.6	5.5	0.0	0.0
	97년도	3,241	308	540,562	166,970	151,387	10	720,300	123,381	61	28
	(비율)	0.0	0.0	4.9	5.1	0.8	0.0	3.7	3.8	0.0	0.0
	96년도	1,870	177	409,250	104,606	114,236	8,406	464,470	84,579	40	9
	(비율)	0.0	0.0	2.1	3.2	0.6	0.3	2.4	2.6	0.0	0.0
	95년도	801	46	325,250	73,394	89,987	7,109	384,351	66,238	184	2
(비율)	0.0	0.0	1.7	2.2	0.5	0.2	2.0	2.0	0.0	0.0	
94이전	1,120	37	251,603	82,360	81,186	6,850	986,854	75,879	83	27	
(비율)	0.0	0.0	1.3	2.5	0.4	0.0	5.1	0.4	0.0	0.0	

연도	구분	도 축 세		중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9	총 괄	3,600	1,860	1,866,795	241,220	1,851,986	112,380	30,198	16,011
		0.0	0.1	9.7	7.4	9.6	3.4	0.2	0.5
	현년도분	5	94	681,585	87,830	771,002	42,846	9,965	4,319
		0.0	0.0	3.5	2.7	4.0	1.3	0.1	0.1
	과년도분	3,595	1,766	1,185,210	153,390	1,080,984	69,534	20,233	11,692
		0.0	0.1	6.1	4.7	5.6	2.1	0.1	0.4
	98년도	3,581	1,022	426,758	61,009	425,288	29,887	7,527	4,403
	(비율)	0.0	0.0	2.2	1.9	2.2	0.9	0.0	0.1
	97년도	9	385	252,999	33,088	221,398	13,860	4,481	2,696
	(비율)	0.0	0.0	1.3	1.0	1.1	0.4	0.0	0.1
	96년도	5	359	193,318	20,208	166,739	9,391	3,290	1,846
	(비율)	0.0	0.0	1.0	0.6	0.9	0.3	0.0	0.1
	95년도	-	-	179,214	19,601	138,986	8,068	2,730	1,501
(비율)	-	-	0.9	0.6	0.7	0.2	0.0	0.0	
94이전	-	-	132,921	19,484	128,573	8,327	2,205	1,247	
(비율)	-	-	0.7	0.1	0.7	0.0	0.0	0.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3.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1977		1978		1979		198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3,596,971	31,615,962	3,589,899	31,375,389	4,171,614	60,935,104	6,681,655	108,393,285
취득세	58,373	4,984,913	111,890	10,320,442	225,294	11,120,712	1,111,900	21,740,902
등록세	67,702	706,400	84,702	2,528,149	550,926	11,231,576	1,659,066	20,560,963
면허세	13,522	220,486	14,947	158,143	21,552	198,239	24,743	212,839
주민세	581,300	726,130	515,417	591,280	495,070	2,124,380	665,426	2,700,472
재산세	1,960,335	9,486,890	1,984,164	9,283,856	1,994,397	14,400,101	2,012,958	25,629,789
자동차세	16,601	616,183	17,100	649,261	38,431	1,106,076	84,925	1,792,530
농지세	438,351	9,825,621	356,503	1,876,335	316,950	4,856,921	435,915	16,464,920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267,853	3,540,828	278,549	4,236,214	252,401	5,512,880	352,876	8,386,742
공동시설세	190,784	859,654	223,532	874,129	193,142	1,128,748	251,959	1,468,558
사업소세	2,150	648,857	3,095	857,580	83,451	9,255,471	81,887	9,435,569

	1981		1982		1983		1984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5,691,905	137,942,746	4,859,137	123,994,468	5,357,834	172,657,439	5,040,566	150,583,835
취득세	522,981	28,524,969	312,592	30,305,810	624,253	61,981,978	311,160	34,567,111
등록세	952,050	22,905,778	337,765	26,204,084	526,885	44,464,645	279,039	30,110,900
면허세	29,191	274,919	66,539	545,697	89,163	574,683	80,744	599,731
주민세	694,103	7,697,231	581,734	1,250,616	608,284	6,846,675	660,425	1,789,529
재산세	2,239,946	29,928,529	2,166,824	28,132,187	2,315,369	34,109,425	2,328,167	42,178,724
자동차세	96,962	2,020,136	77,842	1,607,899	98,789	4,034,287	102,603	4,598,498
농지세	274,731	11,169,949	390,230	10,886,671	272,323	7,281,343	256,516	9,914,272
도축세	-	-	-	-	18,786	570,052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455,671	14,131,725	481,488	15,692,187	464,034	5,793,710	581,199	13,500,211
공동시설세	342,287	11,586,126	339,332	3,990,429	236,118	1,595,020	334,475	8,465,978
사업소세	83,983	9,703,384	104,791	5,378,888	103,830	5,405,621	106,238	4,858,881

3.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1985		1986		1987		1988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4,495,665	139,992,945	4,239,932	140,805,357	4,254,871	134,577,132	5,631,372	224,476,104
취득세	243,033	34,950,258	162,027	43,134,949	190,010	36,505,658	528,629	91,151,555
등록세	134,257	29,650,542	92,465	25,227,463	81,151	25,385,528	78,467	42,607,483
면허세	87,008	1,145,962	68,151	475,810	71,556	502,643	51,097	366,188
주민세	632,246	1,802,072	678,155	1,912,311	609,762	2,069,236	664,714	2,166,071
재산세	2,317,450	37,185,011	2,271,453	31,325,093	2,249,800	36,561,611	2,753,319	52,936,046
자동차세	77,749	4,150,101	37,363	727,860	57,753	1,386,890	57,780	3,306,049
농지세	130,497	5,679,640	179,135	6,331,522	154,712	2,984,147	151,933	1,435,558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12	9,411,645	12	2,364,361	-	-
담배소비세	-	-	-	-	-	-	525,512	813,268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543,094	17,046,111	534,679	15,120,652	610,469	18,537,091	595,596	22,867,173
공동시설세	222,561	3,276,753	202,861	2,738,809	216,042	3,590,830	214,441	4,087,523
사업소세	107,770	5,106,495	13,631	4,399,243	13,604	4,689,137	9,884	2,739,190

	1989		1990		1991		1992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6,753,352	399,556,001	10,521,660	402,120,733	11,138,921	543,788,779	13,517,729	1,587,987,708
취득세	341,413	107,254,163	509,041	175,261,037	568,472	215,882,298	1,324,231	591,268,684
등록세	157,847	158,289,436	365,581	121,165,231	423,559	145,766,273	1,019,006	544,199,123
면허세	54,494	501,337	62,399	1,211,223	64,556	725,995	73,148	1,759,219
주민세	664,491	1,695,575	662,250	4,229,452	842,406	5,284,375	586,860	4,671,500
재산세	2,690,855	51,849,984	827,328	25,950,731	1,013,734	25,604,712	999,598	75,492,483
자동차세	55,274	2,059,714	71,641	6,749,210	86,673	4,282,427	72,906	3,557,449
농지세	136,298	753,202	93,366	874,205	92,459	1,773,611	80,528	1,885,32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11	19,532,903	-	-	-	-	-	-
담배소비세	8,287	27,214	-	-	-	-	-	-
지역개발세	-	-	-	-	-	-	633,784	12,679,620
토지과다보유세	1,907,997	28,770,064	-	-	-	-	-	-
종합토지세	-	-	6,629,837	35,990,764	6,985,427	95,466,000	7,539,990	310,230,905
도시계획세	529,028	20,646,444	827,255	14,500,603	764,983	28,756,981	894,649	29,708,353
공동시설세	198,191	4,351,363	461,126	4,427,975	269,429	4,961,275	278,522	4,954,199
사업소세	9,166	3,824,602	11,836	11,760,302	27,223	15,284,832	14,507	7,580,847

3.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1993		1994		1995		1996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15,120,750	1,554,940,230	15,893,687	1,520,638,712	16,031,292	1,488,985,204	16,600,658	1,550,833,009
취득세	1,423,842	556,003,185	1,223,751	574,584,364	1,047,905	507,985,250	1,194,961	598,564,109
등록세	1,211,706	589,517,686	992,336	493,564,654	1,005,022	566,459,305	1,176,606	620,056,955
면허세	75,611	18,246,029	101,325	4,733,123	108,217	2,017,139	119,590	3,013,678
주민세	1,323,716	28,936,438	1,295,054	16,616,322	716,511	6,376,881	598,527	3,221,418
재산세	899,730	46,472,930	901,787	40,148,157	880,078	35,661,516	703,803	33,296,064
자동차세	98,535	5,701,147	110,717	69,163,805	119,705	14,922,267	198,863	27,422,725
농지세	33,621	94,354	8,987	54,791	170	49,219	16,761	149,65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893,788	17,879,766	40,552	26,410,560	109,728	32,752,961	68,406	36,699,749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8,075,964	250,342,016	9,559,742	232,199,771	10,181,201	219,842,470	10,679,195	133,390,457
도시계획세	853,830	27,619,005	1,389,106	46,612,230	1,531,497	79,617,825	1,482,272	68,694,903
공동시설세	218,259	5,327,337	255,791	6,518,742	312,426	11,691,877	331,472	7,702,301
사업소세	12,148	8,800,337	14,539	10,032,193	18,832	11,608,494	30,202	18,620,994

	1997		1998		1999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15,013,695	1,803,889,215	16,256,413	2,020,363,060	17,798,230	2,117,030,950
취득세	1,025,907	668,640,767	548,333	912,276,694	633,222	805,976,400
등록세	1,150,530	671,722,901	625,722	683,853,068	735,388	878,418,916
면허세	124,138	2,186,633	206,441	3,679,059	327,353	5,361,379
주민세	602,117	18,641,045	566,251	3,198,894	615,197	2,939,916
재산세	875,781	55,824,763	1,132,836	64,379,744	1,044,662	63,747,739
자동차세	339,236	47,652,919	297,953	50,384,221	412,792	62,363,161
농지세	7	393,229	19	11,749	-	-
도축세	-	-	-	-	-	-
경주마권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역개발세	25,525	42,143,423	6,337	55,534,952	6,672	58,458,298
토지과다보유세	-	-	-	-	-	-
종합토지세	9,068,346	165,825,542	10,526,777	146,822,267	11,095,722	132,249,318
도시계획세	1,466,915	89,369,047	1,925,477	64,892,343	2,416,522	70,613,767
공동시설세	305,135	23,596,199	371,405	11,527,592	460,389	13,918,388
사업소세	30,058	17,892,747	48,862	23,802,477	50,311	22,984,38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네 시골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서 학교 다니며 공부하는 장남이었다. 가계(家計)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시절 가족들의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 낼 수 있게 하는 힘, 즉 희망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자녀는 많은데 이 아이들을 모두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시절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남 하나만이라도 잘 교육시켜 그에게 가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맡기는 것이었다. 일단 이 장남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그 후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시골에 있던 동생들도 하나씩 도시로 나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각자 삶의 방편을 마련할 수 있었다.

어려운 시절 가족의 생존전략에 관한 이 '장남·동생' 논리는 국가 단위로 그 논의를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장남·동생' 생존전략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소위 후진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개발 이론이다. 이는 크게 너시(Nurkse)로 대표되는 '균형 성장론'과 허쉬먼(Hirschman)으로 대표되는 '불균형 성장론'으로 나뉘어진다. 해당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동시에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균형 성장론'과는 달리, '불균형 성장론'은 앞서 우리의 '장남·동생'의 예에서 처럼, '장남'에 해당하는 전략산업을 선택해 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향후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가 1962년 이후 채택한 경제개발 전략은 바로 이 '불균형 성장'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

는 공업화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으로서의 '장남' 산업을 선택해 이에 집중 투자한 후 그 산업이 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써온 셈이다.

우리나라 고속성장의 역사

한강의 기적으로도 종종 표현되는 우리나라 고속성장의 역사는 굽주림의 보릿고개를 넘어 하루 세 끼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절실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던 1961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그 당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상대적 통화 가치를 고려한다 치더라도, 한 사람이 평균 82달러를 가지고 1년을 살았다는 건 결국 1달러로 나흘 반 동안의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고, 더해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까지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1973년에야 우리나라는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에 도달하여 유엔이 정한 빈곤선(Poverty Line), 즉 하루 1달러, 연간 365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하루 세 끼 밥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때이다.

이후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1천 달러를 넘어, 2005년에는 1만 6천 달러에 이르게 됐으며, 경제 전체 규모로 보면 2004년, 2005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한국은 세계경제 속에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우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적중했으며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두루 평가된다. 심지어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발전모형으로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압축성장과 격차 문제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고 했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 교수로 인해 더 유명해진 이 말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고속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도 함께 묻어 왔음을 보게 된다.

경제적 부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돈과 사람이 몰려 외관상의 발전은 있되 여유가 없는 도시, 이러한 도시에 밀

려 한 평생 고생을 하고도 느는 건 빛뿐인 우리의 낙후된 농촌, 대기업이 중심이 된 수출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내수기반 산업 등 사회 각 부문에 널린 격차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중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하버드대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사 전반에 대해 향후 3년간 심층적인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이루어진 이들의 한국경제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학계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후속 연구 또한 그간 한국의 고속 압축성장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 각층의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학계의 이같은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 모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가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짚어 보고, 그 속에서 압축성장과 격차라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지혜 모을 때

세월이 흐르면서 가까운 가족간에도 때로는 서로의 기대치가 어긋나 상호간에 골이 깊어져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는 일이 생기고도 한다. 하물며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과 집단 간의 질시와 반목은 이들을 갈라 놓을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다양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더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성공·발전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개인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잡해 보이는 사회적 문제도 결국은 사람들로 부터 나오는, 즉 사람들 간의 문제라는 간단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도 종국엔 사람 안에서 부터 찾아질 수 있다. 이는 압축성장과 함께 묻어온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그 전제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양보의 미덕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적이고도 가능한 성장에 관한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격차라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전체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 한들 아직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진국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세계 정세와 주변 아시아국들의 급부상은 왜 우리가 아직 성장을 늦출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우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대외 지향적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은 안과 밖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확고한 국가 비전과 함께, 사회 제반에 걸친 격차 문제들의 간격을 좁혀나가기 위해 미시·거시적 안목에서의 균형잡힌 정책적 방안들을 내놓는 일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과 집단 역시 오늘날의 범국민적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수준 향상과 사회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절제된 대화, 상호간의 이해, 한 발짝씩 움직일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십분 발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지혜를 모을 때이다.

2006년 3월 10일자 국정브리핑 칼럼
(오종남/IMF 상임이사, 전 통계청장)

양극화를 노래하지 말라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소감은 몇몇 '청백리'가 눈길을 끈 것 외에 빈자(貧者)들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이다. 바꿔 말해 공개 대상자 1,075명의 절대다수가 부자거나 확실한 중산층이다. 82%가 재산을 불렀고,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이 26%다. 1인 평균 재산증가액은 9,900만여원, 평균 재산은 10억 1,000만여원이다.

국회의원은 216명(73.4%)이 평균 1억 3,000만원을 늘렸고, 재산이 수십억원 늘어난 의원들도 있다. 부동산의 경우 2~3배 실거래가로 환산하고, 일부 누락과 고지 거부를 감안하면 실제 재산규모가 어떨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500만원 가량 늘었다. 취임 이후 3억 6,000만원이 증가해 재산규모 약 8억 3,000만원. 이해찬 국무총리는 490만원 증가한 약 7억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 여당 지도자들도 대부분 평균 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었다. 청와대 참모의 경우 10억원대 13명을 포함해 평균 재산신고액이 8억원대다.

정당별 의원 평균 재산은 민주 25억 5,100만원, 한나라 17억 8,200만원, 열린우리 10억 2,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당의 정동영 의장은 재산이 9억 4,300만원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권 예비주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기로는 김근태 의원의 9,200만원이었다. 이렇듯 몰락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눈에 비치는 여야 정치인들의 재산은 숫과 감정 차이 정도다.

여기서 여권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富)의 양극화를 집요하게 이슈화하려는 군(群)에 스스로는 양극의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청와대 홈페이지의 '양극화 시한폭탄' 특집은 교과서 격이다. 몇 차례 연재된 글은 무섭다. "우리 앞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사회적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외환위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특집은 "불균형 성장전략이 압축 성장과 양극화라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카지노 경제", "아프리카 밀림의 사지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승자 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에 끝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결과적으로 백성을 왜 나눠놓으려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이 갈등구조를 끌어갈지는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김한길 의원이 어느 실업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교육한 내용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이대로 가면 과거처럼 귀족계급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등의 강의로 학생들을 은근히 자극했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이처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국 실업계고교 일일교사 체험행사’를 갖도록 주문했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양극화 해소는 마땅히 할 일이다. 여권은 양극화 문제에 집착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네티’로 돌린다. 과거 누구의 명언대로 경북공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식이다.

만인이 부자로 평등하게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당연히,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 차이가 문제였지 빈부격차는 있었다. 부자는 소수였고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우리의 경우 지금보다 양극화가 심했던 적이 있고 일부 선진국 등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이론(異論)도 많다. 어쨌든 빈부격차를 좁히는 것은 국가 지도부의 기본 책무다.

누구라도 정권을 잡거나 벼슬에 오르면 기득권을 획득한 것이다. 사실 그보다 더한 기득권은 없다. 따라서 여권 인사들의 기득권층 공격은 보통 모순이 아니다. 여권 인사들의 이런 기득권층 공격이 탁월한 전략으로 후히 평가받고

민심이 거기에 먹혀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보기에 따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부의 양극화보다 훨씬 심각한 양극화가 널려 있다. 이 마당에 최고의 기득권층이 정치논리 혹은 역량 미숙 때문에 백성을 부의 양극화 대결로 내모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 불행이다.

2006년 3월 8일자 국민일보 한석동 칼럼

재산세 논란 앞서 거래세 인하가正道다

재산세 탄력세를 조정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질을 비켜가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강남, 동대문 등 대다수 구청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율을 20~30%씩 내리겠다고 밝히자 행자부가 교부금을 줄이는 등 ‘재정 패널티’를 확대하겠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내 가감조정은 지방세법 제188조 3항 소정의 권한인데 행자부가 현행법 명문을 어겨가면서까지 불이익 운운할 수 있는나고 반문하고 있다.

행자부는 형평성 논리를 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깎아주면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꼴이 돼 ‘동일 가격, 동일 세금’의

과세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점을 수긍하더라도 그 시정은 어디까지나 입법보완의 영역이다.

우리는 행자부가 지자체의 적법 행정행위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지자체가 왜 재산세를 깎아주려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세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원칙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서 재산세 과표를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꾸는 한편, 시세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는 최고 50%까지 높아졌다. 여기에다 지난해의 8·31대책 이후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거래세는 전혀 줄지 않은데다 양도소득세 강화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이 겹쳐 납세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도세 강화까지 감안하면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재산세율을 고수하겠다고 거래세는 대폭 인하, 납세자의 숨통을 터주는 게 정도(正道)다. 지금 같은 재산세 논란은 선후(先後)가 뒤집혀 있다.

2006년 3월 8일자 문화일보사설